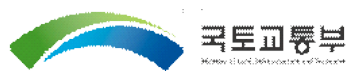


2015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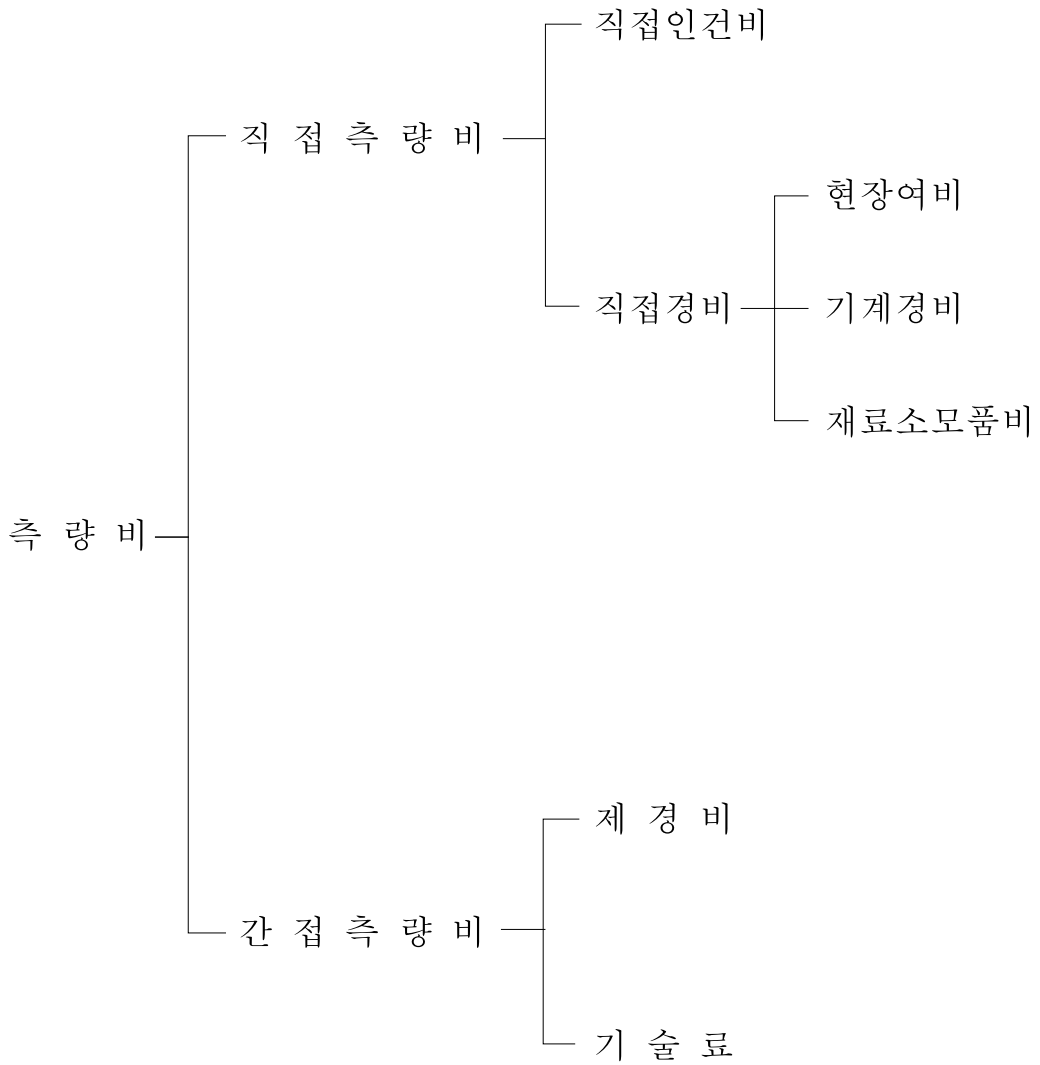
목 차

I.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	10
1.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	11
2. 지적측량수수료 산출 기준액표	12
2. 1 인건비 기준액표	12
2. 2 직접경비	13
2.2.1 현장여비	13
2.2.2 기계경비	14
2.2.3 재료소모품비	14
2. 3 간접측량비	45
2.3.1 제경비	45
2.3.2 기술료	45
II. 단가산출표	47
1. 지적기준점측량	49
1-1 지적삼각(보조)점측량	51
1-2 지적도근점측량	59
2. 지적세부측량	67
2-1 신규등록측량	69
2-2 등록전환측량	79
2-3 분할측량	89
2-4 축척변경측량	101
2-5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	113
2-6 경계복원측량	121
2-7 지적현황측량	133
2-8 도시계획선명시측량	145
2-9 택지개발예정지적도작성측량	157
2-10 현황측량 내업품	165
3. 지적확정측량	173
3-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75

3-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83
3-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191
3-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197
4.	지적재조사	203
4-1	지적재조사측량	205
4-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213
5.	국토정보조사측량	221
5-1	다목적지적측량	223
5-2	3차원 지적구축측량	227
5-3	침수흔적지조사측량	233
6.	국토정보 조사관리	237
6-1	지적이용현황조사	239
7.	국토정보 품질관리	245
7-1	지적(임야)도 전산화	247
7-2	측량결과도 전산화	253
7-3	연속지적도작성	259
7-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265
7-5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271
7-6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279
7-7	지적전산 자료정비	291
7-8	도면작성	297
7-9	지적도작성 및 재작성	303
7-10	조서작성	307
8.	국토정보 자료구축	313
8-1	지적정보 D/B구축	315
참고: 지역구분계수 적용 분할측량 단가표		313
Ⅲ.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5
§	[별 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347
§	[별첨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기준	356
§	[별첨2]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360
§	[별첨3]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368

I .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

1. 지적측량수수료의 구성



2. 측량비의 산출 기준액표

2.1 인건비 기준액표

(금액단위 : 원)

구 분	인건비(1일 기준)	비 고
지 적 기 사	201,490	
지 적 산 업 기 사	180,780	
지 적 기 능 사	155,120	
인 부	86,680	

※ 대한건설협회 2014. 9. 1자 공표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통계청 승인번호 36504]

2.2 직접경비

2.2.1 현장여비

(금액단위 : 원)

구 분	여 비	비 고
지 적 기 사	20,000	
지 적 산업 기 사	20,000	
지 적 기 능 사	20,000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국내여행자의 일비 적용

2.2.2 기계경비

기계경비는 2014년 9월 15일 현재 물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 가격(수입품은 C.I.F가격)에 내용연수 및 연간 가동일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비 및 정비비를 산출함.

(금액단위 : 원)

종 목 별		금 액	비 고
지 적 삼 각 (삼 각 보 조)	G N S S	747,777	
	T / S	460,047	
지 적 도 근	G N S S	354,208	
	T / S	319,904	
신 규 등 록	도 해	36,069	
	수 치	35,656	
등 록 전 환	도 해	39,369	
	수 치	41,424	
분 할 측 량	도 해	35,808	
	수 치	34,653	
축 척 변 경	도 해	41,618	
	수 치	47,304	
지 적 불 부 합 지 조 사 측 량	도 해	31,903	
경 계 복 원	도 해	36,545	
	수 치	31,583	
지 적 현 황	도 해	34,476	
	수 치	34,130	
도 시 계 획 선 명 시 측 량	도 해	36,545	
	수 치	31,583	
택 지 개 발 예 정 지 적 좌 표 도 작 성 업 무	지 구 내	1,357,616	
	지 구 계 점	34,130	
현 황 내 업 품	도 해	8,420	
	수 치	10,970	

종 목 별		금 액	비 고
지 적 확 정 측 량	토 지구 획 정 리	3,279,245	
	경 지구 획 정 리	2,760,850	
	신규토지구획	2,016,275	
	신규경지구획	1,924,830	
지 적 재 조 사 측 량		62,688	
세 계 측 지 계 좌 표 변 환	도 해	7,651	
	수 치	5,316	
다 목 적 지 적 측 량		5,182,470	
3 차 원 지 적 구 축 측 량		842,150	
침 수 혼 적 지 조 사 측 량		47,258	
지 적 이 용 현 황 조 사		1,260	
지 적 (임 야) 도 전 산 화		18,531	
측 량 결 과 도 전 산 화		660	
연 속 지 적 도 작 성	도 해	4,702	
	수 치	3,949	
연 속 지 적 도 품 질 개 선	도 해	2,630	
	수 치	1,877	
용 도 지 역 지 구 도 면 작 성	도 해	5,228	
	수 치	4,469	
지 적 공 간 정 보 도 면 작 성	도 해	4,810	
	수 치	4,605	
지 적 전 산 자 료 정 비 (개 별 지 적)		38,459	
도 면 작 성		6,663	
지 적 (임 야) 도 작 성 · 재 작 성		18,531	
조 서 작 성		102	
지 적 정 보 D B 구 축		1,361,237	

2.2.2.1 측량종목별 기계경비 일람표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기계·기구명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세부측량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GNSS	T/S	GNSS	T/S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텔 스 테 이 션	43,904.7	94,899.6	30,542.4	83,991.6	6,408.4	5,863.0	6,817.5	6,817.5
GNSS수신기세트	339,995.9							
G N S S 수 신 기			89,085.9					
펜 컴 퓨 터	17,558.6	17,558.6	12,214.7	12,214.7	2,562.9	2,344.7	2,726.5	2,726.5
소 자 세 트	1,094.8	2,366.4	761.6	2,094.4	159.8	146.2	170.0	170.0
카 메 라	1,745.2	1,745.2	1,214.0	1,214.0	254.7	233.0	271.0	271.0
무 전 기	1,489.4	1,489.4	1,318.2	1,318.2	100.5	92.0	107.0	107.0
햄 머 드 릴					558.3	510.8	594.0	594.0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컴 퓨 터	14,779.8	14,779.8	10,281.6	10,281.6	1,055.7	1,132.2	1,147.5	1,300.5
위 크 스 테 이 션								
프 린 터	46,271.4	46,271.4	32,188.8	32,188.8	3,376.9	3,376.9	3,520.6	4,095.4
롤 프 린 터	20,120.4	20,120.4	12,951.1	12,951.1	770.9	770.9	1,002.1	1,233.4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정 밀 스 캐 너								
운 영 용 S / W	260,817.0	260,817.0	163,649.9	163,649.9	20,821.5	21,186.8	23,013.2	24,109.1
도 면 편 집 S / W								
구 조 화 S / W								
합 계	747,777.2	460,047.8	354,208.2	319,904.3	36,069.6	35,656.5	39,369.4	41,424.4

[계산예] 측량종목별 기계사용일수 및 1일 기계경비 일람표에 의함.

“신규등록측량(도해)” 토털스테이션의 경우 1일 기계경비 : 13,635원, 사용일수 : 0.47일,
 $13,635\text{원} \times 0.47\text{일} = 6,408.4\text{원}$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기 계 · 기 구 명	지 적 세 부 측 량									
	분 할 측 량		축 적 변 경 측 량		불 부 합 지 조 사 측 량	경 계 복 원 측 량		지 적 현 황 측 량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탈 스 테 이 셴	6,408.4	5,454.0	7,635.6	8,453.7	4,908.6	6,681.1	4,908.6	6,135.7	5,454.0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펜 컴 퓨 터	2,562.9	2,181.2	3,053.6	3,380.8	1,963.0	2,671.9	1,963.0	2,453.8	2,181.2	
소 자 세 트	159.8	136.0	190.4	210.8	122.4	166.6	122.4	153.0	136.0	
카 메 라	254.7	216.8	303.5	336.0	195.1	265.5	195.1	243.9	216.8	
무 전 기	100.5	85.6	119.8	132.6	77.0	104.8	77.0	96.3	85.6	
햄 머 드 릴	558.3	475.2	665.2	736.5	427.6	582.1	427.6	534.6	475.2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컴 퓨 터	1,009.8	1,193.4	1,178.1	1,178.1	963.9	948.6	1,086.3	979.2	1,101.6	
워크스테이션										
프 린 터	3,161.4	3,664.3	3,592.5	3,592.5	3,017.7	2,802.1	3,017.7	3,017.7	3,233.2	
롤 프 린 터	770.9	1,156.3	770.9	1,156.3	1,233.4	770.9	1,156.3	770.9	1,156.3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정 밀 스 캐 너										
운 영 용 S / W	20,821.5	20,090.9	24,109.1	28,127.3	18,995.0	21,552.1	18,629.7	20,090.9	20,090.9	
도면편집S/W										
구 조 화 S / W										
합 계	35,808.2	34,653.7	41,618.7	47,304.6	31,903.7	36,545.7	31,583.7	34,476.0	34,130.8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기계·기구명	지적세부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작성업무측량		지적현황 (내업품)		토지구획	경지구획
	도 해	수 치	지구내	지구계점	도 해	수 치	수치	수 치
토털스테이션	6,681.1	4,908.6		5,454.0			607,439.2	494,405.1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펜 컴 퓨 터	2,671.9	1,963.0		2,181.2			242,931.1	197,725.7
소 자 세 트	166.6	122.4		136.0			15,147.0	12,328.4
카 메 라	265.5	195.1		216.8			24,146.1	19,652.9
무 전 기	104.8	77.0		85.6			9,533.7	7,759.6
햄 머 드 릴	582.1	427.6		475.2				
지 상 라 이 다								
지하탐사장비								
컴 퓨 터	948.6	1,086.3	219,463.2	1,101.6	979.2	1,101.6	111,659.4	121,405.5
워크스테이션								
프 린 터	2,802.1	3,017.7	233,009.5	3,233.2	3,017.7	3,233.2	503,884.0	448,990.6
롤 프 린 터	770.9	1,156.3	92,739.2	1,156.3	770.9	1,156.3	23,897.9	23,358.2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정 밀 스 캐 너								
운 영 용 S / W	21,552.1	18,629.7	812,404.9	20,090.9	3,652.9	5,479.3	1,740,606.8	1,435,224.4
도면편집S/W								
구 조 화 S / W								
합 계	36,545.7	31,583.7	1,357,616.8	34,130.8	8,420.7	10,970.4	3,279,245.2	2,760,850.4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기계·기구명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			국토정보조사측량			국토정보 조사관리
	신규등록 토지구획	신규등록 경지구획	지적재조사 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다목적 지적측량	3D지적 구축측량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지적이용 현황조사
	수 치	수 치	수 치	도 해	수 치	수 치	3차원	수 치	조 사
토털스테이션	305,424.0	296,288.5	8,044.6	409.0	272.7	1,499,850.0		16,089.3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13,408.3						
펜 컴퓨터	122,147.2	118,493.6	3,217.2	163.5	109.0	599,830.0	16,958.8	6,434.5	
소 자 세 트	7,616.0	7,388.2	200.6	10.2	6.8	37,400.0		401.2	
카 메 라	12,140.8	11,777.6	81.3	16.2	10.8	59,620.0	1,685.6	639.5	54.2
무 전 기	4,793.6	4,650.2	158.3	6.4	4.2	23,540.0	665.5	252.5	
햄 머 드 릴			225.7					1,401.8	
지 상 라 이 다							768,900.8		
지 하 탐 사 장 비						1,273,950.0			
컴 퓨 터	115,300.8	109,425.6	719.1	336.6	244.8	9,180.0	8,047.8	7,879.5	260.1
워크스테이션									
프 린 터	493,465.8	448,990.6	2,945.8	1,652.5	1,149.6		16,381.8	6,250.9	215.5
롤 프 린 터	23,897.9	23,358.2	1,541.8	308.3	231.2	46,254.0	11,563.5	3,160.6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정 밀 스 캐 너									
운 영 용 S / W	931,489.5	904,458.0	32,145.5	4,748.7	3,287.6	1,632,846.3		4,748.7	730.5
도면편집S/W							17,946.9		
구 조 화 S / W									
합 계	2,016,275.6	1,924,830.5	62,688.2	7,651.4	5,316.7	5,182,470.3	842,150.7	47,258.5	1,260.3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기 계 · 기 구 명	국토정보 품질관리							
	지적(임야)도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연속지적도작성		연속지적도품질개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털스테이션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펜 컴 퓨 터								
소 자 세 트								
카 메 라							10.8	5.4
무 전 기								
햄 머 드 릴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컴 퓨 터	1,132.2	244.8					413.1	183.6
워크스테이션			541.5	541.5	386.8	386.8	657.5	734.9
프 린 터			502.9	431.1	215.5	143.7	862.2	359.2
롤 프 린 터			308.3	231.2	154.1	77.0	539.6	308.3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1,246.3	83.0						
정 밀 스 캐 너	12,298.0	332.3						
운 영 용 S / W								
도면편집S/W	3,855.2		930.5	930.5	664.7	664.7	930.5	1,063.5
구 조 화 S / W			2,419.7	1,814.8	1,209.8	604.9	1,814.8	1,814.8
합 계	18,531.7	660.1	4,702.9	3,949.1	2,630.9	1,877.1	5,228.5	4,469.7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기계·기구명	국토정보 품질관리						국토정보 DB구축
	지적공간정보도면작성		지적전산 자료정비	도면작성	지적(임야도) 작성·제작성	조서작성	지적정보 DB구축
	도 해	수 치	개별지적 자료정비	도해/수치		도해/수치	
토털스테이션			6,135.7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펜 컴퓨터			2,453.8				
소 자 세 트			153.0				
카 메 라	10.8	5.4	243.9				
무 전 기			96.3				
햄 머 드 릴			534.6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컴 퓨 터	428.4	214.2	4,972.5	765.0	1,132.2	30.6	54,758.7
워크스테이션	696.2	773.6					
프 린 터	862.2	359.2	3,808.0	1,149.6		71.8	17,675.1
롤 프 린 터	539.6	308.3	3,623.2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1,246.3		
정 밀 스 캐 너					12,298.0		
운 영 용 S / W			16,438.0	4,748.7			
도면편집S/W	1,063.5	1,129.9			3,855.2		40,812.5
구 조 화 S / W	1,209.8	1,814.8					1,247,991.2
합 계	4,810.5	4,605.4	38,459.0	6,663.3	18,531.7	102.4	1,361,237.5

2.2.2.2 측량종목별 기계사용일수 및 1일 기계경비 일람표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 목 별 기계·기구명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세부측량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GNSS	T/S	GNSS	T/S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텔 스 테 이 션	13,635 3.22	13,635 6.96	13,635 2.24	13,635 6.16	13,635 0.47	13,635 0.43	13,635 0.50	13,635 0.50
GNSS수신기세트	90,908 3.74							
GNSS수신기			22,726 3.92					
펜 컴 퓨 터	5,453 3.22	5,453 3.22	5,453 2.24	5,453 2.24	5,453 0.47	5,453 0.43	5,453 0.50	5,453 0.50
소 자 세 트	340 3.22	340 6.96	340 2.24	340 6.16	340 0.47	340 0.43	340 0.50	340 0.50
카 메 라	542 3.22	542 3.22	542 2.24	542 2.24	542 0.47	542 0.43	542 0.50	542 0.50
무 전 기	214 6.96	214 6.96	214 6.16	214 6.16	214 0.47	214 0.43	214 0.50	214 0.50
햄 머 드 릴					1,188 0.47	1,188 0.43	1,188 0.50	1,188 0.50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컴 퓨 터	1,530 9.66	1,530 9.66	1,530 6.72	1,530 6.72	1,530 0.69	1,530 0.74	1,530 0.75	1,530 0.85
위 크 스 테 이 션								
프 린 터	7,185 6.44	7,185 6.44	7,185 4.48	7,185 4.48	7,185 0.47	7,185 0.47	7,185 0.449	7,185 0.57
롤 프 린 터	7,709 2.61	7,709 2.61	7,709 1.68	7,709 1.68	7,709 0.10	7,709 0.10	7,709 0.13	7,709 0.16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정 밀 스 캐 너								
운 영 용 S / W	36,529 7.14	36,529 7.14	36,529 4.48	36,529 4.48	36,529 0.57	36,529 0.58	36,529 0.63	36,529 0.66
도 면 편 집 S / W								
구 조 화 S / W								

종 목 별 기계·기구명	지적세부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불부합지 조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털스테이션	13,635 0.47	13,635 0.40	13,635 0.56	13,635 0.62	13,635 0.36	13,635 0.49	13,635 0.36	13,635 0.45	13,635 0.40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펜 컴퓨터	5,453 0.47	5,453 0.40	5,453 0.56	5,453 0.62	5,453 0.36	5,453 0.49	5,453 0.36	5,453 0.45	5,453 0.40	
소자세트	340 0.47	340 0.40	340 0.56	340 0.62	340 0.36	340 0.49	340 0.36	340 0.45	340 0.40	
카메라	542 0.47	542 0.40	542 0.56	542 0.62	542 0.36	542 0.49	542 0.36	542 0.45	542 0.40	
무전기	214 0.47	214 0.40	214 0.56	214 0.62	214 0.36	214 0.49	214 0.36	214 0.45	214 0.40	
햄머드릴	1,188 0.47	1,188 0.40	1,188 0.56	1,188 0.62	1,188 0.36	1,188 0.49	1,188 0.36	1,188 0.45	1,188 0.40	
지상라이다										
지하탐사장비										
컴퓨터	1,530 0.66	1,530 0.78	1,530 0.77	1,530 0.77	1,530 0.63	1,530 0.62	1,530 0.71	1,530 0.64	1,530 0.72	
워크스테이션										
프린터	7,185 0.44	7,185 0.51	7,185 0.50	7,185 0.50	7,185 0.42	7,185 0.39	7,185 0.42	7,185 0.42	7,185 0.45	
롤프린터	7,709 0.10	7,709 0.15	7,709 0.10	7,709 0.15	7,709 0.16	7,709 0.10	7,709 0.15	7,709 0.10	7,709 0.15	
좌표독취기										
자동제도기										
정밀스캐너										
운영용 S / W	36,529 0.57	36,529 0.55	36,529 0.66	36,529 0.77	36,529 0.52	36,529 0.59	36,529 0.51	36,529 0.55	36,529 0.55	
도면편집 S/W										
구조화 S / W										

종 목 별 기계·기구명	지적세부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작성업무측량		지적현황 (내업품)		토지구획	경지구획
	도 해	수 치	지구내	지구계점	도 해	수 치	수치	수 치
토털스테이션	13,635 0.49	13,635 0.36		13,635 0.40			13,635 44.55	13,635 36.26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펜 컴 퓨 터	5,453 0.49	5,453 0.36		5,453 0.40			5,453 44.55	5,453 36.26
소 자 세 트	340 0.49	340 0.36		340 0.40			340 44.55	340 36.26
카 메 라	542 0.49	542 0.36		542 0.40			542 44.55	542 36.26
무 전 기	214 0.49	214 0.36		214 0.40			214 44.55	214 36.26
햄 머 드 릴	1,188 0.49	1,188 0.36		1,188 0.40				
지 상 라 이 다								
지하탐사장비								
컴 퓨 터	1,530 0.62	1,530 0.71	1,530 143.44	1,530 0.72	1,530 0.64	1,530 0.72	1,530 72.98	1,530 79.35
워크스테이션								
프 린 터	7,185 0.39	7,185 0.42	7,185 32.43	7,185 0.45	7,185 0.42	7,185 0.45	7,185 70.13	7,185 62.49
롤 프 린 터	7,709 0.10	7,709 0.15	7,709 12.03	7,709 0.15	7,709 0.10	7,709 0.15	7,709 3.10	7,709 3.03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정 밀 스 캐 너								
운 영 용 S / W	36,529 0.59	36,529 0.51	36,529 22.24	36,529 0.55	36,529 0.10	36,529 0.15	36,529 47.65	36,529 39.29
도면편집S/W								
구 조 화 S / W								

종 목 별 기 계 · 기 구 명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			국토정보조사측량			국토정보 조사관리
	신규등록 토지구획	신규등록 경지구획	지적재조사 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다목적 지적측량	3D지적 구축측량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지적이용 현황조사
	수 치	수 치	수 치	도 해	수 치	수 치	3차원	수 치	조 사
토털스테이션	13,635 22.40	13,635 21.73	13,635 0.59	13,635 0.03	13,635 0.02	13,635 110.00		13,635 1.18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22,726 0.59						
펜 컴퓨터	5,453 22.40	5,453 21.73	5,453 0.59	5,453 0.03	5,453 0.02	5,453 110.00	5,453 3.11	5,453 1.18	
소 자 세 트	340 22.40	340 21.73	340 0.59	340 0.03	340 0.02	340 110.00		340 1.18	
카 메 라	542 22.40	542 21.73	542 0.15	542 0.03	542 0.02	542 110.00	542 3.11	542 1.18	542 0.10
무 전 기	214 22.40	214 21.73	214 0.74	214 0.03	214 0.02	214 110.00	214 3.11	214 1.18	
햄 머 드 릴			1,188 0.19					1,188 1.18	
지 상 라 이 다							214 3.11		
지 하 탐 사 장 비						214 44.70			
컴 퓨 터	1,530 75.36	1,530 71.52	1,530 0.47	1,530 0.22	1,530 0.16	1,530 6.00	1,530 5.26	1,530 5.15	1,530 0.17
워크스테이션									
프 린 터	7,185 68.68	7,185 62.49	7,185 0.41	7,185 0.23	7,185 0.16		7,185 2.28	7,185 0.87	7,185 0.03
롤 프 린 터	7,709 3.10	7,709 3.03	7,709 0.20	7,709 0.04	7,709 0.03	7,709 6.00	7,709 1.50	7,709 0.41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정 밀 스 캐 너									
운 영 용 S / W	36,529 25.50	36,529 24.76	36,529 0.88	36,529 0.13	36,529 0.09	36,529 44.70		36,529 0.13	36,529 0.02
도면편집S/W									
구 조 화 S / W									

종 목 별 기제·기구명	국토정보 품질관리							
	지적(임야)도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연속지적도작성		연속지적도품질개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털스테이션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펜 컴 퓨 터								
소 자 세 트								
카 메 라	542 0.10						542 0.02	542 0.01
무 전 기								
햄 머 드 릴								
지 상 라 이 다								
지 하 탐 사 장 비								
컴 퓨 터	1,530 0.74	1,530 0.16					1,530 0.27	1,530 0.12
워크스테이션			3,868 0.14	3,868 0.14	3,868 0.10	3,868 0.10	3,868 0.17	3,868 0.19
프 린 터			7,185 0.07	7,185 0.06	7,185 0.03	7,185 0.02	7,185 0.12	7,185 0.05
롤 프 린 터			7,709 0.04	7,709 0.03	7,709 0.02	7,709 0.01	7,709 0.07	7,709 0.04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8,309 0.15	8,309 0.01						
정 밀 스 캐 너	33,238 0.37	33,238 0.01						
운 영 용 S / W								
도면편집S/W	6,647 0.58		6,647 0.14	6,647 0.14	6,647 0.10	6,647 0.10	6,647 0.14	6,647 0.16
구 조 화 S / W			60,494 0.04	60,494 0.03	60,494 0.02	60,494 0.01	60,494 0.03	60,494 0.03

종 목 별 기계·기구명	국토정보 품질관리						국토정보 DB구축
	지적공간정보도면작성		지적전산 자료정비	도면작성	지적(임야도) 작성·재작성	조서작성	지적정보 DB구축
	도 해	수 치	개별지적 자료정비	도해/수치		도해/수치	
토털스테이션			13,635 0.45				
GNSS수신기세트							
GNSS수신기							
펜 컴 퓨 터			5,453 0.45				
소 자 세 트			340 0.45				
카 메 라	542 0.02	542 0.01	542 0.45		542 0.10		
무 전 기			214 0.454				
햄 머 드 릴			1,188 0.45				
지 상 라 이 다							
지하탐사장비							
컴 퓨 터	1,530 0.28	1,530 0.14	1,530 3.25	1,530 0.50	1,530 0.74	1,530 0.02	1,530 35.79
워크스테이션	3,868 0.18	3,868 0.20					
프 린 터	7,185 0.12	7,185 0.05	7,185 0.53	7,185 0.16		7,185 0.01	7,185 2.46
롤 프 린 터	7,709 0.07	7,709 0.04	7,709 0.47				
좌 표 독 취 기							
자 동 제 도 기					8,309 0.15		
정 밀 스 캐 너					33,238 0.37		
운 영 용 S/W			36,529 0.45	36,529 0.13			
도면편집S/W	6,647 0.16	6,647 0.17			6,647 0.58		6,647 6.14
구 조 화 S/W	60,494 0.02	60,494 0.03					60,494 20.63

2.2.2.3 1일당 기계경비 산출표

(금액단위: 원)

기계명칭	규격	가격	내용 년수	연간 가동 일수	내 용		합 계	1일 기계 경비
					상 각 비	정 비 비		
토털스테이션	1급	12,000,000	4	220	12,954	681	13,635	13,635
GNSS수신기세트	1급(4대기준)	80,000,000	4	220	86,363	4,545	90,908	90,908
GNSS수신기	1급(1대기준)	20,000,000	4	220	21,590	1,136	22,726	22,726
펜 컴퓨터	현장용	4,800,000	4	220	5,181	272	5,453	5,453
소자세트	단소자 폴(2세트)	300,000	4	220	323	17	340	340
카메라	디지털	477,263	4	220	515	27	542	542
무선기	단거리(3대기준)	189,000	4	220	204	10	214	214
햄머드릴	충전식	1,046,181	4	220	1,129	59	1,188	1,188
지상라이다	레이저스캐너	217,568,000	4	220	234,874	12,361	247,235	247,235
지하탐사장비	0	25,080,000	4	220	27,075	1,425	28,500	28,500
컴퓨터	데스크탑	1,381,818	4	220	1,491	39	1,530	1,530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	3,492,000	4	220	3,769	99	3,868	3,868
프린터	컬러, A4	6,485,990	4	220	7,001	184	7,185	7,185
롤프린터	42인치	6,958,490	4	220	7,512	197	7,709	7,709
좌표독취기	디지털	2,800,000	4	220	3,022	79	3,101	3,101
자동제도기	0	7,500,000	4	220	8,096	213	8,309	8,309
정밀스캐너	A2형	30,000,000	4	220	32,386	852	33,238	33,238
운영용 S / W	토털측량시스템 측량정보처리 시스템	32,970,720	4	220	35,593	936	36,529	36,529
도면편집 S/W	Auto-CAD	6,000,000	4	220	6,477	170	6,647	6,647
구조화 S / W	Arc GIS	54,600,000	4	220	58,943	1,551	60,494	60,494

* 상각비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연간 가동일수) × 0.95

* 정비비 = ①내사용 기재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연간 가동일수) × 0.025

②현장사용 기재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연간 가동일수) × 0.050

2.2.3 재료·소모품비

재료·소모품비는 2014년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에 지적측량종목별 소모량을 산정하여 계산함.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금 액	비 고
지 적 삼 각 (삼 각 보 조)	GNSS	36,092	
	T / S	36,092	
지 적 도 근	GNSS	23,107	
	T / S	23,107	
신 규 등 록	도 해	6,454	
	수 치	5,582	
등 록 전 환	도 해	7,300	
	수 치	6,714	
분 할 측 량	도 해	6,338	
	수 치	5,692	
측 척 변 경	도 해	6,730	
	수 치	6,586	
지 적 불 부 합 지 조 사 측 량	도 해	6,762	
경 계 복 원	도 해	6,182	
	수 치	5,284	
지 적 현 황	도 해	6,226	
	수 치	5,460	
도 시 계 획 선 명 시 측 량	도 해	6,182	
	수 치	5,284	
택 지 개 발 예 정 지 적 좌 표 도 작 성 업 무	지 구 내	137,010	
	지 구 계 점	5,460	
현 황 내 업 품	도 해	2,728	
	수 치	3,057	

종 목 별		금 액	비 고
지 적 확 정 측 량	토 지구 획 정 리	394,181	
	경 지구 획 정 리	402,259	
	신 규 토 지 구 획	329,230	
	신 규 경 지 구 획	316,444	
지 적 재 조 사 측 량		8,909	
세 계 측 지 계 좌 표 변 환	도 해	1,600	
	수 치	1,276	
다 목 적 지 적 측 량		605,732	
3 차 원 지 적 구 축 측 량		9,672	
침 수 혼 적 지 조 사 측 량		10,866	
지 적 이 용 현 황 조 사		197	
지 적 (임 야) 도 전 산 화		1,559	
측 량 결 과 도 전 산 화		9,750	
연 속 지 적 도 작 성	도 해	5,117	
	수 치	5,002	
연 속 지 적 도 품 질 개 선	도 해	5,117	
	수 치	5,002	
용 도 지 역 지 구 도 면 작 성	도 해	5,927	
	수 치	5,811	
지 적 공 간 정 보 도 면 작 성	도 해	5,927	
	수 치	5,811	
지 적 전 산 자 료 정 비 (개 별 지 적)		7,123	
도 면 작 성		527	
지 적 (임 야) 도 작 성 · 재 작 성		5,176	
조 서 작 성		44	
지 적 정 보 D B 구 축		9,578	

2.2.2.1 측량종목별 재료·소모품비 일람표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세부측량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GNSS	T/S	GNSS	T/S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털 삼 각 대	3,083	3,083	2,728	2,728	208	190	221	221
펜컴퓨터삼각대	582	582	405	405	85	77	90	90
보 조 점 표 지					2,700	1,800	2,700	1,800
드 릴 비 트					33	30	36	36
유 리 섬 유 줄 자					294		313	
스 털 테 이 프	1,168	1,168	813	813		156		181
펜컴퓨터배터리	1,461	1,461	1,016	1,016	213	195	227	227
일 반 용 지	525	525	280	280	98	119	98	119
프 린 터 잉 크	19,835	19,835	11,943	11,943	1,519	1,652	1,652	1,946
프 린 터 드 럼	8,838	8,838	5,322	5,322	677	736	736	867
롤 플 로 터 잉 크								
롤 플 로 터 헤 드								
측량결과도용지	600	600	600	600	600	600	1,200	1,200
성과도특수용지					27	27	27	27
롤 페이지(종이)								
폴리에스터필름								
알루미늄캔트지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 인 더								
D V D								
합 계	36,092	36,092	23,107	23,107	6,454	5,582	7,300	6,714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지적세부측량									
	분할측량		측척변경측량		불부합지조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털 삼 각 대	208	177	248	274	159	217	159	199	177	
펜컴퓨터삼각대	85	72	101	112	65	88	65	81	72	
보 조 점 표 지	2,700	1,800	2,700	1,800	2,700	2,700	1,800	2,700	1,800	
드 릴 비 트	33	28	40	44	25	35	25	32	28	
유 리 섬 유 줄 자	294		351		225	307		282		
스 텔 테 이 프		145		225			130		145	
펜컴퓨터배터리	213	181	254	281	163	222	163	204	181	
일 반 용 지	98	119	98	119	147	98	119	98	119	
프 린 터 잉 크	1,439	1,759	1,599	1,732	1,546	1,306	1,519	1,386	1,599	
프 린 터 드 럼	641	784	712	772	689	582	677	617	712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600	600	600	1,200	600	600	600	600	600	
성과도특수용지	27	27	27	27		27	27	27	27	
롤페이퍼(종이)					443					
폴리에스터필름										
알루미늄캔트지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 인 더										
D V D										
합 계	6,338	5,692	6,730	6,586	6,762	6,182	5,284	6,226	5,460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지적세부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작성업무측량		지적현황 (내업품)		토지구획	경지구획
	도 해	수 치	지구내	지구계점	도 해	수 치	수치	수 치
토 텔 삼 각 대	217	159		177			19,735	16,063
펜컴퓨터삼각대	88	65		72			8,063	6,563
보 조 점 표 지	2,700	1,800		1,800				
드 릴 비 트	35	25		28				
유 리 섬 유 줄 자	307							
스 텔 테 이 프		130		145			16,171	13,162
펜컴퓨터배터리	222	163		181			20,225	16,462
일 반 용 지	98	119	9,940	119	98	119	11,970	11,760
프 린 터 잉 크	1,306	1,519	86,458	1,599	1,386	1,599	212,773	215,946
프 린 터 드 럼	582	677	38,526	712	617	712	94,814	96,228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600	600	1,200	600	600	600	6,000	15,000
성과도특수용지	27	27		27	27	27		
롤페이퍼(종이)			886				4,430	11,075
폴리에스터필름								
알루미늄캔트지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 인 더								
D V D								
합 계	6,182	5,284	137,010	5,460	2,728	3,057	394,181	402,259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			국토정보조사측량			국토정보 조사관리
	신규등록 토지구획	신규등록 경지구획	지적재조사 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다목적 지적측량	3D지적 구축측량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지적이용 현황조사
	수 치	수 치	수 치	도 해	수 치	수 치	3차원	수 치	조 사
토 텔 삼 각 대	9,923	9,626	261	13	8	48,730		522	
펜컴퓨터삼각대	4,054	3,933	106	5	3	19,910		213	
보 조 점 표 지			450			2,700		2,700	
드 릴 비 트			42					84	
유리섬유줄자								739	62
스 텔 테 이 프	8,131	7,887	32			39,930			
펜컴퓨터배터리	10,169	9,865	267	13	9	49,940		535	
일 반 용 지	11,970	11,760	70	70	70	4,200		98	21
프 린 터 잉 크	191,365	174,676	1,093	613	426	15,996	6,078	3,412	79
프 린 터 드 럼	85,274	77,837	487	273	190	7,128	2,708	1,520	35
롤플로터잉크				52	39				
롤플로터헤드				118	88				
측량결과도용지	4,800	12,000	12			360,000		600	
성과도특수용지			54						
롤페이퍼(종이)	3,544	8,860	886	443	443	2,658	886	443	
폴리에스터필름						54,540			
알루미늄캔트지									
경계표지(목재)			4,000						
경계표지(철재)			1,149						
바 인 더									
D V D									
합 계	329,230	316,444	8,909	1,600	1,276	605,732	9,672	10,866	197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 품질관리							
	지적(임야)도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연속지적도작성		연속지적도품질개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털 삼 각 대								
펜컴퓨터삼각대								
보 조 점 표 지								
드 릴 비 트								
유리섬유줄자								
스 텔 테 이 프								
펜컴퓨터배터리								
일 반 용 지			7	7	7	7	7	7
프 린 터 잉 크	159		239	159	239	159	186	106
프 린 터 드 럼	71		106	71	106	71	83	47
롤플로터잉크		1,303	1,303	1,303	1,303	1,303	1,303	1,303
롤플로터헤드		2,964	2,964	2,964	2,964	2,964	2,964	2,964
측량결과도용지								
성과도특수용지								
롤페이퍼(종이)	1,329		443	443	443	443	1,329	1,329
폴리에스터필름		5,454						
알루미늄캔트지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 인 더			50	50	50	50	50	50
D V D		29	5	5	5	5	5	5
합 계	1,559	9,750	5,117	5,002	5,117	5,002	5,927	5,811

(금액단위: 원)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 품질관리						국토정보 DB구축
	지적공간정보도면작성		지적전산 자료정비	도면 작성	지적(임야도) 작성·재작성	조서작성	지적정보 DB구축
	도 해	수 치	개별지적 자료정비	도해/수치		도해/수치	
토 털 삼 각 대			199				
펜컴퓨터삼각대			81				
보 조 점 표 지			2,700				
드 릴 비 트			32				
유 리 섬 유 줄 자			282				
스 텔 테 이 프							
펜컴퓨터배터리			204				
일 반 용 지	7	7	98			98	7
프 린 터 잉 크	186	106	1,412	346		6,558	26
프 린 터 드 럼	83	47	629	154		2,922	11
롤 플로터잉크	1,303	1,303			1,303		
롤 플로터헤드	2,964	2,964			2,964		
측량결과도용지			600				
성과도특수용지				27			
롤페이퍼(종이)	1,329	1,329	886				
폴리에스터필름							
알루미늄캔트지					909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제)							
바 인 더	50	50					
D V D	5	5					
합 계	5,927	5,811	7,123	527	5,176	9,578	44

2.2.2.2 측량종목별 재료·소모품비 사용일수 및 1일 재료·소모품비 일람표

(1일 기계경비/사용일수)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세부측량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GNSS	T/S	GNSS	T/S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털 삼 각 대	443 6.96	443 6.96	443 6.16	443 6.16	443 0.47	443 0.43	443 0.50	443 0.50
펜컴퓨터삼각대	181 3.22	181 3.22	181 2.24	181 2.24	181 0.47	181 0.43	181 0.50	181 0.50
보 조 점 표 지					900 3.00	900 2.00	900 3.00	900 2.00
드 릴 비 트					72 0.47	72 0.43	72 0.50	72 0.50
유 리 섬 유 줄 자					627 0.47		627 0.50	
스 털 테 이 프	363 3.22	363 3.22	363 2.24	363 2.24		363 0.43		363 0.50
펜컴퓨터배터리	454 3.22	454 3.22	454 2.24	454 2.24	454 0.47	454 0.43	454 0.50	454 0.50
일 반 용 지	7 75.00	7 75.00	7 40.00	7 40.00	7 14.00	7 17.00	7 14.00	7 17.00
프 린 터 잉 크	2,666 7.44	2,666 7.44	2,666 4.48	2,666 4.48	2,666 0.57	2,666 0.62	2,666 0.62	2,666 0.73
프 린 터 드 럼	1,188 7.44	1,188 7.44	1,188 4.48	1,188 4.48	1,188 0.57	1,188 0.62	1,188 0.62	1,188 0.73
롤 플로터 잉크								
롤 플로터 헤드								
측량결과도용지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600 2.00	600 2.00
성과도특수용지					27 1.00	27 1.00	27 1.00	27 1.00
롤 페이퍼(종이)								
폴리에스터필름								
알루미늄캔트지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 인 더								
D V D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지적세부측량									
	분할측량		축적변경측량		불부합지 조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털 삼 각 대	443 0.47	443 0.40	443 0.56	443 0.62	443 0.36	443 0.49	443 0.36	443 0.45	443 0.40	
펜컴퓨터삼각대	181 0.47	181 0.40	181 0.56	181 0.62	181 0.36	181 0.49	181 0.36	181 0.45	181 0.40	
보 조 점 표 지	900 3.00	900 2.00	900 3.00	900 2.00	900 3.00	900 3.00	900 2.00	900 3.00	900 2.00	
드 럸 비 트	72 0.47	72 0.40	72 0.56	72 0.62	72 0.36	72 0.49	72 0.36	72 0.45	72 0.40	
유 리 섬 유 줄 자	627 0.47		627 0.56		627 0.36	627 0.49		627 0.45		
스 텔 테 이 프		363 0.40		363 0.62			363 0.36		363 0.40	
펜컴퓨터배터리	454 0.47	454 0.40	454 0.56	454 0.62	454 0.36	454 0.49	454 0.36	454 0.45	454 0.40	
일 반 용 지	7 14.00	7 17.00	7 14.00	7 17.00	7 21.00	7 14.00	7 17.00	7 14.00	7 17.00	
프 린 터 잉 크	2,666 0.54	2,666 0.66	2,666 0.60	2,666 0.65	2,666 0.58	2,666 0.49	2,666 0.57	2,666 0.52	2,666 0.60	
프 린 터 드 럼	1,188 0.54	1,188 0.66	1,188 0.60	1,188 0.65	1,188 0.58	1,188 0.49	1,188 0.57	1,188 0.52	1,188 0.60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600 1.00	600 1.00	600 1.00	600 2.00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성과도특수용지	27 1.00	27 1.00	27 1.00	27 1.00		27 1.00	27 1.00	27 1.00	27 1.00	
롤페이퍼(종이)					443 1.00					
폴리에스터필름										
알루미늄캔트지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 인 더										
D V D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지적세부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작성업무측량		지적현황 (내업품)		토지구획	경지구획
	도 해	수 치	지구내	지구계점	도 해	수 치	수치	수 치
토 털 삼 각 대	443 0.49	443 0.36		443 0.40			443 44.55	443 36.26
펜컴퓨터삼각대	181 0.49	181 0.36		181 0.40			181 44.55	181 36.26
보 조 점 표 지	900 3.00	900 2.00		900 2.00				
드 릴 비 트	72 0.49	72 0.36		72 0.40				
유리섬유줄자	627 0.49							
스 털 테 이 프		363 0.36		363 0.40			363 44.55	363 36.26
펜컴퓨터배터리	454 0.49	454 0.36		454 0.40			454 44.55	454 36.26
일 반 용 지	7 14.00	7 17.00	7 1,420.00	7 17.00	7 14.00	7 17.00	7 1,710.00	7 1,680.00
프 린 터 잉 크	2,666 0.49	2,666 0.57	2,666 32.43	2,666 0.60	2,666 0.52	2,666 0.60	2,666 79.81	2,666 81.00
프 린 터 드 럽	1,188 0.49	1,188 0.57	1,188 32.43	1,188 0.60	1,188 0.52	1,188 0.60	1,188 79.81	1,188 81.00
롤플로터잉크								
롤플로터헤드								
측량결과도용지	600 1.00	600 1.00	600 2.00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0	600 25.00
성과도특수용지	27 1.00	27 1.00		27 1.00	27 1.00	27 1.00		
롤페이퍼(종이)			443 2.00				443 10.00	443 25.00
폴리에스터필름								
알루미늄캔트지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 인 더								
D V D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			국토정보조사측량			국토정보 조사관리
	신규등록 토지구획	신규등록 경지구획	지적재조사 측량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다목적 지적측량	3D지적 구축측량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지적이용 현황조사
	수 치	수 치	수 치	도 해	수 치	수 치	3차원	수 치	조 사
토 털 삼 각 대	443 22.40	443 21.73	443 0.59	443 0.03	443 0.02	443 110.00		443 1.18	
펜컴퓨터삼각대	181 22.40	181 21.73	181 0.59	181 0.03	181 0.02	181 110.00		181 1.18	
보 조 점 표 지			900 0.50			900 3.00		900 3.00	
드 릴 비 트			72 0.59					72 1.18	
유리섬유줄자								627 1.18	627 0.10
스 틸 테 이 프	363 22.40	363 21.73	363 0.09			363 110.00			
펜컴퓨터배터리	454 22.40	454 21.73	454 0.59	454 0.03	454 0.02	454 110.00		454 1.18	
일 반 용 지	7 1,710.00	7 1,680.00	7 10.00	7 10.00	7 10.00	7 600.00		7 14.00	7 3.00
프 린 터 잉 크	2,666 71.78	2,666 65.52	2,666 0.41	2,666 0.23	2,666 0.16	2,666 6.00	2,666 2.28	2,666 1.28	2,666 0.03
프 린 터 드 럽	1,188 71.78	1,188 65.52	1,188 0.41	1,188 0.23	1,188 0.16	1,188 6.00	1,188 2.28	1,188 1.28	1,188 0.03
롤플로터잉크				1,303 0.04	1,303 0.03				
롤플로터헤드				2,964 0.04	2,964 0.03				
측량결과도용지	600 8.00	600 20.00	600 0.02			600 600.00		600 1.00	
성과도특수용지			27 2.00						
롤페이퍼(종이)	443 8.00	443 20.00	443 2.00	443 1.00	443 1.00	443 6.00	443 2.00	443 1.00	
폴리에스터필름						2,727 20.00			
알루미늄캔트지									
경계표지(목재)			400 10.00						
경계표지(철재)			383 3.00						
바 인 더									
D V D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 품질관리							
	지적(임야)도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연속지적도작성		연속지적도품질개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도 해	수 치
토 털 삼 각 대								
펜컴퓨터삼각대								
보 조 점 표 지								
드 릴 비 트								
유 리 섬 유 줄 자								
스 텔 테 이 프								
펜컴퓨터배터리								
일 반 용 지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프 린 터 잉 크	2,666 0.06		2,666 0.09	2,666 0.06	2,666 0.09	2,666 0.06	2,666 0.07	2,666 0.04
프 린 터 드 럼	1,188 0.06		1,188 0.09	1,188 0.06	1,188 0.09	1,188 0.06	1,188 0.07	1,188 0.04
롤 플 로 터 잉 크		1,303 1.00	1,303 1.00	1,303 1.00	1,303 1.00	1,303 1.00	1,303 1.00	1,303 1.00
롤 플 로 터 헤 드		2,964 1.00	2,964 1.00	2,964 1.00	2,964 1.00	2,964 1.00	2,964 1.00	2,964 1.00
측량결과도용지								
성과도특수용지								
롤 페 이 퍼 (종 이)	443 3.00		443 1.00	443 1.00	443 1.00	443 1.00	443 3.00	443 3.00
폴 리 에 스 터 필 림		2,727 2.00						
알 루 미 늄 캔 트 지								
경 계 표 지 (목 재)								
경 계 표 지 (철 재)								
바 인 더			2,545 0.02	2,545 0.02	2,545 0.02	2,545 0.02	2,545 0.02	2,545 0.02
D V D		581 0.05	581 0.01	581 0.01	581 0.01	581 0.01	581 0.01	581 0.01

(1일기계경비/사용일수)

종 목 별 재료·소모품명	국토정보 품질관리						국토정보 DB구축
	지적공간정보도면작성		지적전산 자료정비	도면 작성	지적(임야도) 작성·제작성	조서작성	지적정보 DB구축
	도 해	수 치	개별지적 자료정비	도해/수치		도해/수치	
토 털 삼 각 대			443 0.45				
펜컴퓨터삼각대			181 0.45				
보 조 점 표 지			900 3.00				
드 릴 비 트			72 0.45				
유리섬유줄자			627 0.45				
스 텔 테 이 프							
펜컴퓨터배터리			454 0.45				
일 반 용 지	7 1.00	7 1.00	7 14.00			7 1.00	7 14.00
프 린 터 잉 크	2,666 0.07	2,666 0.04	2,666 0.53	2,666 0.13		2,666 0.01	2,666 2.46
프 린 터 드 럽	1,188 0.07	1,188 0.04	1,188 0.53	1,188 0.13		1,188 0.01	1,188 2.46
롤플로터잉크	1,303 1.00	1,303 1.00			1,303 1.00		
롤플로터헤드	2,964 1.00	2,964 1.00			2,964 1.00		
측량결과도용지			600 1.00				
성과도특수용지				27 1.00			
롤페이퍼(종이)	443 3.00	443 3.00	443 2.00				
폴리에스터필름							
알루미늄캔트지					909 1.00		
경계표지(목재)							
경계표지(철재)							
바 인 더	2,545 0.06	2,545 0.01					
D V D	581 0.06	581 0.02					

2.2.3.2 재료소모품비 가격표(1)

(금액단위 : 원)

품 명	단위	규 격	단 가	비 고
토 털 삼 각 대	개	알루미늄	443	195,000원÷440일=443원
펜 컴퓨터 삼 각 대	개	알루미늄	181	80,000원÷440일=181원
보 조 점 표 지	개	0.6cm*5cm*4cm(철재)	900	900원
드 릴 비 트	개	5mm×130mm(텅스텐)	72	8,000원÷110일=72원
유 리 섬 유 줄 자	개	50m(국산)	627	138,000원÷220일=627원
스 털 테 이 프	개	50m(국산)	363	160,000원÷440일=363원
펜 컴퓨터 배터리	개	Li-ion	454	200,000원÷440일=454원
일 반 용 지	장	A4용지	7	18,164원÷2,500장=7원
프 린 터 잉 크	개	컬러(흑,적,청,황)	2,666	320,000원÷120일=2,666원
프 린 터 드 럼	개	컬러(흑,적,청,황)	1,188	213,900원÷180일=1,188원
롤 플 로 터 잉 크	개	컬러	1,303	156,436원÷120일=1,303원
롤 플 로 터 헤 드	개		2,964	533,636원÷180일=2,964원
측 량 결 과 도 용 지	장	520mm×420mm(무인쇄)	600	600원
성 과 도 특 수 용 지	장	A4(1권250매)	27	6,750원÷250장=27원
롤 페 이 퍼 (종 이)	롤	24인치,45m(지적도86장)	443	38,181원÷86장=443원
폴 리 에 스 터 필 림	매	540mm×440mm	2,727	2,727원
알 루 미 늬 켄 트 지	장	520mm×420mm	909	909원
경 계 표 지 (목 재)	개	3.5cm×3.5cm×35cm(목재)	400	400원
경 계 표 지 (철 재)	개	철못1호,2호,3호평균	383	철제평균 383원
바 인 더	개		2,545	2,545원
D V D	개	4Gb	581	581원

2.2.3.2 재료소모품비 가격표(2)

(금액단위 : 원)

품 명	단위	규 격	단가	비 고
터파기	m ³	1m ³ 당	싯 가	
거푸집	m ²	일반합판	싯 가	
콘크리트	m ³	중량배합손비빔	싯 가	
표석(주석)	개	화강암(9cm×9cm×15cm) +(11cm×11cm×45cm)	싯 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
표석(반석)	개	24cm×24cm×8cm	싯 가	“
철제도근점	조	지름(4~6cm×1~2cm) +(1cm×15cm)	싯 가	“
각재	개	4cm×4cm×3m	909	
각재	개	4cm×4cm×50cm	2,272	
철선	kg	경 2mm(연선)	4,545	
측량깃폭	장	50cm×40cm	1,364	

2.3 간접측량비

2.3.1 제경비

구 분	적용비율	비 고
군 지 역	20%	
시 지 역	23%	
구 지 역	27%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50% 이내로 계상(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3.2 기술료

구 분	적용비율	비 고
군 지 역	13%	
시 지 역	13%	
구 지 역	13%	

※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로 계상(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II. 단 가 산 출 표

1. 기준점측량

1-1.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1-1-1. 작업공정 품셈기준

1-1-1-1. 지적삼각점 측량(경위의(T/S) 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1.48)	1	2			(1.48)	(2.96)			()는 내업임
계획준비		(1.13)	1	1			(1.13)	(1.13)			
답사		2.78		2	1			5.56	2.78		
선점		1.57	1	2			1.57	3.14			
조표		3.65		2	1	1		7.30	3.65	3.65	
관측		3.74		2	1			7.48	3.74		
계산		(1.65)		2				(3.30)			
지적전산파일변환		(1.48)		1				(1.48)			
준비도	작성	(1.74)			1				(1.74)		
	확인	(0.26)	1				(0.26)				
기지부합여부확인		3.22		2	1			6.44	3.22		
성과 작성	계산부	(1.48)		1				(1.48)			
	대장	(0.70)		1				(0.70)			
점검		(0.78)	1				(0.78)				
성과인계		(0.44)		1				(0.44)			
소계	외업	14.96					1.57	29.92	13.39	3.65	
	내업	(11.14)					(3.65)	(11.49)	(1.74)		
합계		26.10					5.22	41.41	15.13	3.65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가산계수

본품은 토털스테이션 장비로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와 위성(GNSS)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본 품에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표고	계수		비고
	경위의(T/S)	위성(GNSS)	
500m 미만	1.0	0.5	
500m ~ 1,000m	1.2	0.6	
1,000m 초과	1.4	0.7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측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1-2. 단 가 산 출 (예)

1-1-2-1.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T/S) 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5.22	인	201,490	1,051,778	
		지적산업기사		41.41	인	180,780	7,486,100	
		지 적 기 능 사		15.13	인	155,120	2,346,966	
		인 부		3.65	인	86,680	316,382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1.57	인	20,000	31,400	
			지 적 산 업 기 사	29.92	인	20,000	598,400	
			지 적 기 능 사	13.39	인	20,000	267,800	
			인 부					
		기 계 경 비					460,047	
		재료소모품비					36,092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2,240,245		
	기 술 료		13%			1,747,391		
합 계			8점			16,582,601	여점 3 구점 5	
1 점 당						2,072,825		

1-1-2-2. 지적삼각점 측량(위성(GNSS)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2.61	인	201,490	525,889	
		지적산업기사		20.71	인	180,780	3,743,954	
		지 적 기 능 사		7.56	인	155,120	1,172,707	
		인 부		1.82	인	86,680	157,758	
	직 접 경 비	현 장	지 적 기 사	0.78	인	20,000	15,600	
			지 적 산 업 기 사	14.96	인	20,000	299,200	
		여 비	지 적 기 능 사	6.69	인	20,000	133,800	
			인 부					
		기 계 경 비					747,777	
		재 료 소 모 품 비					36,092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1,120,061	
기 술 료		13%			873,648			
합 계			8점			8,826,486	여점 3 구점 5	
1 점 당						1,103,311		

1-1-3. 수수료 기본단가표

1-1-3-1. 지적삼각점측량

①[‘지적삼각점측량’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또는 위성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경위의(T/S)측량 : 군지역 43.8%, 시지역 43.8%, 구지역 43.8%

위성(GNSS)측량 : 군지역 45.6%, 시지역 45.6%, 구지역 45.6%

③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경위의(T/S)측량	908,000	929,000	956,000
위성(GNSS)측량	503,000	514,000	528,000

1-1-3-2.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단가 적용 기준

㉡ 위성(GNS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수수료는 본 위성(GNSS) 측량방법의 지적삼각점측량 단가를 적용하고, 경위의(T/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수수료는 경위의(T/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측량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경위의(T/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지적삼각점측량 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경위의(T/S)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 기준단가에는 지적삼각점표지 및 재료표지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및 인부임은 별도로 계산한다.

㉤ 별채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1-4. 공정일람표

1-1-4-1.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T/S)측량)

(여점3점, 구점5점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1.57 (3.65)	1.57 (3.65)	1.57 (3.65)
지 적 산 업 기 사		29.92 (11.49)	29.92 (11.49)	29.92 (11.49)
지 적 기 능 사		13.39 (1.74)	13.39 (1.74)	13.39 (1.74)
인 부		3.65	3.65	3.65
소 계	외 업	48.53	48.53	48.53
	내 업	(16.88)	(16.88)	(16.88)
합 계		65.41	65.41	65.41

* ()내는 내업임

1-1-4-2. 지적삼각점측량(위성(GNSS)측량)

(여점3점, 구점5점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78 (1.83)	0.78 (1.83)	0.78 (1.83)
지 적 산 업 기 사		14.96 (5.75)	14.96 (5.75)	14.96 (5.75)
지 적 기 능 사		6.69 (0.87)	6.69 (0.87)	6.69 (0.87)
인 부		1.82	1.82	1.82
소 계	외 업	24.25	24.25	24.25
	내 업	(8.45)	(8.45)	(8.45)
합 계		32.70	32.70	32.70

* ()내는 내업임

1-2. 지적도근점 측량

1-2-1. 작업공정 품셈기준

1-2-1-1. 지적도근점측량(경위의(T/S) 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1.12)	1	1			(1.12)	(1.12)			()는 내업임
계획준비		(0.56)	1	2			(0.56)	(1.12)			
답사		0.84		2	1			1.68	0.84		
선점		1.96	1	2		1	1.96	3.92		1.96	
관측		3.92		2	1			7.84	3.92		
계산		(1.68)		2				(3.36)			
지적전산파일변환		(1.12)		1				(1.12)			
준비도작성		(1.12)			1				(1.12)		
기지부합여부확인		2.24		2	1			4.48	2.24		
성과작성		(1.12)		2				(2.24)			
점검		(0.56)	1				(0.56)				
성과인계		(0.56)		1				(0.56)			
소계	외업	8.96					1.96	17.92	7.00	1.96	
	내업	(7.84)					(2.24)	(9.52)	(1.12)		
합계		16.80					4.20	27.44	8.12	1.96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적도근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가산계수

본 품은 방위각법·위성(GNSS)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계수		비고
	방위각법, 위성(GNSS)측량법	배각법	
계수	1.00	1.37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지적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점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점측량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1-2-2. 단 가 산 출 (예)

1-2-2-1. 지적도근점측량(경위의(T/S) 측량)

군지역(방위각법)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4.20	인	201,490	846,258	
		지적산업기사		27.44	인	180,780	4,960,603	
		지 적 기 능 사		8.12	인	155,120	1,259,574	
		인 부		1.96	인	86,680	169,893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1.96	인	20,000	39,200	
			지 적 산 업 기 사	17.92	인	20,000	358,400	
			지 적 기 능 사	7.00	인	20,000	140,000	
			인 부					
		기 계 경 비					319,904	
		재료소모품비					23,107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447,265	
기 술 료		13%			1,128,867			
합 계			50점			10,693,071		
1 점 당						213,861		

1-2-2-2. 지적도근점측량(경위의(T/S) 측량)

군지역(배각법)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5.76	인	201,490	1,160,582	
		지적산업기사		37.59	인	180,780	6,795,520	
		지 적 기 능 사		11.12	인	155,120	1,724,934	
		인 부		2.69	인	86,680	233,169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2.69	인	20,000	53,800	
			지 적 산 업 기 사	24.55	인	20,000	491,000	
			지 적 기 능 사	9.59	인	20,000	191,800	
			인 부					
		기 계 경 비					319,904	
		재 료 소 모 품 비					23,107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1,982,841	
기 술 료		13%			1,546,616			
합 계			50점			14,523,273		
1 점 당						290,465		

1-2-2-3. 지적도근점측량(위성(GNSS)측량)

군지역(위성측량법)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4.20	인	201,490	846,258	
		지적산업기사		27.44	인	180,780	4,960,603	
		지 적 기 능 사		8.12	인	155,120	1,259,574	
		인 부		1.96	인	86,680	169,893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1.96	인	20,000	39,200	
			지 적 산 업 기 사	17.92	인	20,000	358,400	
			지 적 기 능 사	7.00	인	20,000	140,000	
		인 부						
		기 계 경 비					354,208	
		재료소모품비					23,107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447,265	
기 술 료		13%			1,128,867			
합 계			50점			10,727,375		
1 점 당						214,548		

1-2-3. 수수료 기본단가표

1-2-3-1. 지적도근점측량

①[‘지적도근점측량’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적도근점측량을 경위의 측량 또는 위성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도근점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배각법(T/S) : 군지역 32.4%, 시지역 32.4%, 구지역 37.6%

방위각법(T/S) : 군지역 40.2%, 시지역 40.2%, 구지역 47.9%

위성(GNSS)측량법 : 군지역 41.0%, 시지역 41.0%, 구지역 48.2%

③ 지적도근점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경위의 (T/S)측량	배 각 법	1점당	94,000	96,000	115,000
	방 위 각 법	1점당	86,000	88,000	108,000
위성(GNSS)측량법		1점당	88,000	90,000	109,000

1-2-3-2. 지적도근점측량 수수료 단가 적용 기준

㉓ 본 단가는 2등도선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등도선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본 단가를 적용한다.

㉔ 기준단가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점 측량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별도 가산한다.

㉕ 기준단가에는 도근점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㉖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및 인부임은 별도 가산한다.

1-2-4. 공정일람표

1-2-4-1. 지적도근점측량(T/S 방위각법, GNSS)

(50점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1.96 (2.24)	1.96 (2.24)	1.96 (2.24)
지 적 산 업 기 사		17.92 (9.52)	17.92 (9.52)	17.92 (9.52)
지 적 기 능 사		7.00 (1.12)	7.00 (1.12)	7.00 (1.12)
인 부		1.96	1.96	1.96
소 계	외 업	28.84	28.84	28.84
	내 업	(12.88)	(12.88)	(12.88)
합 계		41.72	41.72	41.72

* ()내는 내업임

1-2-4-2. 지적도근점측량(T/S 배각법)

(50점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2.69 (3.07)	2.69 (3.07)	2.69 (3.07)
지 적 산 업 기 사		24.55 (13.04)	24.55 (13.04)	24.55 (13.04)
지 적 기 능 사		9.59 (1.53)	9.59 (1.53)	9.59 (1.53)
인 부		2.69	2.69	2.69
소 계	외 업	39.52	39.52	39.52
	내 업	(17.64)	(17.64)	(17.64)
합 계		57.16	57.16	57.16

* ()내는 내업임

2. 지적세부측량

2-1. 신규 등록 측량

2-1-1. 작업공정 품셈기준

2-1-1-1. 신규등록측량(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7	1	1	1		0.47	0.47	0.47		
성과설명		0.11	1				0.11				
면적측정및계산		(0.08)		1				(0.08)			
결과도작성		(0.10)		1				(0.10)			
결과부및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및인계		(0.12)	1				(0.12)				
소계	외업	0.58					0.58	0.47	0.47		
	내업	(0.81)					(0.21)	(0.69)			
합계		1.39					0.79	1.16	0.47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 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⑤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1-1-2. 신규등록측량(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3	1	1	1		0.43	0.43	0.43		
성과설명		0.08	1				0.08				
면적측정및계산		(0.05)		1				(0.05)			
결과도작성		(0.15)		1				(0.15)			
결과부및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및인계		(0.13)	1				(0.13)				
소계	외업	0.51					0.51	0.43	0.43		
	내업	(0.87)					(0.22)	(0.74)			
합계		1.38					0.73	1.17	0.43		

-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 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 산 횟 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 고
계 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④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1-1-3. 품셈 적용기준

- ① 신규등록 토지의 축척은 신규등록(도해)는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하며, 신규등록(수치)는 1/500, 1/1000으로 구분한다.
- ② 신규등록 면적이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이하, 임야대장등록지는 200㎡이하)인 필지에 대하여는 기본단가의 10%를 감면적용한다.
- ③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수수료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1-2. 단 가 산 출 (예)

2-1-2-1. 신규등록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79	인	201,490	159,177	
		지적산업기사		1.16	인	180,780	209,705	
		지 적 기 능 사		0.47	인	155,120	72,906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58	인	20,000	11,600	
			지 적 산 업 기 사	0.47	인	20,000	9,400	
			지 적 기 능 사	0.47	인	20,000	9,400	
			인 부					
		기 계 경 비					36,069	
		재료소모품비					6,454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88,357	
기 술 료		13%			68,919			
합 계			1필, 1,500㎡			671,987		
1 필 당						671,987		

2-1-2-2. 신규등록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73	인	201,490	147,088	
		지적산업기사		1.17	인	180,780	211,513	
		지 적 기 능 사		0.43	인	155,120	66,702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51	인	20,000	10,200	
			지 적 산 업 기 사	0.43	인	20,000	8,600	
			지 적 기 능 사	0.43	인	20,000	8,600	
			인 부					
		기 계 경 비					35,656	
		재료소모품비					5,582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85,060	
기 술 료		13%			66,347			
합 계			1필, 1,500㎡			645,348		
1 필 당						645,348		

2-1-3. 수수료 기본단가표

2-1-3-1. 신규등록측량(도해)

①[본 단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신규등록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2.6%, 시지역 52.6%, 구지역 52.6%

임야 : 군지역 52.6%, 시지역 52.6%, 구지역 52.6%

③ 신규등록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도 해	토 지	1,500㎡	353,000	497,000	558,000
	임 야	5,000㎡	445,000	591,000	661,000

2-1-3-2. 신규등록측량(수치)

①[본 단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신규등록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52.6%, 시지역 52.6%, 구지역 52.6%

③ 신규등록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1,500㎡	339,000	477,000	539,000

2-1-3-3. 연속지·집단지 신규등록측량

①[50필지까지는 지역(시·군·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원)

구 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이상
군 지 역	도 해	토 지	353,000	344,000	325,000	300,000	274,000
		임 야	445,000	437,000	416,000	395,000	367,000
	수 치		339,000	330,000	309,000	288,000	264,000
시 지 역	도 해	토 지	497,000	486,000	468,000	443,000	416,000
		임 야	591,000	584,000	562,000	536,000	511,000
	수 치		477,000	467,000	448,000	424,000	400,000
구 지 역	도 해	토 지	558,000	551,000	528,000	505,000	476,000
		임 야	661,000	649,000	625,000	603,000	574,000
	수 치		539,000	528,000	507,000	482,000	458,000

2-1-4. 공정일람표

2-1-4-1. 신규등록측량(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58 (0.21)	0.74 (0.27)	0.81 (0.29)	0.97 (0.35)	0.89 (0.32)	1.06 (0.38)
지 적 산 업 기 사		0.47 (0.69)	0.60 (0.88)	0.66 (0.97)	0.79 (1.16)	0.72 (1.06)	0.86 (1.26)
지 적 기 능 사		0.47	0.60	0.66	0.79	0.72	0.86
인 부							
소 계	외 업	1.52	1.94	2.13	2.55	2.33	2.78
	내 업	(0.90)	(1.15)	(1.26)	(1.51)	(1.38)	(1.64)
합 계		2.42	3.09	3.39	4.06	3.71	4.42

* ()내는 내업임

2-1-4-2. 신규등록측량(수치)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51 (0.22)	0.71 (0.31)	0.79 (0.34)
지 적 산 업 기 사		0.43 (0.74)	0.60 (1.04)	0.66 (1.14)
지 적 기 능 사		0.43	0.60	0.66
인 부				
소 계	외 업	1.37	1.91	2.11
	내 업	(0.96)	(1.35)	(1.48)
합 계		2.33	3.26	3.59

* ()내는 내업임

2-2. 등록 전환 측량

2-2-1. 작업공정 품셈기준

2-2-1-1. 등록전환측량(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는 내업임
계획준비		(0.10)	1	1			(0.10)	(0.10)			
준비도작성		(0.13)		1				(0.13)			
현지측량		0.50	1	1	1		0.50	0.50	0.50		
성과설명		0.13	1				0.13				
면적측정및계산		(0.07)		1				(0.07)			
결과도작성		(0.13)		1				(0.13)			
결과부및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및인계		(0.12)	1				(0.12)				
소계	외업	0.63					0.63	0.50	0.50		
	내업	(0.87)					(0.22)	(0.75)			
합계		1.50					0.85	1.25	0.50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호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 당 토지면적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2-1-2. 등록전환측량(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6)		1				(0.26)			
계획준비		(0.10)	1	1			(0.10)	(0.10)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50	1	1	1		0.50	0.50	0.50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및계산		(0.08)		1				(0.08)			
결과도작성		(0.16)		1				(0.16)			
결과부및조서작성		(0.13)		1				(0.13)			
성과점검및인계		(0.13)	1				(0.13)				
소계	외업	0.62					0.62	0.50	0.50		
	내업	(0.98)					(0.23)	(0.85)			
합계		1.60					0.85	1.35	0.50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호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 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 산 횟 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 고
계 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 자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2-1-3. 품셈 적용기준

- ① 등록전환 할 토지의 축척은 등록전환(도해)는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하며, 등록전환(수치)는 1/500, 1/1000으로 구분한다.
- ② 등록전환 될 면적이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 기준 200㎡이하)인 필지에 대해서는 기본단가의 10%를 감면적용한다.
- ③ 본 품에는 등록전환을 위하여 수반되는 임야분할측량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 ④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⑥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2-2. 단 가 산 출 (예)

2-2-2-1. 등록전환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85	인	201,490	171,267	
		지적산업기사		1.25	인	180,780	225,975	
		지 적 기 능 사		0.50	인	155,120	77,560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63	인	20,000	12,600	
			지 적 산 업 기 사	0.50	인	20,000	10,000	
			지 적 기 능 사	0.50	인	20,000	10,000	
			인 부					
		기 계 경 비					39,369	
		재료소모품비					7,300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94,960	
기 술 료		13%			74,069			
합 계			1필, 1,500㎡			723,100		
1 필 당						723,100		

2-2-2-2. 등록전환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85	인	201,490	171,267	
		지적산업기사		1.35	인	180,780	244,053	
		지 적 기 능 사		0.50	인	155,120	77,560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62	인	20,000	12,400	
			지 적 산 업 기 사	0.50	인	20,000	10,000	
			지 적 기 능 사	0.50	인	20,000	10,000	
			인 부					
		기 계 경 비					41,424	
		재료소모품비					6,714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98,576	
기 술 료		13%			76,889			
합 계			1필, 1,500㎡			748,883		
1 필 당						748,883		

2-2-3. 수수료 기본단가표

2-2-3-1. 등록전환측량(도해)

①[‘등록전환측량(도해)’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0호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등록전환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8.7%, 시지역 58.7%, 구지역 58.7%

③ 등록전환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도 해	토 지	1,500m ²	424,000	596,000	674,000

2-2-3-2. 등록전환측량(수치)

①[‘등록전환측량(수치)’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0호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이 경우에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등록전환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58.7%, 시지역 58.7%, 구지역 58.7%

③ 등록전환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1,500m ²	440,000	618,000	696,000

2-2-3-3. 연속지·집단지 등록전환측량

①[50필지까지는 지역(시·군·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원)

구 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이상
군 지 역	도 해	토 지	424,000	414,000	389,000	360,000	330,000
	수 치		440,000	427,000	403,000	373,000	340,000
시 지 역	도 해	토 지	596,000	585,000	562,000	531,000	500,000
	수 치		618,000	607,000	580,000	551,000	518,000
구 지 역	도 해	토 지	674,000	661,000	637,000	606,000	574,000
	수 치		696,000	686,000	659,000	628,000	594,000

2-2-4. 공정일람표

2-2-4-1. 등록전환측량(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63 (0.22)	0.88 (0.31)	0.97 (0.34)
지 적 산 업 기 사		0.50 (0.75)	0.70 (1.05)	0.77 (1.16)
지 적 기 능 사		0.50	0.70	0.77
인 부				
소 계	외 업	1.63	2.28	2.51
	내 업	(0.97)	(1.36)	(1.50)
합 계		2.60	3.64	4.01

* ()내는 내업임

2-2-4-2. 등록전환측량(수치)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62 (0.23)	0.87 (0.32)	0.95 (0.35)
지 적 산 업 기 사		0.50 (0.85)	0.70 (1.19)	0.77 (1.31)
지 적 기 능 사		0.50	0.70	0.77
인 부				
소 계	외 업	1.62	2.27	2.49
	내 업	(1.08)	(1.51)	(1.66)
합 계		2.70	3.78	4.15

* ()내는 내업임

2-3. 분할측량

2-3-1. 작업공정 품셈기준

2-3-1-1. 분할측량(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7	1	1	1		0.47	0.47	0.47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및계산		(0.05)		1				(0.05)			
결과도작성		(0.10)		1				(0.10)			
결과부및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및인계		(0.12)	1				(0.12)				
소계	외업	0.59					0.59	0.47	0.47		
	내업	(0.78)					(0.21)	(0.66)			
합계		1.37					0.80	1.13	0.47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토 지	임 야	비 고
계 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지가계수

㉠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 지가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 매 5,000,000원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 1.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 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 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 2.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⑥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분할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3-1-2. 분할측량(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0	1	1	1		0.40	0.40	0.40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및계산		(0.09)		1				(0.09)			
결과도작성		(0.15)		1				(0.15)			
결과부및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및인계		(0.13)	1				(0.13)				
소계	외업	0.52					0.52	0.40	0.40		
	내업	(0.91)					(0.22)	(0.78)			
합계		1.43					0.74	1.18	0.40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지가계수

- ㉞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한다.
- ㉟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 지가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 매 5,000,000원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1.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 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 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2.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⑤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분할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3-1-3.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②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한 면적계수를 품에 곱하여 가산한 단가를 산출한다.
- ③ 분할측량 할 토지의 축척은 분할측량(도해)는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하며 분할측량(수치)는 1/500, 1/1000으로 구분한다.
- ④ 면적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 값을 가산하고, 분할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0% 값을 가산한다.
- ⑤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지역 등에서 현장측량 없이 종전토지 분할이 필요할 경우 분할측량 내업품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및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⑥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⑦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⑧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3-2. 단 가 산 출 (예)

2-3-2-1. 분할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80	인	201,490	161,192		
		지적산업기사		1.13	인	180,780	204,281		
		지 적 기 능 사		0.47	인	155,120	72,906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0.59	인	20,000	11,800	
			지적산업기사		0.47	인	20,000	9,400	
			지 적 기 능 사		0.47	인	20,000	9,400	
			인 부						
		기 계 경 비					35,808		
		재료소모품비					6,338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87,676		
		기 술 료		13%			68,387		
합 계			2필, 1,500㎡			667,188			
1 필 당						333,594			

2-3-2-2. 분할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74	인	201,490	149,103	
		지적산업기사		1.18	인	180,780	213,320	
		지 적 기 능 사		0.40	인	155,120	62,048	
		인 부						
	직접경비	현장	지 적 기 사	0.52	인	20,000	10,400	
			지 적 산 업 기 사	0.40	인	20,000	8,000	
		여비	지 적 기 능 사	0.40	인	20,000	8,000	
			인 부					
		기 계 경 비					34,653	
		재료소모품비					5,692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84,894	
기 술 료		13%			66,217			
합 계			2필, 1,500㎡			642,327		
1 필 당						321,164		

2-3-3. 수수료 기본단가표

2-3-3-1. 분할측량(도해)

①[‘분할측량(도해)’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이 경우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분할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69.5%, 시지역 64.4%, 구지역 64.9%

임야 : 군지역 69.4%, 시지역 65.4%, 구지역 65.8%

③ 분할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도 해	토 지	1,500㎡	232,000	302,000	343,000
	임 야	5,000㎡	292,000	365,000	409,000

2-3-3-2. 분할측량(수치)

①[‘분할측량(수치)’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이 경우에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분할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69.5%, 시지역 64.4%, 구지역 64.9%

③ 분할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1,500㎡	223,000	291,000	331,000

2-3-3-3. 단가 적용기준

- ① 분할측량수수료는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단가를 가산한다.
- ② 분할측량 수수료는 군지역의 면적별 단가에 지가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③ 분할 후 필지의 면적이 토지대장등록지는 30,000㎡ 이상, 임야대장등록지는 100,000㎡ 이상일 경우 각각 30,000㎡, 100,000㎡에 해당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해당필지 전체에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분할 후 면적이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이하, 임야대장등록지는 200㎡이하)인 필지에 대하여는 기본단가의 10%를 감면적용한다.
- ⑤ 측량대상토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일 경우 기본단가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 ⑥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지역에서 현장측량 없이 종전토지 분할이 필요할 경우 분할측량 내업품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를 적용하되, 면적을 지정할 경우 내업품 수수료 단가의 40%를 가산하고 선을 지정할 경우 3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⑦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 차액정산은 종목변경 시점의 수수료 체계(지역구분 또는 지가계수)를 따른다.
- ⑧ 분할 후 필지수가 50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지가계수를 적용한 수수료와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쪽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3-3-4. 연속지·집단지 분할측량

①[50필지까지는 지역(시·군·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원)

구 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이상
군 지 역	도 해	토 지	232,000	225,000	213,000	197,000	180,000
		임 야	292,000	287,000	273,000	259,000	240,000
	수 치		223,000	217,000	203,000	191,000	173,000
시 지 역	도 해	토 지	302,000	295,000	284,000	269,000	253,000
		임 야	365,000	360,000	347,000	331,000	315,000
	수 치		291,000	285,000	272,000	259,000	242,000
구 지 역	도 해	토 지	343,000	337,000	324,000	309,000	292,000
		임 야	409,000	403,000	388,000	375,000	356,000
	수 치		331,000	324,000	312,000	298,000	282,000

2-3-4. 공정일람표

2-3-4-1. 분할측량(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59 (0.21)	0.76 (0.27)	0.83 (0.29)	0.99 (0.35)	0.91 (0.32)	1.07 (0.38)
지 적 산 업 기 사		0.47 (0.66)	0.60 (0.84)	0.66 (0.92)	0.79 (1.11)	0.72 (1.02)	0.86 (1.20)
지 적 기 능 사		0.47	0.60	0.66	0.79	0.72	0.86
인 부							
소 계	외 업	1.53	1.96	2.15	2.57	2.35	2.79
	내 업	(0.87)	(1.11)	(1.21)	(1.46)	(1.34)	(1.58)
합 계		2.40	3.07	3.36	4.03	3.69	4.37

* ()내는 내업임

2-3-4-2. 분할측량(수치)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52 (0.22)	0.73 (0.31)	0.80 (0.34)
지 적 산 업 기 사		0.40 (0.78)	0.56 (1.09)	0.62 (1.20)
지 적 기 능 사		0.40	0.56	0.62
인 부				
소 계	외 업	1.32	1.85	2.04
	내 업	(1.00)	(1.40)	(1.54)
합 계		2.32	3.25	3.58

* ()내는 내업임

2-4. 축척 변경 측량

2-4-1. 작업공정 품셈기준

2-4-1-1. 축척변경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4)		1				(0.24)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7)		1			(0.17)					
현지측량	0.56	1	1	1		0.56	0.56	0.56			
성과설명	0.14	1				0.14					
면적측정및계산	(0.07)		1			(0.07)					
결과도작성	(0.10)		1			(0.10)					
결과부및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및인계	(0.12)	1				(0.12)					
소계	외업	0.70					0.70	0.56	0.56		
	내업	(0.89)					(0.21)	(0.77)			
합계		1.59					0.91	1.33	0.56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토 지	임 야	비 고
계 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4-1-2. 축척변경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6)		1				(0.26)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62	1	1	1		0.62	0.62	0.62		
성과설명		0.13	1				0.13				
면적측정및계산		(0.04)		1				(0.04)			
결과도작성		(0.15)		1				(0.15)			
결과부및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및인계		(0.13)	1				(0.13)				
소계	외업	0.75					0.75	0.62	0.62		
	내업	(0.90)					(0.22)	(0.77)			
합계		1.65					0.97	1.39	0.62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4-1-3.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수수료를 별도 계상한다.

③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4-2. 단 가 산 출 (예)

2-4-2-1. 축척변경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91	인	201,490	183,356	
		지적산업기사		1.33	인	180,780	240,437	
		지 적 기 능 사		0.56	인	155,120	86,867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70	인	20,000	14,000	
			지 적 산 업 기 사	0.56	인	20,000	11,200	
			지 적 기 능 사	0.56	인	20,000	11,200	
			인 부					
		기 계 경 비					41,618	
		재료소모품비					6,730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02,132	
기 술 료		13%			79,663			
합 계			1필, 1,500㎡			777,203		
1 필 당						777,203		

2-4-2-2. 축척변경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97	인	201,490	195,445	
		지적산업기사		1.39	인	180,780	251,284	
		지 적 기 능 사		0.62	인	155,120	96,174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75	인	20,000	15,000	
			지 적 산 업 기 사	0.62	인	20,000	12,400	
			지 적 기 능 사	0.62	인	20,000	12,400	
			인 부					
		기 계 경 비					47,304	
		재료소모품비					6,586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08,581	
기 술 료		13%			84,693			
합 계			1필, 1,500㎡			829,867		
1 필 당						829,867		

2-4-3. 수수료 기본단가표

2-4-3-1. 축척변경측량(도해)

①[‘축척변경측량(도해)’이라 함은 도해지역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축척변경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39.1%, 시지역 39.5%, 구지역 39.4%

임야 : 군지역 38.9%, 시지역 39.1%, 구지역 39.4%

③ 축척변경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도 해	토 지	1,500㎡	304,000	431,000	486,000
	임 야	5,000㎡	383,000	509,000	570,000

2-4-3-2. 축척변경측량(수치)

①[‘축척변경측량(수치)’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축척변경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39.1%, 시지역 39.5%, 구지역 39.4%

③ 축척변경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1,500㎡	324,000	461,000	518,000

2-4-3-3. 연속지·집단지 축척변경측량

①[50필지까지는 지역(시·군·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원)

구 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이상
군 지 역	도 해	토 지	304,000	295,000	278,000	259,000	237,000
		임 야	383,000	373,000	357,000	337,000	314,000
	수 치		324,000	315,000	296,000	276,000	252,000
시 지 역	도 해	토 지	431,000	423,000	406,000	383,000	360,000
		임 야	509,000	500,000	482,000	462,000	440,000
	수 치		461,000	451,000	432,000	410,000	386,000
구 지 역	도 해	토 지	486,000	478,000	459,000	437,000	413,000
		임 야	570,000	561,000	543,000	522,000	498,000
	수 치		518,000	508,000	490,000	467,000	442,000

2-4-4. 공정일람표

2-4-4-1. 축척변경측량(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70 (0.21)	0.90 (0.27)	0.98 (0.29)	1.18 (0.35)	1.08 (0.32)	1.27 (0.38)
지 적 산 업 기 사		0.56 (0.77)	0.72 (0.99)	0.78 (1.08)	0.94 (1.29)	0.86 (1.19)	1.02 (1.40)
지 적 기 능 사		0.56	0.72	0.78	0.94	0.86	1.02
인 부							
소 계	외 업	1.82	2.34	2.54	3.06	2.80	3.31
	내 업	(0.98)	(1.26)	(1.37)	(1.64)	(1.51)	(1.78)
합 계		2.80	3.60	3.91	4.70	4.31	5.09

* ()내는 내업임

2-4-4-2. 축척변경측량(수치)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75 (0.22)	1.05 (0.31)	1.16 (0.34)
지 적 산 업 기 사		0.62 (0.77)	0.87 (1.08)	0.95 (1.19)
지 적 기 능 사		0.62	0.87	0.95
인 부				
소 계	외 업	1.99	2.79	3.06
	내 업	(0.99)	(1.39)	(1.53)
합 계		2.98	4.18	4.59

* ()내는 내업임

2-5.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2-5-1. 작업공정 품셈기준

2-5-1-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19)		1				(0.19)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지적전산파일변환		(0.06)		1				(0.06)			
준비도	작성	(0.04)		1				(0.04)			
	확인	(0.01)	1				(0.01)				
실지측량		0.36	1	2			0.36	0.72			
결과도작성		(0.16)		2				(0.32)			
면적측정및계산		(0.08)		2				(0.16)			
결과부및조서작성		(0.12)		2				(0.24)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5)	1				(0.05)				
소계	외업	0.36					0.36	0.72			
	내업	(0.78)					(0.13)	(1.04)			
합계		1.14					0.49	1.76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등·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된 지역의 정리를 위하여 조사·측량으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토 지	임 야	비 고
계 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⑤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불부합지 조사측량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5-1-2.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측량할 경우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된 지역의 정리를 위하여 조사·측량으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 시 분할 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단가를 가산한다.

④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한 면적계수를 품에 곱하여 가산한 단가를 산출한다.

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5-2. 단 가 산 출 (예)

2-5-2-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49	인	201,490	98,730	
		지적산업기사		1.76	인	180,780	318,173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36	인	20,000	7,200	
			지 적 산 업 기 사	0.72	인	20,000	14,400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31,903	
		재료소모품비					6,762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83,380	
기 술 료		13%			65,037			
합 계			2필, 1,500㎡			625,585		
1 필 당						312,793		

2-5-3. 수수료 기본단가표

2-5-3-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①[‘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측량할 경우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된 지역의 정리를 위하여 조사·측량하여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68.7%, 시지역 64.5%, 구지역 64.5%

임야 : 군지역 68.6%, 시지역 64.2%, 구지역 64.2%

③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도 해	토 지	1,500㎡	215,000	284,000	320,000
	임 야	5,000㎡	271,000	336,000	375,000

2-5-3-2. 단가 적용기준

①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 수수료는 분할 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가 추가될 때마다 1필지 단가를 가산한다.

2-5-3-3. 연속지·집단지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①[50필지까지는 지역(시·군·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원)

구 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이상
군 지 역	도 해	토 지	215,000	210,000	198,000	182,000	166,000
	수 치		271,000	265,000	253,000	239,000	223,000
시 지 역	도 해	토 지	284,000	278,000	266,000	253,000	238,000
	수 치		336,000	330,000	319,000	306,000	291,000
구 지 역	도 해	토 지	320,000	315,000	302,000	289,000	273,000
	수 치		375,000	368,000	356,000	344,000	327,000

2-5-4. 공정일람표

2-5-4-1.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36 (0.13)	0.46 (0.17)	0.50 (0.18)	0.60 (0.22)	0.55 (0.20)	0.66 (0.24)
지 적 산 업 기 사		0.72 (1.04)	0.92 (1.33)	1.01 (1.46)	1.21 (1.75)	1.11 (1.60)	1.31 (1.89)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1.08	1.38	1.51	1.81	1.66	1.97
	내 업	(1.17)	(1.50)	(1.64)	(1.97)	(1.80)	(2.13)
합 계		2.25	2.88	3.15	3.78	3.46	4.10

* ()내는 내업임

2-6. 경 계 복 원 측 량

2-6-1. 작업공정 품셈기준

2-6-1-1. 경계복원측량(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9	1	1	1		0.49	0.49	0.49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및계산		(0.01)		1				(0.01)			
결과도작성		(0.10)		1				(0.10)			
결과부및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및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0.61					0.61	0.49	0.49		
	내업	(0.71)					(0.18)	(0.62)			
합계		1.32					0.79	1.11	0.49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토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5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토 지	임 야	비 고
계 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지가계수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한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 지가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 매5,000,000원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1.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 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 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2.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⑥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6-1-2. 경계복원측량(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36	1	1	1		0.36	0.36	0.36		
성과설명		0.10	1				0.10				
면적측정및계산		(0.02)		1				(0.02)			
결과도작성		(0.15)		1				(0.15)			
결과부및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및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0.46					0.46	0.36	0.36		
	내업	(0.80)					(0.18)	(0.71)			
합계		1.26					0.64	1.07	0.36		

①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토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5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지가계수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한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 지가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 매 5,000,000마다
계 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1.'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 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 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2.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⑤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6-1-3.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에는 경계점표지의 설치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경계점표지를 제작하여 제공할 경우 재료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6-2. 단 가 산 출 (예)

2-6-2-1. 경계복원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79	인	201,490	159,177	
		지적산업기사		1.11	인	180,780	200,666	
		지 적 기 능 사		0.49	인	155,120	76,009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61	인	20,000	12,200	
			지 적 산 업 기 사	0.49	인	20,000	9,800	
			지 적 기 능 사	0.49	인	20,000	9,800	
			인 부					
		기 계 경 비					36,545	
		재료소모품비					6,182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87,170	
기 술 료		13%			67,993			
합 계			1필, 300㎡			665,542		
1 필 당						665,542		

2-6-2-2. 경계복원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64	인	201,490	128,954	
		지적산업기사		1.07	인	180,780	193,435	
		지 적 기 능 사		0.36	인	155,120	55,843	
		인 부						
	직접경비	현장	지 적 기 사	0.46	인	20,000	9,200	
			지적산업기사	0.36	인	20,000	7,200	
		여비	지 적 기 능 사	0.36	인	20,000	7,200	
			인 부					
		기 계 경 비					31,583	
		재료소모품비					5,284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75,646	
기 술 료		13%			59,004			
합 계			1필, 300㎡			573,349		
1 필 당						573,349		

2-6-3. 수수료 기본단가표

2-6-3-1. 경계복원측량(도해)

① [‘경계복원측량(도해)’이라 함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5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경계복원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3.0%, 시지역 49.5%, 구지역 50.0%

임야 : 군지역 52.5%, 시지역 50.5%, 구지역 51.2%

③ 경계복원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도 해	토 지	300㎡	353,000	463,000	526,000
	임 야	3,000㎡	441,000	560,000	634,000

2-6-3-2. 경계복원측량(수치)

① [‘경계복원측량(수치)’이라 함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필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5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경계복원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53.0%, 시지역 49.5%, 구지역 50.0%

③ 경계복원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300㎡	304,000	397,000	454,000

2-6-3-3. 단가 적용기준

①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군지역의 면적별 단가에 지가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토지 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② 측량대상토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일 경우 기본단가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③ 경계복원측량 시 해당필지 일부 경계점(연접한 필지와 맞닿은 부분의 경계점)에 대한 경계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필지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하고자 하는 경계복원점이 여러 필지에 연접되어 있는 경우 연접한 필지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④ 경계복원측량 필지수가 50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지가계수를 적용한 수수료와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쪽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6-3-4. 연속지·집단지 경계복원측량

①[50필지까지는 지역(시·군·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원)

구 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이상
군 지 역	도 해	토 지	353,000	343,000	324,000	299,000	273,000
		임 야	441,000	431,000	411,000	388,000	362,000
	수 치		304,000	296,000	279,000	259,000	235,000
시 지 역	도 해	토 지	463,000	454,000	435,000	413,000	388,000
		임 야	560,000	554,000	535,000	509,000	486,000
	수 치		397,000	390,000	374,000	356,000	333,000
구 지 역	도 해	토 지	526,000	518,000	497,000	476,000	449,000
		임 야	634,000	624,000	605,000	579,000	551,000
	수 치		454,000	444,000	429,000	410,000	386,000

2-6-4. 공정일람표

2-6-4-1. 경계복원측량(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61 (0.18)	0.78 (0.23)	0.85 (0.25)	1.02 (0.30)	0.94 (0.28)	1.11 (0.33)
지 적 산 업 기 사		0.49 (0.62)	0.63 (0.79)	0.69 (0.87)	0.82 (1.04)	0.75 (0.95)	0.89 (1.13)
지 적 기 능 사		0.49	0.63	0.69	0.82	0.75	0.89
인 부							
소 계	외 업	1.59	2.04	2.23	2.66	2.44	2.89
	내 업	(0.80)	(1.02)	(1.12)	(1.34)	(1.23)	(1.46)
합 계		2.39	3.06	3.35	4.00	3.67	4.35

* ()내는 내업임

2-6-4-2. 경계복원측량(수치)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46 (0.18)	0.64 (0.25)	0.71 (0.28)
지 적 산 업 기 사		0.36 (0.71)	0.50 (0.99)	0.55 (1.09)
지 적 기 능 사		0.36	0.50	0.55
인 부				
소 계	외 업	1.18	1.64	1.81
	내 업	(0.89)	(1.24)	(1.37)
합 계		2.07	2.88	3.18

* ()내는 내업임

2-7. 지적 현황 측량

2-7-1. 작업공정 품셈기준

2-7-1-1. 지적현황측량(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5	1	1	1		0.45	0.45	0.45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및계산		(0.03)		1				(0.03)			
결과도작성		(0.10)		1				(0.10)			
결과부및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및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0.57					0.57	0.45	0.45		
	내업	(0.73)					(0.18)	(0.64)			
합계		1.30					0.75	1.09	0.45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토 지	임 야	비 고
계 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지가계수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한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 지가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 매 5,000,000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1.'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 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 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2.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⑥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지적현황측량 시 분할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7-1-2. 지적현황측량(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0	1	1	1		0.40	0.40	0.40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및계산		(0.03)		1				(0.03)			
결과도작성		(0.15)		1				(0.15)			
결과부및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및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0.52					0.52	0.40	0.40		
	내업	(0.81)					(0.18)	(0.72)			
합계		1.33					0.70	1.12	0.40		

①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현황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지가계수

㉞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한다.

㉟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 지가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 매 5,000,000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1.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 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 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2.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⑤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지적현황측량 시 분할 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7-1-3.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은 지적현황측량시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②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한 면적계수를 품에 곱하여 가산한 단가를 산출한다.

③ 면적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하고, 현황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0%의 값을 가산한다.

④ 현장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및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수수료를 별도 계상한다.

⑦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7-2. 단 가 산 출 (예)

2-7-2-1. 지적현황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75	인	201,490	151,118	
		지적산업기사		1.09	인	180,780	197,050	
		지 적 기 능 사		0.45	인	155,120	69,804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0.57	인	20,000	11,400	
			지 적 산 업 기 사	0.45	인	20,000	9,000	
			지 적 기 능 사	0.45	인	20,000	9,000	
			인 부					
		기 계 경 비					34,476	
		재 료 소 모 품 비					6,226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83,594	
기 술 료		13%			65,203			
합 계			2필, 1,500㎡			636,871		
1 필 당						318,436		

2-7-2-2. 지적현황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70	인	201,490	141,043	
		지적산업기사		1.12	인	180,780	202,474	
		지 적 기 능 사		0.40	인	155,120	62,048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지 적 기 사	0.52	인	20,000	10,400	
			지적산업기사	0.40	인	20,000	8,000	
		여 비	지 적 기 능 사	0.40	인	20,000	8,000	
			인 부					
		기 계 경 비					34,130	
		재료소모품비					5,460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81,113	
기 술 료		13%			63,268			
합 계			2필, 1,500㎡			615,936		
1 필 당						307,968		

2-7-3. 수수료 기본단가표

2-7-3-1. 지적현황측량(도해)

①[‘지적현황측량(도해)’이라 함은 도해지역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현황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65.3%, 시지역 60.3%, 구지역 60.9%

임야 : 군지역 65.3%, 시지역 61.7%, 구지역 62.0%

③ 지적현황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도 해	토 지	1,500㎡	208,000	270,000	308,000
	임 야	5,000㎡	263,000	330,000	368,000

2-7-3-2. 지적현황측량(수치)

①[‘지적현황측량(수치)’이라 함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65.3%, 시지역 60.3%, 구지역 60.9%

③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1,500㎡	201,000	261,000	298,000

2-7-3-3. 단가 적용기준

- ① 지적현황측량수수료는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단가를 가산한다.
- ②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는 군지역의 면적별 단가에 지가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토지 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③ 현황(분할식) 필지의 면적이 토지대장등록지는 30,000㎡ 이상, 임야대장등록지는 100,000㎡ 이상일 경우 각각 30,000㎡, 100,000㎡ 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해당필지 전체에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현황(분할식) 후 면적이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이하, 임야대장등록지는 200㎡이하)인 필지에 대하여는 기본단가의 10%를 감면적용한다.
- ⑤ 측량대상토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일 경우 기본단가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 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지구 등의 지적확정측량 지역에서 지적확정측량에 정선에 의한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수치지면 발급요구시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⑦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획물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에 50%의 값을 가산 적용한다.
- ⑧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은 지역구분계수를 적용한 행정구역별(군·시·구) 수수료를 적용하며, 인허가 면적등을 도상에 맞추어 성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에 40%, 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 적용한다.
- ⑨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접합 및 도로명기본도의 정밀도 개선 사업'에 따른 수수료는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한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되, 국가시책사업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 ⑩ 지적현황측량 후 필지수가 50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지가계수를 적용한 수수료와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쪽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7-3-4. 연속지·집단지 지적현황측량

①[50필지까지는 지역(시·군·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원)

구 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이상
군 지 역	도 해	토 지	208,000	202,000	190,000	177,000	161,000
		임 야	263,000	256,000	245,000	231,000	216,000
	수 치		201,000	195,000	183,000	171,000	156,000
시 지 역	도 해	토 지	270,000	265,000	254,000	241,000	225,000
		임 야	330,000	323,000	313,000	298,000	284,000
	수 치		261,000	256,000	244,000	232,000	218,000
구 지 역	도 해	토 지	308,000	302,000	290,000	277,000	262,000
		임 야	368,000	363,000	351,000	337,000	320,000
	수 치		298,000	292,000	280,000	267,000	253,000

2-7-4. 공정일람표

2-7-4-1. 지적현황측량(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57 (0.18)	0.73 (0.23)	0.80 (0.25)	0.96 (0.30)	0.88 (0.28)	1.04 (0.33)
지 적 산 업 기 사		0.45 (0.64)	0.58 (0.82)	0.63 (0.90)	0.76 (1.08)	0.69 (0.99)	0.82 (1.16)
지 적 기 능 사		0.45	0.58	0.63	0.76	0.69	0.82
인 부							
소 계	외 업	1.47	1.89	2.06	2.48	2.26	2.68
	내 업	(0.82)	(1.05)	(1.15)	(1.38)	(1.27)	(1.49)
합 계		2.29	2.94	3.21	3.86	3.53	4.17

* ()내는 내업임

2-7-4-2. 지적현황측량(수치)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52 (0.18)	0.73 (0.25)	0.80 (0.28)
지 적 산 업 기 사		0.40 (0.72)	0.56 (1.01)	0.62 (1.11)
지 적 기 능 사		0.40	0.56	0.62
인 부				
소 계	외 업	1.32	1.85	2.04
	내 업	(0.90)	(1.26)	(1.39)
합 계		2.22	3.11	3.43

* ()내는 내업임

2-8. 도시계획선명시측량

2-8-1. 작업공정 품셈기준

2-8-1-1.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49	1	1	1		0.49	0.49	0.49		
성과설명		0.12	1				0.12				
면적측정및계산		(0.01)		1				(0.01)			
결과도작성		(0.10)		1				(0.10)			
결과부및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및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0.61					0.61	0.49	0.49		
	내업	(0.71)					(0.18)	(0.62)			
합계		1.32					0.79	1.11	0.49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토 지	임 야	비 고
계 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계 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지가계수

㉞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한다.

㉞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 지가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 매 5,000,000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1.'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 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 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2.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⑥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8-1-2.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현지측량		0.36	1	1	1		0.36	0.36	0.36		
성과설명		0.10	1				0.10				
면적측정및계산		(0.02)		1				(0.02)			
결과도작성		(0.15)		1				(0.15)			
결과부및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및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0.46					0.46	0.36	0.36		
	내업	(0.80)					(0.18)	(0.71)			
합계		1.26					0.64	1.07	0.36		

- ①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지가계수

㉠대상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측량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한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 지가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 매 5,000,000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1.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 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 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2.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⑤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되거나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2-8-1-3.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에는 경계점표지의 설치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경계점표지를 제작하여 제공할 경우 재료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작업상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8-2. 단 가 산 출 (예)

2-8-2-1.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79	인	201,490	159,177	
		지적산업기사		1.11	인	180,780	200,666	
		지 적 기 능 사		0.49	인	155,120	76,009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0.61	인	20,000	12,200	
			지 적 산 업 기 사	0.49	인	20,000	9,800	
			지 적 기 능 사	0.49	인	20,000	9,800	
			인 부					
		기 계 경 비					36,545	
		재료소모품비					6,182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87,170	
기 술 료		13%			67,993			
합 계			1필, 300㎡			665,542		
1 필 당						665,542		

2-8-2-2.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64	인	201,490	128,954	
		지적산업기사		1.07	인	180,780	193,435	
		지 적 기 능 사		0.36	인	155,120	55,843	
		인 부						
	직접경비	현장	지 적 기 사	0.46	인	20,000	9,200	
			지 적 산 업 기 사	0.36	인	20,000	7,200	
		여비	지 적 기 능 사	0.36	인	20,000	7,200	
			인 부					
		기 계 경 비					31,583	
		재료소모품비					5,284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75,646	
기 술 료		13%			59,004			
합 계			1필, 300㎡			573,349		
1 필 당						573,349		

2-8-3. 수수료 기본단가표

2-8-3-1.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①[‘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이라 함은 도해지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3.0%, 시지역 49.5%, 구지역 50.0%
임야 : 군지역 52.5%, 시지역 50.5%, 구지역 51.2%

③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도 해	토 지	300㎡	353,000	463,000	526,000
	임 야	3,000㎡	441,000	560,000	634,000

2-8-3-2.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①[‘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이라 함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53.0%, 시지역 49.5%, 구지역 50.0%

③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300㎡	304,000	397,000	454,000

2-8-3-3. 단가 적용기준

- ①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수수료는 군지역의 면적별 단가에 지가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토지 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② 1필지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작은 면적으로 한다. 다만, 동시에 일부분의 지적선을 경계복원 하였을 때 경계복원한 필지의 면적으로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선과 전체 필지를 경계복원한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별도 가산한다.
- ③ 측량대상토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일 경우 기본단가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 ④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필지수가 50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지가계수를 적용한 수수료와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쪽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8-3-4. 연속지·집단지 도시계획선명시측량

①[50필지까지는 지역(시·군·구)구분별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필지수에 따른 연속지·집단지 계수 구간별로 각각 순차적용하여 합산한다.

(금액단위:원)

구 분			50필지 까지	51필지 ~100필지	101필지 ~500필지	501필지 ~1,000필지	1,000필지 이상
군 지 역	도 해	토 지	353,000	343,000	324,000	299,000	273,000
		임 야	441,000	431,000	411,000	388,000	362,000
	수 치		304,000	296,000	279,000	259,000	235,000
시 지 역	도 해	토 지	463,000	454,000	435,000	413,000	388,000
		임 야	560,000	554,000	535,000	509,000	486,000
	수 치		397,000	390,000	374,000	356,000	333,000
구 지 역	도 해	토 지	526,000	518,000	497,000	476,000	449,000
		임 야	634,000	624,000	605,000	579,000	551,000
	수 치		454,000	444,000	429,000	410,000	386,000

2-8-4. 공정일람표

2-8-4-1. 도시계획선명시측량(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61 (0.18)	0.78 (0.23)	0.85 (0.25)	1.02 (0.30)	0.94 (0.28)	1.11 (0.33)
지 적 산 업 기 사		0.49 (0.62)	0.63 (0.79)	0.69 (0.87)	0.82 (1.04)	0.75 (0.95)	0.89 (1.13)
지 적 기 능 사		0.49	0.63	0.69	0.82	0.75	0.89
인 부							
소 계	외 업	1.59	2.04	2.23	2.66	2.44	2.89
	내 업	(0.80)	(1.02)	(1.12)	(1.34)	(1.23)	(1.46)
합 계		2.39	3.06	3.35	4.00	3.67	4.35

* ()내는 내업임

2-8-4-2. 도시계획선명시측량(수치)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46 (0.18)	0.64 (0.25)	0.71 (0.28)
지 적 산 업 기 사		0.36 (0.71)	0.50 (0.99)	0.55 (1.09)
지 적 기 능 사		0.36	0.50	0.55
인 부				
소 계	외 업	1.18	1.64	1.81
	내 업	(0.89)	(1.24)	(1.37)
합 계		2.07	2.88	3.18

* ()내는 내업임

2-9.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2-9-1. 작업공정 품셈기준

2-9-1-1.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지구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5.33)	1	2			(5.33)	(10.66)			()는 내업임
계획준비		(1.68)	1	1			(1.68)	(1.68)			
현장조사		2.19	1	2			2.19	4.38			
지적전산파일변환		(3.31)	1	2			(3.31)	(6.62)			
준비도	작성	(5.26)	1	2			(5.26)	(10.52)			
	확인	(0.62)	1				(0.62)				
중심점계산		(31.04)	1	2			(31.04)	(62.08)			
가구점계산		(23.85)	1	2			(23.85)	(47.70)			
필계점계산		(19.36)	1	2			(19.36)	(38.72)			
예정좌표산출		(10.21)	1	2			(10.21)	(20.42)			
예정결과도작성		(12.03)	1	2			(12.03)	(24.06)			
성과작성		(32.43)	1	2			(32.43)	(64.86)			
점검		(3.59)	1				(3.59)				
성과인계		(2.03)	1				(2.03)				
소계	외업	2.19					2.19	4.38			
	내업	(150.74)					(150.74)	(287.32)			
합계		152.93					152.93	291.70			

-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에 적용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 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산 횟 수	10만㎡	10만㎡ 초과 ~ 50만㎡	50만㎡ 초과 ~ 100만㎡	100만㎡ 초과 ~ 200만㎡	2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계 수	1.0	0.9	0.8	0.7	0.6	0.5

2-9-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지구내 중심점·가구점 및 필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품이며,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지적기준점에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 품이며,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작성업무(지구계점) 품과 도해측량 및 기준점측량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지구내에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말박기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지구내) 측량 품의 50%를 계상한다.
- ③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한 면적계수를 품에 곱하여 가산한 단가를 산출한다.
- ④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2-9-2. 단 가 산 출 (예)

2-9-2-1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지구내)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152.93	인	201,490	30,813,866	
		지적산업기사		291.70	인	180,780	52,733,526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2.19	인	20,000	43,800	
			지 적 산 업 기 사	4.38	인	20,000	87,600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1,357,616	
		재 료 소 모 품 비					137,010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6,709,478	
기 술 료		13%			13,033,393			
합 계			100,000 m ²			114,916,289		
1 m ² 당						1,149.16		

2-9-3. 수수료 기본단가표

2-9-3-1.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지구내)

- ①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지구내)’ 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 등을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내의 예정지적좌표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지구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36.1%, 시지역 37.8%, 구지역 39.6%
- ③ 택지개발예정지적도 작성측량(지구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m ² 당	414.8	445.1	481.2

2-9-3-2.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지구계점)

- ① [본 단가는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지구계점에 대한 측량과정을 거친 후, 지적기준점에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기 위한 업무에 적용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과 지적기준점측량 수수료는 별도 계상한다.
- ②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공구)계점 좌표산출 수수료는 점을 필지수로 하여 지역구분계수(군·시·구)별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의 기본단가를 적용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적용한다.
- ③ 택지개발예정지적도 작성측량(지구계점)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점 당	201,000	261,000	298,000

2-9-3-3. 단가 적용기준

- ①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측량,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② 사업지구내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말박기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지구내)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2. 9. 4. 3 말박기측량 수수료(중심점·가구점, 필계점) 참조
- 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2-9-4. 면적체감계수 및 말박기측량 수수료

2-9-4-1. 면적체감계수

- ①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가 산 횟 수	10만㎡ 이하	10만㎡ 초과 ~ 50만㎡	50만㎡ 초과 ~ 100만㎡	100만㎡ 초과 ~ 200만㎡	2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계 수	1.0	0.9	0.8	0.7	0.6	0.5

2-9-4-2.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지구내)

(단위: 1㎡당 / 원)

면 적 별	10만㎡ 이하	10만㎡ 초과 ~ 50만㎡	50만㎡ 초과 ~ 100만㎡	100만㎡ 초과 ~ 200만㎡	2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군 지 역	414.8	373.9	333.0	292.0	251.1	210.1
시 지 역	445.1	401.1	357.2	313.3	269.3	225.4
구 지 역	481.2	433.7	386.2	338.6	291.1	243.6

2-9-4-3. 말박기측량 수수료 단가(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단위: 1㎡당 / 원)

면 적 별	10만㎡ 이하	10만㎡ 초과 ~ 50만㎡	50만㎡ 초과 ~ 100만㎡	100만㎡ 초과 ~ 200만㎡	2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군 지 역	207.4	186.9	166.5	146.0	125.5	105.0
시 지 역	222.5	200.5	178.6	156.6	134.6	112.7
구 지 역	240.6	216.8	193.1	169.3	145.5	121.8

2-9-5. 공정일람표

2-9-5-1.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지구내)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2.19 (150.74)	2.19 (150.74)	2.19 (150.74)
지 적 산 업 기 사		4.38 (287.32)	4.38 (287.32)	4.38 (287.32)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6.57	6.57	6.57
	내 업	(438.06)	(438.06)	(438.06)
합 계		444.63	444.63	444.63

* ()내는 내업임

2-10. 지적 현황 내 업 품

2-10-1. 작업공정 품셈기준

2-10-1-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0)		1				(0.20)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면적측정및계산		(0.03)		1				(0.03)			
결과도작성		(0.10)		1				(0.10)			
결과부및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및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내업	(0.73)					(0.18)	(0.64)			
합계		0.73					0.18	0.64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편입지에 대한 면적측정 등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아 지적현황측량의 내업품만을 적용할 경우의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2-10-1-2. 지적현황 내업품(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2)		1				(0.22)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준비도작성		(0.12)		1				(0.12)			
면적측정및계산		(0.03)		1				(0.03)			
결과도작성		(0.15)		1				(0.15)			
결과부및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및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내업	(0.81)					(0.09)	(0.72)			
합계		0.81					0.09	0.72			

①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편입지에 대한 면적측정 등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아 지적현황측량의 내업품만을 적용할 경우의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 = (대상면적 - 기준면적) ÷ 기준면적 * 소수점 이하는 절상

2-10-1-3.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은 지적현황측량의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을 적용한 것으로서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와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각각 적용한다.

2-10-2. 단 가 산 출 (예)

2-10-2-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군지역 (토지)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18	인	201,490	36,268		
		지적산업기사		0.64	인	180,780	115,699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인	20,000		
			지 적 산 업 기 사			인	20,000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8,420		
		재 료 소 모 품 비					2,728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30,393		
기 술 료		13%			23,707				
합 계			2필, 1,500㎡			217,215			
1 필 당						108,608			

2-10-2-2.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군지역 (수치)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18	인	201,490	36,268		
		지적산업기사		0.72	인	180,780	130,162		
		지 적 기 능 사			인	155,120			
		인 부							
	직접경비	현장	지 적 기 사			인	20,000		
			지적산업기사			인	20,000		
		여비	지 적 기 능 사			인	20,000		
			인 부						
		기 계 경 비					10,970		
		재료소모품비					3,057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33,286		
기 술 료		13%			25,963				
합 계			2필, 1,500㎡			239,706			
1 필 당						119,853			

2-10-3. 수수료 기본단가표

2-10-3-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 ①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이라 함은 도해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편입지에 대한 면적측정 등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지적현황측량 내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39.6%, 시지역 50.4%, 구지역 53.2%
 임야 : 군지역 39.3%, 시지역 44.7%, 구지역 48.9%
- ③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도 해	토 지	1,500㎡	43,000	56,000	61,000
	임 야	5,000㎡	54,000	63,000	71,000

2-10-3-2.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 ①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이라 함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편입지에 대한 면적측정 등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지적현황측량 내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39.6%, 시지역 50.4%, 구지역 53.2%
- ③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1,500㎡	47,000	62,000	67,000

2-10-3-3. 단가 적용기준

- ① 지적현황측량 내업품 수수료는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단위로 본 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추가될 때마다 본 단가를 가산한다.
- ② 본 단가는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로서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이다. 이 경우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및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지역구분계수를 적용한 행정구역별(군·시·구) 단가를 적용하며, 인허가 면적등을 도상에 맞추어 성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에 40%, 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 적용한다.
- ④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에 의하여 작성된 성과는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할 수 없다.

2-10-4. 공정일람표

2-10-4-1. 지적현황측량 내업품(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18)	(0.23)	(0.18)	(0.23)	(0.18)	(0.23)
지 적 산 업 기 사		(0.64)	(0.82)	(0.64)	(0.82)	(0.64)	(0.82)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82)	(1.05)	(0.82)	(1.05)	(0.82)	(1.05)
합 계		0.82	1.05	0.82	1.05	0.82	1.05

* ()내는 내업임

2-10-4-2. 지적현황측량 내업품(수치)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18)	(0.18)	(0.18)
지 적 산 업 기 사		(0.72)	(0.72)	(0.72)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90)	(0.90)	(0.90)
합 계		0.90	0.90	0.90

* ()내는 내업임

3. 지적 확정 측량

3-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3-1-1. 작업공정 품셈기준

3-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3.42)	1	1			(3.42)	(3.42)			()는 내업임
자료조사		(4.03)		1				(4.03)			
현장조사		4.82	1	2			4.82	9.64			
지적전산파일변환		(3.58)		1				(3.58)			
지구계 준비도	작성	(6.19)		1				(6.19)			
	확인	(0.92)	1				(0.92)				
지구계	측량	9.94	1	2	1		9.94	19.88	9.94		
	결과도작성	(6.58)	1	1			(6.58)	(6.58)			
가구점	측량	13.22	1	2	1		13.22	26.44	13.22		
	계산	(10.86)	1	1			(10.86)	(10.86)			
필계점	측량	21.39	1	2	1		21.39	42.78	21.39		
	계산	(10.89)	1	1			(10.89)	(10.89)			
중심점계산		(8.40)	1	1			(8.40)	(8.40)			
좌표면적계산		(8.43)	1	1			(8.43)	(8.43)			
결과도작성		(3.10)		2				(6.20)			
성과작성		(8.20)		2				(16.40)			
조서작성		(5.88)		2				(11.76)			
납품도서류작성		(10.02)		2				(20.04)			
점검		(5.01)	1				(5.01)				
성과설명및인계		(2.58)	1				(2.58)				
소계	외업	49.37					49.37	98.74	44.55		
	내업	(98.09)					(57.09)	(116.78)			
합계		147.46					106.46	215.52	44.55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횟수	10만㎡ 이하	10만㎡ 초과 ~ 50만㎡	50만㎡ 초과 ~ 100만㎡	100만㎡ 초과 ~ 200만㎡	2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3-1-2. 단 가 산 출 (예)

3-1-2-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106.46	인	201,490	21,450,625	
		지적산업기사		215.52	인	180,780	38,961,706	
		지 적 기 능 사		44.55	인	155,120	6,910,596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49.37	인	20,000	987,400	
			지 적 산 업 기 사	98.74	인	20,000	1,974,800	
			지 적 기 능 사	44.55	인	20,000	891,000	
			인 부					
		기 계 경 비					3,279,245	
		재 료 소 모 품 비					394,181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13,464,585	
기 술 료		13%			10,502,376			
합 계			100,000 m ²			98,816,514		
1 m ² 당						988.17		

3-1-3. 수수료 기본단가표

3-1-3-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①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84.4%, 시지역 84.5%, 구지역 88.7%

③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m ² 당	834.0	854.3	923.7

3-1-3-2. 단가 적용기준

①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 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③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의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3-1-4-3 말박기 측량 수수료(중심점·가구점, 필계점) 참조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⑥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m²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 합산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⑦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10,000m²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⑧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또는 2개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지구가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시 계약하는 경우에는 면적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사업완료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3-1-4. 면적체감계수 및 말박기측량 수수료

3-1-4-1. 면적체감계수

- ①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 합산한다.

가 산 횟 수	10만㎡이하	10만㎡ 초과 ~ 50만㎡	50만㎡ 초과 ~ 100만㎡	100만㎡ 초과 ~ 200만㎡	2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계 수	1.0	0.9	0.8	0.7	0.6	0.5

3-1-4-2. 면적별 단가

(단위: 1㎡당 / 원)

면 적 별	10만㎡이하	10만㎡ 초과 ~ 50만㎡	50만㎡ 초과 ~ 100만㎡	100만㎡ 초과 ~ 200만㎡	2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군 지 역	834.0	753.7	673.4	593.1	512.8	432.5
시 지 역	854.3	771.9	689.6	607.3	525.0	442.7
구 지 역	923.7	834.6	745.5	656.4	567.3	478.1

3-1-4-3. 말박기측량 수수료 단가(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단위: 1㎡당 / 원)

면 적 별	10만㎡이하	10만㎡ 초과 ~ 50만㎡	50만㎡ 초과 ~ 100만㎡	100만㎡ 초과 ~ 200만㎡	2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군 지 역	250.2	226.1	202.0	177.9	153.8	129.7
시 지 역	256.3	231.6	206.9	182.2	157.5	132.8
구 지 역	277.1	250.4	223.6	196.9	170.2	143.4

3-1-5. 공정일람표

3-1-5-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지구당 100,000㎡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49.37 (57.09)	49.37 (57.09)	49.37 (57.09)
지 적 산 업 기 사		98.74 (116.78)	98.74 (116.78)	98.74 (116.78)
지 적 기 능 사		44.55	44.55	44.55
인 부				
소 계	외 업	192.66	192.66	192.66
	내 업	(173.87)	(173.87)	(173.87)
합 계		366.53	366.53	366.53

* ()내는 내업임

3-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3-2-1. 작업공정 품셈기준

3-2-1-1.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2.63)	1	1			(2.63)	(2.63)			()는 내업임
자료조사		(3.40)		2				(6.80)			
현장조사		3.90	1	1			3.90	3.90			
지적전산파일변환		(6.00)		2				(12.00)			
지구계 준비도	작성	(7.83)	1	2	1		(7.83)	(15.66)	(7.83)		
	확인	(1.05)	1				(1.05)				
지구계	측량	14.53	1	2	1		14.53	29.06	14.53		
	결과도작성	(15.48)	1	2	1		(15.48)	(30.96)	(15.48)		
필계점	측량	21.73	1	2	1		21.73	43.46	21.73		
	계산	(16.70)	1	1			(16.70)	(16.70)			
좌표면적계산		(15.75)	1	1			(15.75)	(15.75)			
결과도작성		(3.03)	1	2	1		(3.03)	(6.06)	(3.03)		
성과도작성		(9.68)	1	2	1		(9.68)	(19.36)	(9.68)		
조서작성		(5.88)		2	1			(11.76)	(5.88)		
납품도서류작성		(8.45)	1	2	1		(8.45)	(16.90)	(8.45)		
점검		(5.65)	1				(5.65)				
성과설명및인계		(1.40)	1				(1.40)				
소계	외업	40.16					40.16	76.42	36.26		
	내업	(102.93)					(87.65)	(154.58)	(50.35)		
합계		143.09					127.81	231.00	86.61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경지구획정리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 지구면적이 1,0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횟수	100만㎡ 이하	1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 500만㎡	500만㎡ 초과 ~ 800만㎡	800만㎡ 초과 ~ 1,000만㎡	1,0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3-2-2. 단 가 산 출 (예)

3-2-2-1.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127.81	인	201,490	25,752,437	
		지적산업기사		231.00	인	180,780	41,760,180	
		지 적 기 능 사		86.61	인	155,120	13,434,943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40.16	인	20,000	803,200	
			지 적 산 업 기 사	76.42	인	20,000	1,528,400	
			지 적 기 능 사	36.26	인	20,000	725,200	
			인 부					
		기 계 경 비					2,760,850	
		재 료 소 모 품 비					402,259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16,189,512	
기 술 료		13%			12,627,819			
합 계			1,000,000 m ²			115,984,800		
1 m ² 당						115.98		

3-2-3. 수수료 기본단가표

3-2-3-1.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 ①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 ② 경지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54.5%, 시지역 54.3%, 구지역 57.2%

③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m ² 당	63.2	64.5	70.0

3-2-3-2. 단가 적용기준

- ① 기본단가에는 지구계분할 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다만,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측량의뢰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 ③ 말박기 측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④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30,000m²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3-2-4. 면적체감계수 및 말박기측량 수수료

3-2-4-1. 면적체감계수

- ①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면적별로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 합산한다.

가 산 횟 수	100만㎡ 이하	1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 500만㎡	500만㎡ 초과 ~ 800만㎡	800만㎡ 초과 ~ 1,000만㎡	1,000만㎡ 초과
계 수	1.0	0.9	0.8	0.7	0.6	0.5

3-2-4-2. 면적별 단가

- ①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적별 체감계수를 순차적으로 곱하여 각각을 합산한 단가로 한다.

(단위: 1㎡당 / 원)

면 적 별	100만㎡ 이하	1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 500만㎡	500만㎡ 초과 ~ 800만㎡	800만㎡ 초과 ~ 1,000만㎡	1,000만㎡ 초과
군 지 역	63.2	57.1	50.9	44.8	38.6	32.5
시 지 역	64.5	58.2	51.9	45.6	39.4	33.1
구 지 역	70.0	63.2	56.4	49.5	42.7	35.9

3-2-4-3. 말박기측량 수수료 단가

(단위: 1㎡당 / 원)

면 적 별	100만㎡ 이하	1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 500만㎡	500만㎡ 초과 ~ 800만㎡	800만㎡ 초과 ~ 1,000만㎡	1,000만㎡ 초과
군 지 역	19.0	17.1	15.3	13.4	11.6	9.7
시 지 역	19.3	17.5	15.6	13.7	11.8	9.9
구 지 역	21.0	19.0	16.9	14.8	12.8	10.8

3-2-5. 공정일람표

3-2-5-1.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1지구당 1,000,000㎡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40.16 (87.65)	40.16 (87.65)	40.16 (87.65)
지 적 산 업 기 사		76.42 (154.58)	76.42 (154.58)	76.42 (154.58)
지 적 기 능 사		36.26 (50.35)	36.26 (50.35)	36.26 (50.35)
인 부				
소 계	외 업	152.84	152.84	152.84
	내 업	(292.58)	(292.58)	(292.58)
합 계		445.42	445.42	445.42

* ()내는 내업임

3-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3-1. 작업공정 품셈기준

3-3-1-1.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4.03)		1				(4.03)			()는 내업임
계획준비		(3.42)	1	1			(3.42)	(3.42)			
현장조사		4.82	1	2			4.82	9.64			
지적전산파일변환		(3.58)		1				(3.58)			
지구계 준비도	작성	(6.19)		1				(6.19)			
	확인	(0.92)	1				(0.92)				
지구계	측량	13.22	1	2	1		13.22	26.44	13.22		
	계산	(10.86)	1	1			(10.86)	(10.86)			
필계점	측량	9.18	1	2	1		9.18	18.36	9.18		
	계산	(9.44)	1	1			(9.44)	(9.44)			
중심점계산		(8.40)	1	1			(8.40)	(8.40)			
좌표면적계산		(8.43)	1	1			(8.43)	(8.43)			
결과도작성		(3.10)		2				(6.20)			
성과작성		(18.22)		2				(36.44)			
조서작성		(5.88)		2				(11.76)			
점검		(5.01)	1				(5.01)				
성과인계		(2.58)	1				(2.58)				
소계	외업	27.22					27.22	54.44	22.40		
	내업	(90.06)					(49.06)	(108.75)			
합계		117.28					76.28	163.19	22.40		

-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과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 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 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산 횟 수	20만㎡ 이하	20만㎡ 초과 ~ 50만㎡	50만㎡ 초과 ~ 100만㎡	100만㎡ 초과 ~ 200만㎡	200만㎡ 초과 ~ 300만㎡	300만㎡ 초과
계 수	1.0	0.9	0.8	0.7	0.6	0.5

*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적용한다.

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일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필지수	50필지 이하	51~100 필지	101~200 필지	201~300 필지	301~400 필지	401~500 필지	500 필지초과 매100필마다
계수	1.00	1.05	1.10	1.15	1.20	1.25	1.05*n

3-3-2. 단 가 산 출 (예)

3-3-2-1.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76.28	인	201,490	15,369,657	
		지적산업기사		163.19	인	180,780	29,501,488	
		지 적 기 능 사		22.40	인	155,120	3,474,688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27.22	인	20,000	544,400	
			지 적 산 업 기 사	54.44	인	20,000	1,088,800	
			지 적 기 능 사	22.40	인	20,000	448,000	
			인 부					
		기 계 경 비					2,016,275	
		재 료 소 모 품 비					329,230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9,669,167	
기 술 료		13%			7,541,950			
합 계			200,000 m ²			69,983,655		
1 m ² 당						349.92		

3-3-3. 수수료 기본단가표

3-3-3-1.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 ① [본 단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과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100.0%, 시지역 100.0%, 구지역 100.0%

③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m ² 당	349.9	358.1	369.0

3-3-3-2. 단가 적용기준

- ① 기준단가에는 지구계분할 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③ 절차상 도해 측량방법에 의한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해 신규등록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중심점·가구점, 필계점의 말박기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⑤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10,000m²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⑥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3-3-4. 공정일람표

3-3-4-1.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1지구당 200,000㎡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27.22 (49.06)	27.22 (49.06)	27.22 (49.06)
지 적 산 업 기 사		54.44 (108.75)	54.44 (108.75)	54.44 (108.75)
지 적 기 능 사		22.40	22.40	22.40
인 부				
소 계	외 업	104.06	104.06	104.06
	내 업	(157.81)	(157.81)	(157.81)
합 계		261.87	261.87	261.87

* ()내는 내업임

3-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4-1. 작업공정 품셈기준

3-4-1-1.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3.40)		2				(6.80)			()는 내업임
계획준비		(2.63)	1	1			(2.63)	(2.63)			
현장조사		3.90	1	1			3.90	3.90			
지적전산파일변환		(6.00)		2				(12.00)			
지구계 준비도	작성	(7.83)	1	2	1		(7.83)	(15.66)	(7.83)		
	확인	(1.05)	1				(1.05)				
필계점	측량	21.73	1	2	1		21.73	43.46	21.73		
	계산	(16.70)	1	1			(16.70)	(16.70)			
좌표면적계산		(15.75)	1	1			(15.75)	(15.75)			
결과도작성		(3.03)	1	2	1		(3.03)	(6.06)	(3.03)		
성과작성		(18.13)	1	2	1		(18.13)	(36.26)	(18.13)		
조서작성		(5.88)		2	1			(11.76)	(5.88)		
점검		(5.65)	1				(5.65)				
성과인계		(1.40)	1				(1.40)				
소계	외업	25.63					25.63	47.36	21.73		
	내업	(87.45)					(72.17)	(123.62)	(34.87)		
합계		113.08					97.80	170.98	56.60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농지를 새로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은 면적 1,000,000㎡의 1개 측량지구를 기준한 것이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횟수	100만㎡ 이하	100만㎡ 초과 ~300만㎡	300만㎡ 초과 ~ 500만㎡	500만㎡ 초과 ~ 800만㎡	800만㎡ 초과 ~ 1,000만㎡	1,0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적용한다.

3-4-2. 단 가 산 출 (예)

3-4-2-1.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97.80	인	201,490	19,705,722	
		지적산업기사		170.98	인	180,780	30,909,764	
		지 적 기 능 사		56.60	인	155,120	8,779,792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25.63	인	20,000	512,600	
			지 적 산 업 기 사	47.36	인	20,000	947,200	
			지 적 기 능 사	21.73	인	20,000	434,600	
			인 부					
		기 계 경 비					1,924,830	
		재 료 소 모 품 비					316,444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1,879,056	
기 술 료		13%			9,265,663			
합 계			1,000,000 m ²			84,675,671		
1 m ² 당						84.68		

3-4-3. 수수료 기본단가표

3-4-3-1.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①[본 단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농지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6.3%, 시지역 76.3%, 구지역 76.3%

③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m ² 당	64.6	66.1	68.2

3-4-3-2. 단가 적용기준

- ① 기본단가에는 지구계분할 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③ 절차상 도해 측량방법에 의한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해 신규등록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m² 이하인 경우에는 30,000m²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3-4-4. 공정일람표

3-4-4-1.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1지구당 1,000,000㎡ 기준)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25.63 (72.17)	25.63 (72.17)	25.63 (72.17)
지 적 산 업 기 사		47.36 (123.62)	47.36 (123.62)	47.36 (123.62)
지 적 기 능 사		21.73 (34.87)	21.73 (34.87)	21.73 (34.87)
인 부				
소 계	외 업	94.72	94.72	94.72
	내 업	(230.66)	(230.66)	(230.66)
합 계		325.38	325.38	325.38

* ()내는 내업임

4. 지적 재 조사

4-1. 지적재조사측량

4-1-1. 작업공정 품셈기준

4-1-1-1.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6)	1				(0.06)				()는 내업임
계획준비	현장답사	0.02	1	1	1		0.02	0.02	0.02		
	사전계획	(0.01)	1	1			(0.01)	(0.01)			
일필지 측량	현장측량	0.40	1	1	1		0.40	0.40	0.40		
	결과작성	(0.06)	1	1			(0.06)	(0.06)			
면적측정및계산		(0.10)	1	1			(0.10)	(0.10)			
경계확정 (조정)측량	현장측량	0.19	1	1	1		0.19	0.19	0.19		
	결과작성	(0.13)	1	1			(0.13)	(0.13)			
경계점 표지 등록부 작성	거리측정	0.09	1	1	1		0.09	0.09	0.09		
	등록부작성	(0.07)		1	1			(0.07)	(0.07)		
일필지 조사	현지조사	0.06	1	1	1		0.06	0.06	0.06		
	조사표작성	(0.04)		1	1			(0.04)	(0.04)		
소계	외업	0.76					0.76	0.76	0.76		
	내업	(0.47)					(0.36)	(0.41)	(0.11)		
합계		1.23					1.12	1.17	0.87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품이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㉓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2부
㉔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	2부
㉕ 재조사측량 계획도	2부
㉖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	2부
㉗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 관측기록부	2부
㉘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	2부
㉙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	2부
㉚ 지적확정조서	2부
㉛ 종전 지번별 조서	1부
㉜ 경계점표지 등록부	1부
㉝ 일필지 조사서	1부

4-1-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관측 장비이다.
- ② 본 품은 지구당 130필지~16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 ③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한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사진(항공사진)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 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⑥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4-1-2. 단 가 산 출 (예)

4-1-2-1. 지적재조사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1.12	인	201,490	225,669	
		지적산업기사		1.17	인	180,780	211,513	
		지 적 기 능 사		0.87	인	155,120	134,954	
		인 부						
	직접경비	현장	지 적 기 사	0.76	인	20,000	15,200	
			지 적 산 업 기 사	0.76	인	20,000	15,200	
		여비	지 적 기 능 사	0.76	인	20,000	15,200	
			인 부					
		기 계 경 비					62,688	
		재료소모품비					8,909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14,427	
기 술 료		13%			89,253			
합 계			1필			893,013		
1 필 당						893,013		

4-1-3. 수수료 기본단가표

4-1-3-1. 지적재조사측량

① [본 단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단가이다.

②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32.5%, 시지역 26.8%, 구지역 26.7%

③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필 지 당	290,000	333,000	375,000

4-1-3-2. 단가 적용기준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측량 단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해당년도 고시단가의 50%를 적용한다.

4-1-4. 공정일람표

4-1-4-1. 지적재조사측량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0.76 (0.36)	1.06 (0.50)	1.17 (0.55)
지 적 산 업 기 사		0.76 (0.41)	1.06 (0.57)	1.17 (0.63)
지 적 기 능 사		0.76 (0.11)	1.06 (0.15)	1.17 (0.17)
인 부				
소 계	외 업	2.28	3.18	3.51
	내 업	(0.88)	(1.22)	(1.35)
합 계		3.16	4.40	4.86

* ()내는 내업임

4-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4-2-1. 작업공정 품셈기준

4-2-1-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사전조사	(0.04)		1				(0.04)			()는 내업임
	현장조사	0.03	1	1	1		0.03	0.03	0.03		
계획 및 준비		(0.04)	1				(0.04)				
공통점변환 및 결정		(0.06)		1				(0.06)			
도면변환		(0.04)		1				(0.04)			
검증측량	검증측량	0.03	1	1	1		0.03	0.03	0.03		
	성과분석	(0.04)	1	1			(0.04)	(0.04)			
성과물작성및인계		(0.09)		1				(0.09)			
소계	외업	0.06					0.06	0.06	0.06		
	내업	(0.31)					(0.08)	(0.27)			
합계		0.37					0.14	0.33	0.06		

-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토해양부 고시제2013-122호, 2013. 2. 21.)에 따라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전 및 현장조사 후 공통점을 통하여 산출된 변환계수에 따라 좌표를 변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4-2-1-2. 세계측지계 변환(수치)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사전조사	(0.03)		1				(0.03)			()는 내업임
	현장조사	0.02	1	1	1		0.02	0.02	0.02		
계획 및 준비		(0.03)	1				(0.03)				
공통점변환 및 결정		(0.04)		1				(0.04)			
도면변환		(0.03)		1				(0.03)			
검증측량	검증측량	0.02	1	1	1		0.02	0.02	0.02		
	성과분석	(0.03)	1	1			(0.03)	(0.03)			
성과물작성및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04					0.04	0.04	0.04		
	내업	(0.22)					(0.06)	(0.19)			
합계		0.26					0.10	0.23	0.04		

- ① 본 품은 경계점좌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토해양부 고시제2013-122호, 2013. 2. 21.)에 따라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전 및 현장조사 후 공통점을 통하여 산출된 변환계수에 따라 좌표를 변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4-2-1-3. 품셈 적용기준

- ①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 및 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4-2-2. 단 가 산 출 (예)

4-2-2-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군지역(도해)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14	인	201,490	28,209	
		지적산업기사		0.33	인	180,780	59,657	
		지 적 기 능 사		0.06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06	인	20,000	1,200	
			지 적 산 업 기 사	0.06	인	20,000	1,200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7,651	
		재료소모품비					1,600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9,434	
기 술 료		13%			15,159			
합 계			1도곽			134,110		
1 장 당						134,110		

4-2-2-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군지역(수치)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10	인	201,490	20,149		
		지적산업기사		0.23	인	180,780	41,579		
		지 적 기 능 사		0.06					
		인 부							
	직접경비	현장	지 적 기 사		0.04	인	20,000	800	
			지적산업기사		0.04	인	20,000	800	
		여비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5,316		
		재료소모품비					1,276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3,586		
기 술 료		13%			10,597				
합 계			1도곽			94,103			
1 장 당						94,103			

4-2-3. 수수료 기본단가표

4-2-3-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①[본 단가는 도해지역에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토해양부 고시제2013-122호, 2013. 2. 21.)에 따라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전 및 현장조사 후 공통점을 통하여 산출된 변환계수에 따라 좌표를 변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61.5%, 시지역 61.5%, 구지역 61.5%

임야 : 군지역 61.5%, 시지역 61.5%, 구지역 61.5%

③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1도곽	89,000	91,000	94,000
임 야	1도곽	89,000	91,000	94,000

4-2-3-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①[본 단가는 경계점좌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토해양부 고시제2013-122호, 2013. 2. 21.)에 따라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전 및 현장조사 후 공통점을 통하여 산출된 변환계수에 따라 좌표를 변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61.5%, 시지역 61.5%, 구지역 61.5%

③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1도곽	62,000	64,000	65,000

4-2-3-3. 단가 적용기준

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단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2-4. 공정일람표

4-2-4-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해)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09 (0.08)	0.09 (0.08)	0.09 (0.08)	0.09 (0.08)	0.09 (0.08)	0.09 (0.08)
지 적 산 업 기 사		0.09 (0.34)	0.09 (0.34)	0.09 (0.34)	0.09 (0.34)	0.09 (0.34)	0.09 (0.34)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0.18	0.18	0.18	0.18	0.18	0.18
	내 업	(0.42)	(0.42)	(0.42)	(0.42)	(0.42)	(0.42)
합 계		0.60	0.60	0.60	0.60	0.60	0.60

* ()내는 내업임

4-2-4-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수치)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07 (0.06)	0.07 (0.06)	0.07 (0.06)	0.07 (0.06)	0.07 (0.06)	0.07 (0.06)
지 적 산 업 기 사		0.07 (0.24)	0.07 (0.24)	0.07 (0.24)	0.07 (0.24)	0.07 (0.24)	0.07 (0.24)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0.14	0.14	0.14	0.14	0.14	0.14
	내 업	(0.30)	(0.30)	(0.30)	(0.30)	(0.30)	(0.30)
합 계		0.44	0.44	0.44	0.44	0.44	0.44

* ()내는 내업임

5. 국토정보조사측량

5-1. 다 목 적 지 적 측 량

5-1-1. 단 가 산 출 (예)

5-1-1-1. 다목적지적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265.20	인	201,490	53,435,148	
		지적산업기사		586.60	인	180,780	106,045,548	
		지 적 기 능 사						
		인 부		44.70	인	86,680	3,874,596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154.70	인	20,000	3,094,000	
			지 적 산 업 기 사	419.40	인	20,000	8,388,000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5,182,470	
		재 료 소 모 품 비					605,732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32,671,058	
기 술 료		13%			25,483,426			
합 계			450,000㎡			238,779,978		
1 ㎡ 당						530.62		

5-1-2. 수수료 기본단가표

5-1-2-1. 다목적지적측량

① [본 단가는 지상·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 지상, 지하시설물의 관계위치를 정밀하게 측량하여 한도면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지하시설물은 종목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근 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호(2010. 2. 2) / 국토해양부장관
지적22680-001566('89. 2. 21) / 내부부장관
- 2014 건설공사표준품셈 「21-14 도로대장측량(45만㎡ 기준)」 적용

③ '다목적지적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79.5%, 시지역 79.5%, 구지역 79.5%

④ 다목적지적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구 분	기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다목적지적측량	1㎡당	421.8	431.6	444.7

5-1-3 공정일람표

5-1-3-1. 다목적지적측량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154.70 (110.50)	154.70 (110.50)	154.70 (110.50)
지 적 산 업 기 사		419.40 (167.20)	419.40 (167.20)	419.40 (167.20)
지 적 기 능 사				
인 부		44.70	44.70	44.70
소 계	외 업	618.80	618.80	618.80
	내 업	(277.70)	(277.70)	(277.70)
합 계		896.50	896.50	896.50

* ()내는 내업임

5-2. 3차원 지적현황(구축) 측량

5-2-1. 작업공정 품셈기준

5-2-1-1. 3차원 지적현황(구축)측량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28)		1				(0.28)			()는 내업임
계획준비		(0.78)	1	1			(0.78)	(0.78)			
현지조사		3.11	1	2	1		3.11	6.22	3.11		
데이터편집및수정		(2.70)	1	2			(2.70)	(5.40)			
성과수정		(1.50)		2				(3.00)			
성과점검및인계		(0.57)	1				(0.57)				
소계	외업	3.11					3.11	6.22	3.11		
	내업	(5.83)					(4.05)	(9.46)			
합계		8.94					7.16	15.68	3.11		

① 본 품은 지적공부인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기반으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 등을 입체적인 3차원방식으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체적계수

본 품은 1필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체적 이하의 기준체적을 적용하고, 기준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3차원 지적현황측량 대상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 정으로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50필지 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 초과
계 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세밀도계수

3차원지적현황(구축)측량은 가시화 정보구축 상태에 따른 단계에 따라 다음의 세밀도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LOD 1	LOD 2	LOD 3	LOD 4	비 고
계 수	0.50	0.67	0.84	1.00	

* LOD 1)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한가지 컬러의 색을 갖는 구조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LOD 2)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상의 구조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LOD 3)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상의 구조와 실제 구조를 혼합하여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LOD 4) 하나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시화 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실제의 구조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5-2-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의 세밀도는 LOD4 단계의 가시화 정보구축 상태의 구조로 제작된 측량 품이다.
- ② 3차원지적현황(구축)측량을 지상라이다에 의할 경우 작업방법은 「지상라이다 작업 규정」에 의한다.
- ③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⑥ 본 품에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3차원지적현황(구축)측량 결과도면 1부
 - ㉡ 3차원지적현황(구축)측량 성과도면 및 파일 각 1부
 - ㉢ 체적(부피) 및 경사도 측정 도면 1부
 - ㉣ 3차원 영상데이터(dwg, dxf, shape 등) 1부
- ⑦ 상기의 성과작성품(실측 및 기본도면작성) 외에 CG, 모델링, 모형제작 등 별도의 성과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쌍방협의를 의하여 비용을 추가 계상할 수 있다.

5-2-2. 단 가 산 출 (예)

5-2-2-1. 3차원 지적현황(구축) 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7.16	인	201,490	1,442,668	
		지적산업기사		15.68	인	180,780	2,834,630	
		지 적 기 능 사		3.11	인	155,120	482,423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3.11	인	20,000	62,200	
			지 적 산 업 기 사	6.22	인	20,000	124,400	
			지 적 기 능 사	3.11	인	20,000	62,200	
			인 부					
		기 계 경 비					842,150	
		재 료 소 모 품 비					9,672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951,944	
기 술 료		13%			742,516			
합 계						7,554,803		
1 필 당						7,554,803		

5-2-3. 수수료 기준단가표

5-2-3-1. 3차원 지적현황(구축)측량

- ① [3차원지적현황(구축)측량 방법은 2차원의 X, Y 지적위치 정보에 높이(Z), 색상, 질감 및 구조정보를 추가하여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지적공부 기반의 입체적인 고정밀도 측량으로써, 체적계수, 지역구분계수,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 및 세밀도계수를 적용한다.
- ② 본 단가는 작업공정 품셈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로서 본 업무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③ 도해지역에서 지상라이다 장비 등을 이용한 3차원방식의 지적현황(구축) 측량으로 성과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 품을 적용한다.

5-2-4. 공정일람표

5-2-4-1. 3차원 지적현황(구축)측량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3.11 (4.05)	4.35 (5.67)	4.79 (6.24)
지 적 산 업 기 사		6.22 (9.46)	8.71 (13.24)	9.58 (14.57)
지 적 기 능 사		3.11	4.35	4.79
인 부				
소 계	외 업	12.44	17.41	19.16
	내 업	(13.51)	(18.91)	(20.81)
합 계		25.95	36.32	39.97

* ()내는 내업임

5-3.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5-3-1. 단 가 산 출 (예)

5-3-1-1. 침수흔적지조사측량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43.05	인	201,490	8,674,145	
		지적산업기사		79.23	인	180,780	14,323,199	
		지 적 기 능 사		14.63	인	155,120	2,269,406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15.33	인	20,000	306,600	
			지 적 산 업 기 사	30.66	인	20,000	613,200	
			지 적 기 능 사	14.63	인	20,000	292,600	
			인 부					
		기 계 경 비					47,258	
		재 료 소 모 품 비					10,866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5,053,350		
	기 술 료		13%			3,941,613		
합 계			100,000m²			35,532,237		
1 m² 당						355.32		

5-3-2. 수수료 기본단가표

5-3-2-1. 침수흔적지조사측량

- ① [근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호(2010. 2. 2) / 국토해양부장관
지적팀-3817('06. 8. 7) / 행정자치부장관]
- ② 2014 건설공사표준품셈「21-38-1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측량(지구계점)」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를 적용한다.
- ③ 측량지구의 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 마다 기준면적 단가에 10%를 누적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한다. 단,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④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 ⑤ '침수흔적지조사측량'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17.0%, 시지역 17.0%, 구지역 17.1%

⑥ 침수흔적지조사측량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구 분	기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1㎡당	60.4	61.9	64.2

5-3-3. 공정일람표

5-3-3-1. 침수흔적지조사측량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15.33 (27.72)	15.33 (27.72)	15.33 (27.72)
지 적 산 업 기 사		30.66 (48.57)	30.66 (48.57)	30.66 (48.57)
지 적 기 능 사		14.63	14.63	14.63
인 부				
소 계	외 업	60.62	60.62	60.62
	내 업	(76.29)	(76.29)	(76.29)
합 계		136.91	136.91	136.91

* ()내는 내업임

6. 국토정보조사관리

6-1. 지적이용현황조사

6-1-1. 작업공정 품셈기준

6-1-1-1. 지적이용현황조사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5)		1				(0.05)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1)	1	1			(0.01)	(0.01)			
현지조사		0.10	1				0.10				
데이터편집및수정		(0.09)		1				(0.09)			
성과작성		(0.02)		1				(0.02)			
검사		(0.01)	1				(0.01)				
성과점검및인계		(0.02)	1				(0.02)				
소계	외업	0.10					0.10				
	내업	(0.20)					(0.04)	(0.17)			
합계		0.30					0.14	0.17			

① 본 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을 기반으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지적이용현황 조사와 개략적인 점유현황·점유자 및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현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6-1-1-2. 품셈 적용기준

- ① 지적이용현황조사는 원필지 1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필지 내 점유자별 또는 토지이용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그 분류 수향에 따라 필지 수를 추가하며 추가되는 필지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 ②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③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이용현황 실태 조사서	1부
㉡ 지적이용현황도 및 파일	1부
㉢ 지적이용현황 조서 및 파일	1부
- ⑤ 지적이용현황 조사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의 업무로서 발주자의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6-1-2. 단 가 산 출 (예)

6-1-2-1. 지적이용현황조사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14	인	201,490	28,209		
		지적산업기사		0.17	인	180,780	30,733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10	인	20,000	2,000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1,260		
		재료소모품비					197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1,788		
기 술 료		13%			9,195				
합 계			1필			83,382			
1 필 당						83,382			

6-1-3. 수수료 기본단가표

6-1-3-1. 지적이용현황조사

- ① 지적이용현황조사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수치 : 군지역 31.2%, 시지역 31.5%, 구지역 30.9%

임야 : 군지역 31.7%, 시지역 31.7%, 구지역 31.1%

- ② 지적이용현황조사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 수 치	1,500㎡	26,000	38,000	41,000
임 야	5,000㎡	34,000	46,000	49,000

6-1-4. 공정일람표

6-1-4-1. 지적이용현황조사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10 (0.04)	0.13 (0.05)	0.14 (0.06)	0.17 (0.07)	0.15 (0.06)	0.18 (0.07)
지 적 산 업 기 사		(0.17)	(0.22)	(0.24)	(0.29)	(0.26)	(0.31)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0.10	0.13	0.14	0.17	0.15	0.18
	내 업	(0.21)	(0.27)	(0.30)	(0.36)	(0.32)	(0.38)
합 계		0.31	0.40	0.44	0.53	0.47	0.56

* ()내는 내업임

7. 국토정보품질관리

7-1. 지적(임야)도 전산화

7-1-1. 작업공정 품셈기준

7-1-1-1. 지적(임야)도 전산화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4)		1				(0.04)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좌표독취	(0.37)		1				(0.37)			
도면작성편집	(0.15)		1				(0.15)			
대조수정	(0.09)	1				(0.09)				
성과작성	(0.06)		1				(0.06)			
점검	(0.07)	1				(0.07)				
성과인계	(0.02)	1				(0.02)				
합계	(0.83)					(0.21)	(0.65)			

① 본 품은 종이에 구현된 지적(임야)도, 세부원도 등의 좌표를 독취하여 전산화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지적도, 임야도)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지적도	임야도	비고
계수	1.00	1.28	

7-1-1-2. 품셈 적용기준

①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기준규격의 1/2이하일 경우에는 본 품의 50%를 적용한다.

7-1-2. 단 가 산 출 (예)

7-1-2-1. 지적(임야)도 전산화

군지역(지적도)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21	인	201,490	42,313	
		지적산업기사		0.65	인	180,780	117,507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18,531	
		재료소모품비					1,559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31,964	
기 술 료		13%			24,932			
합 계			1도곽			236,806		
1 도 곽 당						236,806		

7-1-3. 수수료 기본단가표

7-1-3-1. 지적(임야)도 전산화

- ① 지적(임야)도 전산화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6.0%, 시지역 76.0%, 구지역 76.0%

임야 : 군지역 66.5%, 시지역 66.5%, 구지역 66.5%

- ② 지적(임야)도 전산화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도	1도곽	180,000	184,000	190,000
임 야 도	1도곽	198,000	202,000	208,000

7-1-4. 공정일람표

7-1-4-1. 지적(임야)도 전산화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21)	(0.27)	(0.21)	(0.27)	(0.21)	(0.27)
지 적 산 업 기 사		(0.65)	(0.83)	(0.65)	(0.83)	(0.65)	(0.83)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86)	(1.10)	(0.86)	(1.10)	(0.86)	(1.10)
합 계		0.86	1.10	0.86	1.10	0.86	1.10

* ()내는 내업임

7-2. 측량결과도 전산화

7-2-1. 작업공정 품셈기준

7-2-1-1. 측량결과도 전산화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작업준비	(0.002)			1				(0.002)		()는 내업임
스캐닝작업	(0.003)	1				(0.003)				
이미지보정및검증	(0.001)	1				(0.001)				
자료전송	(0.007)			1				(0.007)		
좌표독취	(0.012)		1				(0.012)			
검사제도(1차)	(0.006)			1				(0.006)		
대조수정(1차)	(0.022)		1				(0.022)			
자료전송	(0.003)			1				(0.003)		
속성정보입력	(0.016)			1				(0.016)		
검사제도(2차)	(0.006)			1				(0.006)		
대조수정(2차)	(0.017)		1				(0.017)			
자료전송	(0.004)			1				(0.004)		
검사수정	(0.006)	1				(0.006)				
저장매체수록	(0.054)		1				(0.054)			
결과도재편철	(0.002)			1				(0.002)		
소관청DB구축	(0.004)	1				(0.004)				
성과검수요청	(0.001)	1				(0.001)				
성과인계	(0.001)	1				(0.001)				
합계	(0.167)					(0.016)	(0.105)	(0.046)		

- ① 본 품은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좌표독취를 위한 스캐닝 작업을 거쳐 DB구축하는 작업 품이다.

7-2-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7-2-2. 단 가 산 출 (예)

7-2-2-1. 측량결과도 전산화

군지역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02	인	201,490	4,030	
		지적산업기사		0.11	인	180,780	19,886	
		지 적 기 능 사		0.05	인	155,120	7,756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660	
		재료소모품비					9,750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6,334	
기 술 료		13%			4,941			
합 계			1장			53,357		
1 장 당						53,357		

7-2-3. 수수료 기본단가표

7-2-3-1. 측량결과도 전산화

①[본 단가는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는데 좌표독취를 위한 스캐닝과 벡터라이징 작업 절차를 거쳐 DB구축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근 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호(2010. 2. 2) / 국토해양부장관

② 측량결과도를 정밀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③ 측량결과도 전산화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71.5%, 시지역 71.5%, 구지역 71.5%

④ 측량결과도 전산화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 장 당	38,000	39,000	40,000

7-2-4. 공정일람표

7-2-4-1. 측량결과도 전산화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0.02)	(0.02)	(0.02)
지 적 산 업 기 사		(0.11)	(0.11)	(0.11)
지 적 기 능 사		(0.05)	(0.05)	(0.05)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18)	(0.18)	(0.18)
합 계		0.18	0.18	0.18

* ()내는 내업임

7-3. 연속지적도작성

7-3-1. 단 가 산 출 (예)

7-3-1-1. 연속지적도 작성(도해지역)

군지역(토지)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17	인	201,490	34,253		
		지적산업기사		0.06	인	180,780	10,847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4,702		
		재료소모품비					5,117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9,020		
기 술 료		13%			7,035				
합 계			1도곽			70,974			
1도곽당						70,974			

7-3-1-2. 연속지적도 작성(수치지역)

군지역(수치)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16	인	201,490	32,238		
		지적산업기사		0.06	인	180,780	10,847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3,949		
		재료소모품비					5,002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8,617		
기 술 료		13%			6,721				
합 계			1도곽			67,374			
1 도 곽 당						67,374			

7-3-2. 수수료 기본단가표

7-3-2-1. 연속지적도 작성

① 본 단가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구축된 낱장의 디지털 지적도면을 연속된 형태의 데이터로 구축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정책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연속지적도 작성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66.4%, 시지역 66.4%, 구지역 66.4%

임야 : 군지역 66.4%, 시지역 66.4%, 구지역 66.4%

수치 : 군지역 66.4%, 시지역 66.4%, 구지역 66.4%

③ 연속지적도 작성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1도곽 (지적도크기)	47,000	48,000	49,000
임 야	1도곽 (임야도크기)	59,000	61,000	63,000
수 치	1도곽 (지적도크기)	45,000	46,000	47,000

7-3-3. 공정일람표

7-3-3-1. 연속지적도 작성

지역별 자격별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시 · 군 · 구
		토 지	임 야	수 치
지 적 기 사		(0.17)	(0.22)	(0.16)
지 적 산 업 기 사		(0.06)	(0.08)	(0.06)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23)	(0.30)	(0.22)
합 계		0.23	0.30	0.22

* ()내는 내업임

7-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7-4-1. 단 가 산 출 (예)

7-4-1-1. 연속지적도 품질개선(도해지역)

군지역(토지)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08	인	201,490	16,119		
		지적산업기사		0.05	인	180,780	9,039		
		지 적 기 능 사		0.02	인	155,120	3,102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2,630		
		재료소모품비					5,117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5,652		
기 술 료		13%			4,409				
합 계			1도곽			46,068			
1 도 곽 당						46,068			

7-4-1-2.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지역)

군지역(수치)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03	인	201,490	6,045		
		지적산업기사		0.02	인	180,780	3,616		
		지 적 기 능 사		0.01	인	155,120	1,551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1,877		
		재료소모품비					5,002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2,242		
기 술 료		13%			1,749				
합 계			1도곽			22,082			
1 도 곽 당						22,082			

7-4-2. 수수료 기본단가표

7-4-2-1.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 ① 본 단가는 토지종합전산망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 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근 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호(2010. 2. 2) / 국토해양부장관

- ②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66.0%, 시지역 66.0%, 구지역 66.0%

임야 : 군지역 66.0%, 시지역 66.0%, 구지역 66.0%

수치 : 군지역 45.0%, 시지역 45.0%, 구지역 45.0%

- ③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1도곽 (지적도크기)	30,000	31,000	32,000
임 야	1도곽 (임야도크기)	37,000	38,000	39,000
수 치	1도곽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7-4-3. 공정일람표

7-4-3-1.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지역별 자격별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시 · 군 · 구
		토 지	임 야	수 치
지 적 기 사		(0.08)	(0.10)	(0.03)
지 적 산 업 기 사		(0.05)	(0.06)	(0.02)
지 적 기 능 사		(0.02)	(0.03)	(0.01)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15)	(0.19)	(0.06)
합 계		0.15	0.19	0.06

* ()내는 내업임

7-5.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7-5-1. 작업공정 품셈기준

7-5-1-1.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및준비		(0.02)		1				(0.02)			()는 내업임
자료조사및수집		(0.10)	1	1			(0.10)	(0.10)			
기초자료정비		(0.04)	1				(0.04)				
지적전산도면제작		(0.09)	1				(0.09)				
공간/속성자료 구조화		(0.02)	1				(0.02)				
성과대조		(0.07)	1				(0.07)				
지적전산도면수정		(0.05)	1				(0.05)				
공간/속성자료 구조화수정		(0.01)	1				(0.01)				
DB탑재		(0.04)		1				(0.04)			
성과납품		(0.02)	1				(0.02)				
소계	내업	(0.46)					(0.40)	(0.16)			
	외업										
합계		0.46					0.40	0.16			

① 본 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개별법령에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선, 도로구역선 등을 연속지적도 위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을 출력 또는 파일을 작성하거나 지적도 도형의 변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선 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도 또는 연속지적도에 일치하도록 도면파일을 작성하는 품이다.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7-5-1-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및준비		(0.01)		1				(0.01)			()는 내업임
자료조사및수집		(0.04)	1	1			(0.04)	(0.04)			
기초자료정비		(0.02)	1				(0.02)				
지적전산도면제작		(0.12)	1				(0.12)				
공간/속성자료 구조화		(0.02)	1				(0.02)				
성과대조		(0.04)	1				(0.04)				
지적전산도면수정		(0.04)	1				(0.04)				
공간/속성자료 구조화수정		(0.01)	1				(0.01)				
DB탐재		(0.01)		1				(0.01)			
성과납품		(0.01)	1				(0.01)				
소계	내업	(0.32)					(0.30)	(0.06)			
	외업										
합계		0.32					0.30	0.06			

- ① 본 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외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의 품이다.
- ②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개별법령에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선, 도로구역선 등을 연속지적도 위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을 출력 또는 파일을 작성하거나 지적도 도형의 변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선 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도 또는 연속지적도에 일치하도록 도면파일을 작성하는 품이다.

7-5-1-3. 품셈 적용기준

- ①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연속지적도에 일치하도록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하는데 적용한다.
- ② 본 품은 지적도 크기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7-5-2. 단 가 산 출 (예)

7-5-2-1.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군지역(토지)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40	인	201,490	80,596		
		지적산업기사		0.16	인	180,780	28,925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5,228		
		재료소모품비					5,927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21,904		
기 술 료		13%			17,085				
합 계			1도곽			159,665			
1 도 곽 당						159,665			

7-5-2-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군지역(수치)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30	인	201,490	60,447		
		지적산업기사		0.06	인	180,780	10,847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4,469		
		재료소모품비					5,811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14,259		
기 술 료		13%			11,122				
합 계			1도곽			106,955			
1 도 곽 당						106,955			

7-5-3. 수수료 기본단가표

7-5-3-1.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 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5.0%, 시지역 75.0%, 구지역 75.0%

임야 : 군지역 75.0%, 시지역 75.0%, 구지역 75.0%

- ②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1도곽	120,000	123,000	126,000
임 야	1도곽	150,000	153,000	158,000

7-5-3-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 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수치 : 군지역 75.0%, 시지역 75.0%, 구지역 75.0%

- ②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수 치	1도곽	80,000	82,000	84,000

7-5-4. 공정일람표

7-5-4-1.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도해지역)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40)	(0.51)	(0.40)	(0.51)	(0.40)	(0.51)
지 적 산 업 기 사		(0.16)	(0.20)	(0.16)	(0.20)	(0.16)	(0.20)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56)	(0.71)	(0.56)	(0.71)	(0.56)	(0.71)
합 계		0.56	0.71	0.56	0.71	0.56	0.71

* ()내는 내업임

7-5-4-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 적 기 사		(0.30)	(0.30)	(0.30)
지 적 산 업 기 사		(0.06)	(0.06)	(0.06)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36)	(0.36)	(0.36)
합 계		0.36	0.36	0.36

* ()내는 내업임

7-6.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7-6-1. 작업공정 품셈기준

7-6-1-1.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도해지역)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 및 준비		(0.02)		1				(0.02)			()는 내업임
자료조사및수집		(0.10)	1	1			(0.10)	(0.10)			
기초자료정비		(0.04)	1				(0.04)				
지적전산도면제작		(0.09)	1				(0.09)				
공간/속성자료 구조화		(0.01)	1				(0.01)				
성과대조		(0.07)	1				(0.07)				
지적전산도면수정		(0.07)	1				(0.07)				
공간/속성자료 구조화수정		(0.01)	1				(0.01)				
DB탐재		(0.05)		1				(0.05)			
성과납품		(0.02)	1				(0.02)				
소계	내업	(0.48)					(0.41)	(0.17)			
	외업										
합계		0.48					0.41	0.17			

① 본 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지적)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③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도면파일 형식으로 제작, 갱신, 보수 등 다양한 지적전산·정보화 업무에 소요되는 품을 나열한 것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작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세부공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작업별 세부공정은 다음과 같다

작업구분	세부공정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㉞ 준계획 및	업무 분석	(0.015)		1			(0.015)		()는 내업임
	계획 수립	(0.005)		1			(0.005)		
	소계	(0.020)					(0.020)		
㉟ 자료조사 및 수집	자료 수집 분석	(0.014)	1	1		(0.014)	(0.014)		
	CIF 자료 수집	(0.012)	1	1		(0.012)	(0.012)		
	KLIS 자료 수집	(0.021)	1	1		(0.021)	(0.021)		
	정사 영상 수집	(0.003)	1	1		(0.003)	(0.003)		
	소유권 정보 수집	(0.008)	1	1		(0.008)	(0.008)		
	기타 자료 수집	(0.016)	1	1		(0.016)	(0.016)		
	도면, 도서 자료 수집	(0.004)	1	1		(0.004)	(0.004)		
	자료 오류 분석	(0.010)	1	1		(0.010)	(0.010)		
	사업대상 기초자료 정제	(0.010)	1	1		(0.010)	(0.010)		
	소계	(0.098)				(0.098)	(0.098)		
㊱ 기초자료 정비	문서자료 공간정보 변환	(0.007)	1			(0.007)			
	수집도면간 부합여부 확인	(0.005)	1			(0.005)			
	수집도면간 매칭	(0.005)	1			(0.005)			
	데이터 포맷 변환	(0.010)	1			(0.010)			
	각종자료간 공간위치 매칭	(0.016)	1			(0.016)			
	소계	(0.043)				(0.043)			
㊲ 지적전산도면 제작	각종 필요공간 객체생성	(0.009)	1			(0.009)			
	각종 필요공간 객체편집	(0.043)	1			(0.043)			
	속성 DB 입력	(0.006)	1			(0.006)			
	속성 DB 편집	(0.006)	1			(0.006)			
	관련 기관 협의	(0.017)	1			(0.017)			
	부대서류 작성(조서 등)	(0.005)	1			(0.005)			
	소계	(0.086)				(0.086)			
자㉚ 료공간 조속 화성	GIS용 데이터베이스 작성	(0.007)	1			(0.007)			
	CAD 용 파일 작성	(0.007)	1			(0.007)			
	소계	(0.014)				(0.014)			

작업구분	세부공정		일 수	인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배성과대조	대조용도면제작		(0.018)	1			(0.018)			()는 내업임
	대조용도면출력		(0.017)	1			(0.017)			
	대조용서류(조서)작성		(0.006)	1			(0.006)			
	파일작성		(0.006)	1			(0.006)			
	도면대조		(0.014)	1			(0.014)			
	대조결과협의		(0.006)	1			(0.006)			
	소계		(0.067)				(0.067)			
사지적전산도면수정	공간객체생성		(0.005)	1			(0.005)			
	공간객체편집		(0.010)	1			(0.010)			
	속성DB입력		(0.005)	1			(0.005)			
	속성DB편집		(0.005)	1			(0.005)			
	부대서류(조서 등)작성		(0.005)	1			(0.005)			
	위상검사및 데이터무결성검사		(0.016)	1			(0.016)			
	지적전산도면출력		(0.020)	1			(0.020)			
	부대서류(조서 등)출력		(0.004)	1			(0.004)			
	소계		(0.070)				(0.070)			
자료공구조속화성수정	GIS용 데이터베이스 작성		(0.006)	1			(0.006)			
	CAD 용 파일 작성		(0.007)	1			(0.007)			
	소계		(0.013)				(0.013)			
자DB탐재	계획수립		(0.029)		1			(0.029)		
	DB검사		(0.004)		1			(0.004)		
	DB백업및삭제		(0.004)		1			(0.004)		
	DB정비및탐재		(0.015)		1			(0.015)		
	소계		(0.052)					(0.052)		
차성과납품	성과품정리·점검		(0.012)	1			(0.012)			
	성과품인계		(0.006)	1			(0.006)			
	소계		(0.018)				(0.018)			
소계		내업	(0.481)				(0.409)	(0.170)		
		외업								
총계			0.481				0.409	0.170		

7-6-1-2.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수치지역)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및준비		(0.01)		1				(0.01)			()는 내업임
자료조사및수집		(0.04)	1	1			(0.04)	(0.04)			
기초자료정비		(0.02)	1				(0.02)				
지적전산도면제작		(0.12)	1				(0.12)				
공간/속성자료 구조화		(0.02)	1				(0.02)				
성과대조		(0.04)	1				(0.04)				
지적전산도면수정		(0.05)	1				(0.05)				
공간/속성자료 구조화수정		(0.01)	1				(0.01)				
DB탐재		(0.03)		1				(0.03)			
성과납품		(0.01)	1				(0.01)				
소계	내업	(0.35)					(0.31)	(0.08)			
	외업										
합계		0.35					0.31	0.08			

- ① 본 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지적)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② 본 품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도면파일 형식으로 제작, 갱신, 보수 등 다양한 지적전산·정보화 업무에 소요되는 품을 나열한 것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작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세부공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작업별 세부공정은 다음과 같다

작업구분	세부공정	일 수	인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㉞ 준 계 획 및	업 무 분 석	(0.007)		1			(0.007)		()는 내업임
	계 획 수 립	(0.003)		1			(0.003)		
	소 계	(0.010)					(0.010)		
㉟ 자 료 조 사 및 수 집	자 료 수 집 분 석	(0.004)	1	1		(0.004)	(0.004)		
	CIF 자 료 수 집	(0.004)	1	1		(0.004)	(0.004)		
	KLIS 자 료 수 집	(0.005)	1	1		(0.005)	(0.005)		
	정 사 영 상 수 집	(0.002)	1	1		(0.002)	(0.002)		
	소 유 권 정 보 수 집	(0.005)	1	1		(0.005)	(0.005)		
	수 치 지 형 도 수 집	(0.002)	1	1		(0.002)	(0.002)		
	기 타 자 료 수 집	(0.004)	1	1		(0.004)	(0.004)		
	도 면 , 도 서 자 료 수 집	(0.003)	1	1		(0.003)	(0.003)		
	자 료 오 류 분 석	(0.005)	1	1		(0.005)	(0.005)		
	사업대상 기초자료 정제	(0.006)	1	1		(0.006)	(0.006)		
	소 계	(0.040)				(0.040)	(0.040)		
㊱ 기 초 자 료 정 비	문서자료 공간정보 변환	(0.003)	1			(0.003)			
	수집도면간 부합여부 확인	(0.005)	1			(0.005)			
	수 집 도 면 간 매 칭	(0.004)	1			(0.004)			
	데 이 터 포 맷 변 환	(0.005)	1			(0.005)			
	각종자료간 공간위치 매칭	(0.005)	1			(0.005)			
	소 계	(0.022)				(0.022)			
㊲ 지 적 전 자 도 면 제 작	각종 필요공간 객체생성	(0.048)	1			(0.048)			
	각종 필요공간 객체편집	(0.047)	1			(0.047)			
	속 성 DB 입 력	(0.007)	1			(0.007)			
	속 성 DB 편 집	(0.006)	1			(0.006)			
	관 련 기 관 협 의	(0.010)	1			(0.010)			
	부대서류 작성(조서 등)	(0.006)	1			(0.006)			
	소 계	(0.124)				(0.124)			
자㉡ 료 공 간 조 속 화 성	GIS용 데이터베이스 작성	(0.011)	1			(0.011)			
	CAD 용 파 일 작 성	(0.006)	1			(0.006)			
	소 계	(0.017)				(0.017)			

작업구분	세부공정		일 수	인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배성과대조	대 조 용 도 면 제 작		(0.010)	1			(0.010)			()는 내업임
	대 조 용 도 면 출 력		(0.005)	1			(0.005)			
	대조용 서류(조서) 작성		(0.006)	1			(0.006)			
	파 일 작 성		(0.004)	1			(0.004)			
	도 면 대 조		(0.010)	1			(0.010)			
	대 조 결 과 협 의		(0.005)	1			(0.005)			
	소 계		(0.040)				(0.040)			
사지적전산도면수정	공 간 객 체 생 성		(0.006)	1			(0.006)			
	공 간 객 체 편 집		(0.006)	1			(0.006)			
	속 성 DB 입 력		(0.004)	1			(0.004)			
	속 성 DB 편 집		(0.005)	1			(0.005)			
	부대서류(조서 등) 작성		(0.006)	1			(0.006)			
	위상검사및 데이터결정성검사		(0.009)	1			(0.009)			
	지 적 전 산 도 면 출 력		(0.008)	1			(0.008)			
	부대서류(조서 등)출력		(0.005)	1			(0.005)			
	소 계		(0.049)				(0.049)			
자@공구조속화성수정	GIS용 데이터베이스 작성		(0.005)	1			(0.005)			
	CAD 용 파 일 작 성		(0.004)	1			(0.004)			
	소 계		(0.009)				(0.009)			
자DB탐재	계 획 수 립		(0.003)		1			(0.003)		
	DB 검 사		(0.005)		1			(0.005)		
	DB 백 업 및 삭 제		(0.005)		1			(0.005)		
	DB 정 비 및 탐 재		(0.013)		1			(0.013)		
	소 계		(0.026)					(0.026)		
차성과납품	성 과 품 정 리 · 점 검		(0.005)	1			(0.005)			
	성 과 품 인 계		(0.003)	1			(0.003)			
	소 계		(0.008)				(0.008)			
소 계		내 업	(0.345)				(0.309)	(0.076)		
		외 업								
총 계			0.345				0.309	0.076		

7-6-2. 단 가 산 출 (예)

7-6-2-1.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도해지역)

군지역(토지)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0.41	인	201,490	82,611		
		지적산업기사		0.17	인	180,780	30,733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5,228		
		재료소모품비					5,927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22,668		
기 술 료		13%			17,681				
합 계			1도곽			164,848			
1 도 곽 당						164,848			

7-6-2-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수치지역)

군지역(수치)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0.31	인	201,490	62,462		
		지적산업기사		0.08	인	180,780	14,462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4,469		
		재료소모품비					5,811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15,385		
기 술 료		13%			12,000				
합 계			1도곽			114,589			
1 도 곽 당						114,589			

7-6-3. 공정일람표

7-6-3-1.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도해지역)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41)	(0.52)	(0.41)	(0.52)	(0.41)	(0.52)
지 적 산 업 기 사		(0.17)	(0.22)	(0.17)	(0.22)	(0.17)	(0.22)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58)	(0.74)	(0.58)	(0.74)	(0.58)	(0.74)
합 계		0.58	0.74	0.58	0.74	0.58	0.74

* ()내는 내업임

7-6-3-2.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수치지역)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0.31)	(0.31)	(0.31)
지 적 기 사		(0.31)	(0.31)	(0.31)
지 적 산 업 기 사		(0.08)	(0.08)	(0.08)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39)	(0.39)	(0.39)
합 계		0.39	0.39	0.39

* ()내는 내업임

7-7. 지적전산 자료정비

7-7-1. 작업공정 품셈기준

7-7-1-1. 지적전산 자료정비(개별지적자료정비)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54)		1				(0.54)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준비도작성		(0.29)		1				(0.29)			
접합작업		(1.66)		2				(3.32)			
현지측량		0.45	1	1	1		0.45	0.45	0.45		
성과결정		(0.23)	1				(0.23)				
도면대조및수정		(0.47)		1				(0.47)			
성과점검및인계		(0.28)	1				(0.28)				
소계	외업	0.45					0.45	0.45	0.45		
	내업	(3.53)					(0.57)	(4.68)			
합계		3.98					1.02	5.13	0.45		

① 본 품은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측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에 따른 수정을 위하여 현지측량을 수반하여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7-7-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지적도 크기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② 지적전산자료정비(개별지적자료)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③ 본 품에는 성과 탑재 완료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④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성과도면파일(dwg, dxf, shape 등), 성과조서파일, 성과도면 각 1식
- 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7-7-2. 단 가 산 출 (예)

7-7-2-1. 지적전산자료정비(개별지적전산자료)

군지역(토지)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1.02	인	201,490	205,520	
		지적산업기사		5.13	인	180,780	927,401	
		지 적 기 능 사		0.45	인	155,120	69,804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0.45	인	20,000	9,000	
			지 적 산 업 기 사	0.45	인	20,000	9,000	
			지 적 기 능 사	0.45	인	20,000	9,000	
			인 부					
		기 계 경 비					38,459	
		재료소모품비					7,123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240,545	
기 술 료		13%			187,625			
합 계			1도곽			1,703,477		
1 도 곽 당						1,703,477		

7-7-3. 공정일람표

7-7-3-1. 지적전산자료정비(개별지적전산자료)

지역별 자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토 지	임 야
지 적 기 사		0.45 (0.57)	0.58 (0.73)	0.63 (0.80)	0.76 (0.96)	0.69 (0.88)	0.82 (1.04)
지 적 산 업 기 사		0.45 (4.68)	0.58 (5.99)	0.63 (6.55)	0.76 (7.86)	0.69 (7.21)	0.82 (8.52)
지 적 기 능 사		0.45	0.58	0.63	0.76	0.69	0.82
인 부							
소 계	외 업	1.35	1.74	1.89	2.28	2.07	2.46
	내 업	(5.25)	(6.72)	(7.35)	(8.82)	(8.09)	(9.56)
합 계		6.60	8.46	9.24	11.10	10.16	12.02

* ()내는 내업임

7-8. 도면작성

7-8-1. 작업공정 품셈기준

7-8-1-1. 도면작성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제도	(0.34)		1				(0.34)			
대조수정	(0.03)		1				(0.03)			
성과작성	(0.13)		1				(0.13)			
점검	(0.02)		1				(0.02)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53)						(0.53)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토지	임야	비고
계수	1.00	1.28	

7-8-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은 지적도 크기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기준규격의 1/2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7-8-2. 단 가 산 출 (예)

7-8-2-1. 도면작성

군지역(토지)

(금액단위:원)

구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직접측량비	직접인건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0.53	인	180,780	95,813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접경비	현장여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6,663	
		재료소모품비					527	
		기 타						
	간접측량비	제 경 비		20%			19,163	
기 술 료		13%			14,947			
합 계			지적도 크기			137,113		
1 장 당						137,113		

7-8-3. 수수료 기본단가표

7-8-3-1. 도면작성

- ① 도면작성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토지 : 군지역 7.0%, 시지역 7.0%, 구지역 7.0%

임야 : 군지역 7.7%, 시지역 7.7%, 구지역 7.7%

② 도면작성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수 치	1도곽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 야	1도곽 (임야도크기)	13,000	14,000	14,000

7-8-4. 공정일람표

7-8-4-1. 도면작성

지역별 자격별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시 · 군 · 구
		토 지	임 야	수 치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0.53)	(0.68)	(0.53)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53)	(0.68)	(0.53)
합 계		0.53	0.68	0.53

* ()내는 내업임

7-9. 지적도작성 및 지적도재작성

7-9-1. 수수료 기본단가표

7-9-1-1. 지적도작성 및 지적도재작성

① 본 단가는 지적확정측량, 복구측량 등으로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지적도가 마모, 훼손되어 다시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지적도작성 및 지적도재작성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치	1도곽 (지적도크기)	46,000	47,000	48,000
임 야	1도곽 (임야도크기)	57,000	58,000	60,000

7-9-1-2. 단가 적용기준

- ① 본 단가는 지적(임야)도 크기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단가는 전산파일에 의한 자동제도기 또는 롤플로터에 의하여 알루미늄 캔트지 및 폴리에스터 캔드지에 제도한 것이다.
- ③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7-10. 조서작성

7-10-1. 작업공정 품셈기준

7-10-1-1. 조서작성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0.01)		1				(0.01)			
조서작성	(0.01)		1				(0.01)			
점검	(0.01)		1				(0.01)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04)						(0.04)			

- ①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지 조서 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7-10-1-2. 품셈 적용기준

- ①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② 조서용지는 A4형 사이즈 10형(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
- ③ 조서용지는 1매에 10형 미만의 조서 작성 시에도 본 품에 의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7-10-2. 단 가 산 출 (예)

7-10-2-1. 조서작성

군지역(토지)

(금액단위: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직 접 측 량 비	직 접 인 건 비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0.04	인	180,780	7,231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직 접 경 비	현 장 여 비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기 계 경 비					102		
		재 료 소 모 품 비					44		
		기 타							
	간 접 측 량 비	제 경 비		20%			1,446		
기 술 료		13%			1,128				
합 계						9,951			
1 장 당						9,951			

7-10-3. 수수료 기본단가표

7-10-3-1. 조서작성

- ① 조서작성 수수료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에 아래 적용률을 곱하여 정한다.

군지역 31.0%, 시지역 31.0%, 구지역 31.0%

- ② 조서작성 수수료 기본단가

(금액단위:원)

토 지 구 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 임 야 · 수 치	A4(횡) 10행	3,000	3,000	3,000

7-10-3-2. 단가 적용기준

- ① 본 단가는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의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본 단가는 조서용지 기준서식을 A4횡사이즈 10행(또는 줄)으로 한다. 다만, 조서용지 1매에 10행 미만의 조서 작성 시에도 본 품에 의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7-10-4. 공정일람표

7-10-4-1. 조서작성

지역별 자격별		시 · 군 · 구 토 지	시 · 군 · 구 임 야	시 · 군 · 구 수 치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0.04)	(0.04)	(0.04)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내 업	(0.04)	(0.04)	(0.04)
합 계		0.04	0.04	0.04

* ()내는 내업임

8. 국토정보 자료구축

8-1. 지적정보 DB구축

8-1-1. 작업공정 품셈기준

8-1-1-1. 지적정보 DB구축

작업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0.88)	1				(0.88)				()는 내업임
기본자료수집		4.79		2				9.58			
측량현황편집		(3.26)		2				(6.52)			
속성 DB 구축		(2.88)	1	2			(2.88)	(5.76)			
도형 / 속성연계		(1.06)		2				(2.12)			
DB조회용틀구축		(19.57)	1	3			(19.57)	(58.71)			
점검 및 보완		(6.56)	1	1			(6.56)	(6.56)			
성과물출력		(1.58)		2				(3.16)			
성과점검및인계		(0.38)	1				(0.38)				
소계	외업	4.79						9.58			
	내업	(36.17)					(30.27)	(82.83)			
합계		40.96					30.27	92.41			

① 본 품은 지적기반의 지적이용현황조사 및 측량을 통하여 취득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편집, 설계, DB화하여 효율적인 자료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② DB의 복잡계수

구축대상 DB논리파일의 레코드 요소 유형개수 및 데이터 요소 유형개수 복잡도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레코드 요소 유형의 개수	데이터 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0.80	0.90	1.00
2~5	0.90	1.00	1.10
6 이상	1.00	1.10	1.20

③ 외부입력의 복잡도

지적정보DB에 연계되게 구축되는 외부 파일의 개수와 데이터 요소 유형의 개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 요소유형의 개수		
	1~4	5~15	16 이상
0~1	0.90	0.95	1.00
2	0.95	1.00	1.05
3 이상	1.00	1.05	1.10

8-1-1-2. 품셈 적용기준

- ① 지적정보 DB구축 품은 “DB의 복잡계수“가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2~5)와 데이터 요소유형의 개수(20~50)를 적용하였으며, “외부입력의 복잡도“는 참조파일의 개수(2)와 데이터 요소유형의 개수(5~15)를 기준으로 하였다.
- ② 지적정보 DB구축은 성과품 1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적정보 DB구축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적정보 DB구축 품을 제외한다.
- ③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 지적현황측량, 지적이용현황조사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와 지적정보 DB와 함께 납품되는 상용S/W, 항공사진 등의 물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지적정보유지 및 조회용 툴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는 별도 계상한다.
-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정보DB(분석/설계 단계 포함)	1식
㉡ 지적정보DB조회용 툴	1식
㉢ 지적정보DB 조서 및 일람표	1부
㉣ 지적정보DB 조회용 툴 사용자 매뉴얼	1부
- ⑦ 지적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정보DB 구축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의 업무로서 발주자의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할 수 있다.

8-1-2. 공정일람표

8-1-2-1. 지적정보 DB구축

지역별 자격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 적 기 사		(30.27)	(30.27)	(30.27)
지 적 산 업 기 사		9.58 (82.83)	9.58 (82.83)	9.58 (82.83)
지 적 기 능 사				
인 부				
소 계	외 업	9.58	9.58	9.58
	내 업	(113.10)	(113.10)	(113.10)
합 계		122.68	122.68	122.68

* ()내는 내업임

참고 : 지역구분계수 적용 분할측량 단가표

<지가계수 적용 이전 지적현황측량 성과를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할 경우 적용단가>

분할측량(토지·수치) 단가표

(금액단위: 원)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1,500	232,000	223,000	302,000	291,000	343,000	331,000
3,000	274,000	265,000	343,000	330,000	387,000	372,000
4,500	319,000	307,000	385,000	371,000	428,000	414,000
6,000	362,000	348,000	426,000	410,000	472,000	455,000
7,500	406,000	391,000	466,000	449,000	514,000	497,000
9,000	449,000	432,000	508,000	490,000	557,000	538,000
10,500	472,000	453,000	530,000	509,000	578,000	558,000
12,000	492,000	474,000	549,000	529,000	602,000	578,000
13,500	514,000	496,000	570,000	548,000	621,000	600,000
15,000	536,000	516,000	591,000	569,000	643,000	620,000
16,500	559,000	537,000	610,000	589,000	665,000	641,000
18,000	579,000	558,000	632,000	608,000	686,000	661,000
19,500	601,000	578,000	653,000	628,000	707,000	681,000
21,000	624,000	600,000	672,000	648,000	728,000	703,000
22,500	644,000	621,000	694,000	668,000	750,000	723,000
24,000	666,000	642,000	714,000	688,000	771,000	744,000
25,500	689,000	662,000	736,000	708,000	792,000	764,000
27,000	709,000	683,000	755,000	727,000	816,000	785,000
28,500	731,000	705,000	776,000	747,000	835,000	806,000
30,000	753,000	725,000	797,000	768,000	857,000	826,000
31,500	777,000	746,000	816,000	787,000	879,000	847,000
33,000	797,000	767,000	838,000	807,000	900,000	867,000
34,500	818,000	788,000	859,000	827,000	921,000	888,000
36,000	841,000	809,000	878,000	846,000	942,000	909,000
37,500	861,000	830,000	900,000	867,000	965,000	930,000
39,000	883,000	851,000	920,000	886,000	985,000	950,000
40,500	906,000	871,000	943,000	906,000	1,006,000	970,000
42,000	926,000	892,000	961,000	926,000	1,030,000	991,000
43,500	949,000	914,000	982,000	945,000	1,049,000	1,012,000
45,000	970,000	935,000	1,003,000	966,000	1,071,000	1,033,000
46,500	994,000	955,000	1,022,000	986,000	1,093,000	1,053,000
48,000	1,014,000	976,000	1,044,000	1,005,000	1,114,000	1,074,000
49,500	1,035,000	997,000	1,065,000	1,025,000	1,135,000	1,094,000
51,000	1,058,000	1,019,000	1,084,000	1,045,000	1,156,000	1,115,000
52,500	1,078,000	1,039,000	1,106,000	1,065,000	1,179,000	1,136,000

분할측량(토지·수치) 단가표

(금액단위: 원)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54,000	1,101,000	1,060,000	1,126,000	1,085,000	1,199,000	1,156,000
55,500	1,123,000	1,081,000	1,149,000	1,105,000	1,221,000	1,177,000
57,000	1,143,000	1,101,000	1,167,000	1,124,000	1,244,000	1,197,000
58,500	1,166,000	1,123,000	1,188,000	1,144,000	1,263,000	1,218,000
60,000	1,188,000	1,144,000	1,209,000	1,165,000	1,285,000	1,239,000
61,500	1,211,000	1,165,000	1,228,000	1,184,000	1,307,000	1,259,000
63,000	1,231,000	1,185,000	1,250,000	1,204,000	1,328,000	1,280,000
64,500	1,253,000	1,206,000	1,271,000	1,223,000	1,349,000	1,300,000
66,000	1,275,000	1,228,000	1,290,000	1,243,000	1,370,000	1,322,000
67,500	1,295,000	1,248,000	1,312,000	1,264,000	1,393,000	1,342,000
69,000	1,318,000	1,269,000	1,332,000	1,283,000	1,413,000	1,362,000
70,500	1,340,000	1,290,000	1,355,000	1,303,000	1,435,000	1,383,000
72,000	1,360,000	1,311,000	1,373,000	1,323,000	1,458,000	1,403,000
73,500	1,383,000	1,332,000	1,394,000	1,342,000	1,478,000	1,425,000
75,000	1,405,000	1,353,000	1,416,000	1,363,000	1,499,000	1,445,000
76,500	1,428,000	1,374,000	1,434,000	1,383,000	1,521,000	1,466,000
78,000	1,448,000	1,394,000	1,456,000	1,402,000	1,543,000	1,486,000
79,500	1,470,000	1,415,000	1,477,000	1,422,000	1,563,000	1,506,000
81,000	1,492,000	1,437,000	1,496,000	1,442,000	1,584,000	1,528,000
82,500	1,512,000	1,458,000	1,518,000	1,462,000	1,607,000	1,548,000
84,000	1,535,000	1,478,000	1,538,000	1,482,000	1,627,000	1,569,000
85,500	1,558,000	1,499,000	1,561,000	1,502,000	1,649,000	1,589,000
87,000	1,578,000	1,520,000	1,580,000	1,521,000	1,672,000	1,610,000
88,500	1,600,000	1,542,000	1,600,000	1,541,000	1,692,000	1,631,000
90,000	1,622,000	1,562,000	1,622,000	1,561,000	1,713,000	1,651,000
91,500	1,646,000	1,583,000	1,641,000	1,581,000	1,735,000	1,672,000
93,000	1,665,000	1,604,000	1,662,000	1,601,000	1,757,000	1,692,000
94,500	1,687,000	1,624,000	1,683,000	1,620,000	1,777,000	1,713,000
96,000	1,710,000	1,646,000	1,702,000	1,640,000	1,799,000	1,734,000
97,500	1,730,000	1,667,000	1,724,000	1,661,000	1,821,000	1,755,000
99,000	1,752,000	1,688,000	1,744,000	1,680,000	1,841,000	1,775,000
100,500	1,775,000	1,708,000	1,767,000	1,700,000	1,863,000	1,795,000
102,000	1,795,000	1,729,000	1,786,000	1,720,000	1,886,000	1,816,000
103,500	1,817,000	1,751,000	1,806,000	1,739,000	1,906,000	1,837,000
105,000	1,839,000	1,771,000	1,828,000	1,760,000	1,927,000	1,858,000

분할측량(임야)단가표

(금액단위: 원)

입 야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5,000	292,000	365,000	409,000
10,000	336,000	406,000	452,000
15,000	379,000	450,000	496,000
20,000	421,000	491,000	540,000
25,000	467,000	533,000	583,000
30,000	509,000	574,000	626,000
35,000	531,000	595,000	647,000
40,000	553,000	615,000	669,000
45,000	573,000	638,000	692,000
50,000	596,000	659,000	713,000
55,000	617,000	679,000	735,000
60,000	638,000	700,000	757,000
65,000	662,000	721,000	777,000
70,000	683,000	743,000	800,000
75,000	704,000	762,000	821,000
80,000	726,000	784,000	843,000
85,000	747,000	805,000	864,000
90,000	770,000	825,000	886,000
95,000	790,000	847,000	909,000
100,000	813,000	868,000	930,000
105,000	834,000	888,000	952,000
110,000	855,000	909,000	974,000
115,000	879,000	930,000	994,000
120,000	900,000	952,000	1,017,000
125,000	921,000	971,000	1,038,000
130,000	943,000	993,000	1,060,000
135,000	964,000	1,014,000	1,081,000
140,000	987,000	1,034,000	1,103,000
145,000	1,007,000	1,057,000	1,126,000
150,000	1,029,000	1,077,000	1,147,000
155,000	1,051,000	1,098,000	1,169,000
160,000	1,072,000	1,119,000	1,191,000
165,000	1,095,000	1,139,000	1,211,000
170,000	1,117,000	1,161,000	1,234,000
175,000	1,138,000	1,180,000	1,255,000

입 야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80,000	1,160,000	1,202,000	1,277,000
185,000	1,181,000	1,223,000	1,298,000
190,000	1,204,000	1,243,000	1,320,000
195,000	1,224,000	1,266,000	1,343,000
200,000	1,246,000	1,287,000	1,364,000
205,000	1,268,000	1,307,000	1,386,000
210,000	1,289,000	1,328,000	1,408,000
215,000	1,312,000	1,349,000	1,428,000
220,000	1,334,000	1,370,000	1,451,000
225,000	1,355,000	1,390,000	1,473,000
230,000	1,377,000	1,411,000	1,494,000
235,000	1,398,000	1,432,000	1,515,000
240,000	1,421,000	1,452,000	1,537,000
245,000	1,441,000	1,475,000	1,560,000
250,000	1,463,000	1,496,000	1,581,000
255,000	1,485,000	1,516,000	1,603,000
260,000	1,506,000	1,537,000	1,625,000
265,000	1,529,000	1,558,000	1,645,000
270,000	1,551,000	1,580,000	1,668,000
275,000	1,572,000	1,599,000	1,690,000
280,000	1,594,000	1,621,000	1,711,000
285,000	1,615,000	1,642,000	1,732,000
290,000	1,638,000	1,662,000	1,754,000
295,000	1,658,000	1,684,000	1,777,000
300,000	1,680,000	1,705,000	1,798,000
305,000	1,702,000	1,725,000	1,820,000
310,000	1,723,000	1,746,000	1,842,000
315,000	1,746,000	1,767,000	1,862,000
320,000	1,768,000	1,789,000	1,885,000
325,000	1,789,000	1,808,000	1,907,000
330,000	1,810,000	1,830,000	1,928,000
335,000	1,832,000	1,851,000	1,949,000
340,000	1,854,000	1,871,000	1,971,000
345,000	1,874,000	1,894,000	1,994,000
350,000	1,897,000	1,914,000	2,015,000

분할측량(임야)단가표

(금액단위: 원)

임 야			
지역구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면적별(㎡)			
355,000	1,919,000	1,935,000	2,037,000
360,000	1,940,000	1,956,000	2,060,000
365,000	1,963,000	1,976,000	2,080,000
370,000	1,985,000	1,998,000	2,102,000
375,000	2,006,000	2,017,000	2,124,000
380,000	2,027,000	2,039,000	2,145,000
385,000	2,049,000	2,060,000	2,166,000
390,000	2,071,000	2,080,000	2,188,000
395,000	2,091,000	2,103,000	2,211,000
400,000	2,114,000	2,124,000	2,232,000
405,000	2,136,000	2,144,000	2,254,000
410,000	2,156,000	2,165,000	2,277,000
415,000	2,180,000	2,186,000	2,297,000
420,000	2,202,000	2,207,000	2,319,000
425,000	2,222,000	2,227,000	2,341,000
430,000	2,244,000	2,248,000	2,362,000
435,000	2,266,000	2,269,000	2,383,000
440,000	2,288,000	2,289,000	2,405,000
445,000	2,308,000	2,312,000	2,428,000
450,000	2,331,000	2,333,000	2,449,000
455,000	2,352,000	2,353,000	2,471,000
460,000	2,373,000	2,374,000	2,494,000
465,000	2,397,000	2,395,000	2,514,000
470,000	2,419,000	2,417,000	2,536,000
475,000	2,439,000	2,436,000	2,558,000
480,000	2,461,000	2,458,000	2,579,000
485,000	2,483,000	2,479,000	2,600,000
490,000	2,505,000	2,499,000	2,622,000
495,000	2,525,000	2,521,000	2,646,000
500,000	2,548,000	2,542,000	2,666,000
505,000	2,569,000	2,562,000	2,688,000
510,000	2,590,000	2,583,000	2,711,000
515,000	2,614,000	2,604,000	2,731,000
520,000	2,635,000	2,626,000	2,753,000
525,000	2,656,000	2,645,000	2,775,000

임 야			
지역구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면적별(㎡)			
530,000	2,678,000	2,667,000	2,797,000
535,000	2,699,000	2,688,000	2,817,000
540,000	2,722,000	2,708,000	2,839,000
545,000	2,742,000	2,731,000	2,863,000
550,000	2,765,000	2,751,000	2,883,000
555,000	2,786,000	2,772,000	2,905,000
560,000	2,807,000	2,793,000	2,928,000
565,000	2,831,000	2,813,000	2,948,000
570,000	2,852,000	2,835,000	2,970,000
575,000	2,873,000	2,854,000	2,992,000
580,000	2,895,000	2,876,000	3,014,000
585,000	2,916,000	2,897,000	3,034,000
590,000	2,939,000	2,917,000	3,056,000
595,000	2,959,000	2,940,000	3,080,000
600,000	2,981,000	2,961,000	3,100,000
605,000	3,003,000	2,981,000	3,122,000
610,000	3,024,000	3,002,000	3,145,000
615,000	3,047,000	3,023,000	3,165,000
620,000	3,069,000	3,044,000	3,187,000
625,000	3,090,000	3,064,000	3,209,000
630,000	3,112,000	3,085,000	3,231,000
635,000	3,133,000	3,106,000	3,251,000
640,000	3,156,000	3,126,000	3,273,000
645,000	3,176,000	3,149,000	3,297,000
650,000	3,198,000	3,170,000	3,318,000
655,000	3,220,000	3,190,000	3,339,000
660,000	3,241,000	3,211,000	3,362,000
665,000	3,264,000	3,232,000	3,382,000
670,000	3,286,000	3,254,000	3,404,000
675,000	3,307,000	3,273,000	3,426,000
680,000	3,329,000	3,295,000	3,448,000
685,000	3,350,000	3,316,000	3,468,000
690,000	3,373,000	3,336,000	3,490,000
695,000	3,393,000	3,358,000	3,514,000
700,000	3,415,000	3,379,000	3,535,000

분할측량(토지·수치)_130% 단가표

(금액단위:원)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1,500	302,000	290,000	393,000	378,000	446,000	430,000
3,000	356,000	344,000	446,000	429,000	503,000	484,000
4,500	415,000	399,000	500,000	482,000	556,000	538,000
6,000	471,000	452,000	554,000	533,000	614,000	591,000
7,500	528,000	508,000	606,000	584,000	668,000	646,000
9,000	584,000	562,000	660,000	637,000	724,000	699,000
10,500	614,000	589,000	689,000	662,000	751,000	725,000
12,000	640,000	616,000	714,000	688,000	783,000	751,000
13,500	668,000	645,000	741,000	712,000	807,000	780,000
15,000	697,000	671,000	768,000	740,000	836,000	806,000
16,500	727,000	698,000	793,000	766,000	864,000	833,000
18,000	753,000	725,000	822,000	790,000	892,000	859,000
19,500	781,000	751,000	849,000	816,000	919,000	885,000
21,000	811,000	780,000	874,000	842,000	946,000	914,000
22,500	837,000	807,000	902,000	868,000	975,000	940,000
24,000	866,000	835,000	928,000	894,000	1,002,000	967,000
25,500	896,000	861,000	957,000	920,000	1,030,000	993,000
27,000	922,000	888,000	981,000	945,000	1,061,000	1,020,000
28,500	950,000	916,000	1,009,000	971,000	1,085,000	1,048,000
30,000	979,000	942,000	1,036,000	998,000	1,114,000	1,074,000
31,500	1,010,000	970,000	1,061,000	1,023,000	1,143,000	1,101,000
33,000	1,036,000	997,000	1,089,000	1,049,000	1,170,000	1,127,000
34,500	1,063,000	1,024,000	1,117,000	1,075,000	1,197,000	1,154,000
36,000	1,093,000	1,052,000	1,141,000	1,100,000	1,225,000	1,182,000
37,500	1,119,000	1,079,000	1,170,000	1,127,000	1,254,000	1,209,000
39,000	1,148,000	1,106,000	1,196,000	1,152,000	1,280,000	1,235,000
40,500	1,178,000	1,132,000	1,226,000	1,178,000	1,308,000	1,261,000
42,000	1,204,000	1,160,000	1,249,000	1,204,000	1,339,000	1,288,000
43,500	1,234,000	1,188,000	1,277,000	1,228,000	1,364,000	1,316,000
45,000	1,261,000	1,215,000	1,304,000	1,256,000	1,392,000	1,343,000
46,500	1,292,000	1,241,000	1,329,000	1,282,000	1,421,000	1,369,000
48,000	1,318,000	1,269,000	1,357,000	1,306,000	1,448,000	1,396,000
49,500	1,345,000	1,296,000	1,384,000	1,332,000	1,475,000	1,422,000
51,000	1,375,000	1,325,000	1,409,000	1,358,000	1,503,000	1,449,000
52,500	1,401,000	1,351,000	1,438,000	1,384,000	1,533,000	1,477,000

분할측량(토지·수치)_130% 단가표

(금액단위:원)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54,000	1,431,000	1,378,000	1,464,000	1,410,000	1,559,000	1,503,000
55,500	1,460,000	1,405,000	1,494,000	1,436,000	1,587,000	1,530,000
57,000	1,486,000	1,431,000	1,517,000	1,461,000	1,617,000	1,556,000
58,500	1,516,000	1,460,000	1,544,000	1,487,000	1,642,000	1,583,000
60,000	1,544,000	1,487,000	1,572,000	1,514,000	1,670,000	1,611,000
61,500	1,574,000	1,514,000	1,596,000	1,539,000	1,699,000	1,637,000
63,000	1,600,000	1,540,000	1,625,000	1,565,000	1,726,000	1,664,000
64,500	1,629,000	1,568,000	1,652,000	1,590,000	1,754,000	1,690,000
66,000	1,657,000	1,596,000	1,677,000	1,616,000	1,781,000	1,719,000
67,500	1,683,000	1,622,000	1,706,000	1,643,000	1,811,000	1,745,000
69,000	1,713,000	1,650,000	1,732,000	1,668,000	1,837,000	1,771,000
70,500	1,742,000	1,677,000	1,761,000	1,694,000	1,865,000	1,798,000
72,000	1,768,000	1,704,000	1,785,000	1,720,000	1,895,000	1,824,000
73,500	1,798,000	1,732,000	1,812,000	1,745,000	1,921,000	1,852,000
75,000	1,826,000	1,759,000	1,841,000	1,772,000	1,949,000	1,878,000
76,500	1,856,000	1,786,000	1,864,000	1,798,000	1,977,000	1,906,000
78,000	1,882,000	1,812,000	1,893,000	1,823,000	2,006,000	1,932,000
79,500	1,911,000	1,839,000	1,920,000	1,849,000	2,032,000	1,958,000
81,000	1,940,000	1,868,000	1,945,000	1,875,000	2,059,000	1,986,000
82,500	1,966,000	1,895,000	1,973,000	1,901,000	2,089,000	2,012,000
84,000	1,995,000	1,921,000	1,999,000	1,927,000	2,115,000	2,040,000
85,500	2,025,000	1,949,000	2,029,000	1,953,000	2,144,000	2,066,000
87,000	2,051,000	1,976,000	2,054,000	1,977,000	2,174,000	2,093,000
88,500	2,080,000	2,005,000	2,080,000	2,003,000	2,200,000	2,120,000
90,000	2,109,000	2,031,000	2,109,000	2,029,000	2,227,000	2,146,000
91,500	2,140,000	2,058,000	2,133,000	2,055,000	2,255,000	2,174,000
93,000	2,164,000	2,085,000	2,161,000	2,081,000	2,284,000	2,200,000
94,500	2,193,000	2,111,000	2,188,000	2,106,000	2,310,000	2,227,000
96,000	2,223,000	2,140,000	2,213,000	2,132,000	2,339,000	2,254,000
97,500	2,249,000	2,167,000	2,241,000	2,159,000	2,367,000	2,281,000
99,000	2,278,000	2,194,000	2,267,000	2,184,000	2,393,000	2,307,000
100,500	2,307,000	2,220,000	2,297,000	2,210,000	2,422,000	2,333,000
102,000	2,333,000	2,248,000	2,322,000	2,236,000	2,452,000	2,361,000
103,500	2,362,000	2,276,000	2,348,000	2,261,000	2,478,000	2,388,000
105,000	2,391,000	2,302,000	2,376,000	2,288,000	2,505,000	2,415,000

분할측량(임야)_130% 단가표

(금액단위: 원)

입 야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5,000	380,000	474,000	532,000
10,000	437,000	528,000	588,000
15,000	493,000	585,000	645,000
20,000	547,000	638,000	702,000
25,000	607,000	693,000	758,000
30,000	662,000	746,000	814,000
35,000	690,000	773,000	841,000
40,000	719,000	799,000	870,000
45,000	745,000	829,000	900,000
50,000	775,000	857,000	927,000
55,000	802,000	883,000	955,000
60,000	829,000	910,000	984,000
65,000	861,000	937,000	1,010,000
70,000	888,000	966,000	1,040,000
75,000	915,000	991,000	1,067,000
80,000	944,000	1,019,000	1,096,000
85,000	971,000	1,046,000	1,123,000
90,000	1,001,000	1,072,000	1,152,000
95,000	1,027,000	1,101,000	1,182,000
100,000	1,057,000	1,128,000	1,209,000
105,000	1,084,000	1,154,000	1,238,000
110,000	1,111,000	1,182,000	1,266,000
115,000	1,143,000	1,209,000	1,292,000
120,000	1,170,000	1,238,000	1,322,000
125,000	1,197,000	1,262,000	1,349,000
130,000	1,226,000	1,291,000	1,378,000
135,000	1,253,000	1,318,000	1,405,000
140,000	1,283,000	1,344,000	1,434,000
145,000	1,309,000	1,374,000	1,464,000
150,000	1,338,000	1,400,000	1,491,000
155,000	1,366,000	1,427,000	1,520,000
160,000	1,394,000	1,455,000	1,548,000
165,000	1,423,000	1,481,000	1,574,000
170,000	1,452,000	1,509,000	1,604,000
175,000	1,479,000	1,534,000	1,631,000

입 야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80,000	1,508,000	1,563,000	1,660,000
185,000	1,535,000	1,590,000	1,687,000
190,000	1,565,000	1,616,000	1,716,000
195,000	1,591,000	1,646,000	1,746,000
200,000	1,620,000	1,673,000	1,773,000
205,000	1,648,000	1,699,000	1,802,000
210,000	1,676,000	1,726,000	1,830,000
215,000	1,706,000	1,754,000	1,856,000
220,000	1,734,000	1,781,000	1,886,000
225,000	1,761,000	1,807,000	1,915,000
230,000	1,790,000	1,834,000	1,942,000
235,000	1,817,000	1,862,000	1,969,000
240,000	1,847,000	1,888,000	1,998,000
245,000	1,873,000	1,917,000	2,028,000
250,000	1,902,000	1,945,000	2,055,000
255,000	1,930,000	1,971,000	2,084,000
260,000	1,958,000	1,998,000	2,112,000
265,000	1,988,000	2,025,000	2,138,000
270,000	2,016,000	2,054,000	2,168,000
275,000	2,044,000	2,079,000	2,197,000
280,000	2,072,000	2,107,000	2,224,000
285,000	2,099,000	2,135,000	2,252,000
290,000	2,129,000	2,161,000	2,280,000
295,000	2,155,000	2,189,000	2,310,000
300,000	2,184,000	2,216,000	2,337,000
305,000	2,213,000	2,242,000	2,366,000
310,000	2,240,000	2,270,000	2,395,000
315,000	2,270,000	2,297,000	2,421,000
320,000	2,298,000	2,326,000	2,450,000
325,000	2,326,000	2,350,000	2,479,000
330,000	2,353,000	2,379,000	2,506,000
335,000	2,382,000	2,406,000	2,534,000
340,000	2,410,000	2,432,000	2,562,000
345,000	2,436,000	2,462,000	2,592,000
350,000	2,466,000	2,488,000	2,619,000

분할측량(임야)_130% 단가표

(금액단위: 원)

입 야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355,000	2,495,000	2,515,000	2,648,000
360,000	2,522,000	2,543,000	2,678,000
365,000	2,552,000	2,569,000	2,704,000
370,000	2,580,000	2,597,000	2,733,000
375,000	2,608,000	2,622,000	2,761,000
380,000	2,635,000	2,651,000	2,788,000
385,000	2,664,000	2,678,000	2,816,000
390,000	2,692,000	2,704,000	2,844,000
395,000	2,718,000	2,734,000	2,874,000
400,000	2,748,000	2,761,000	2,902,000
405,000	2,777,000	2,787,000	2,930,000
410,000	2,803,000	2,814,000	2,960,000
415,000	2,834,000	2,842,000	2,986,000
420,000	2,863,000	2,869,000	3,015,000
425,000	2,889,000	2,895,000	3,043,000
430,000	2,917,000	2,922,000	3,071,000
435,000	2,946,000	2,950,000	3,098,000
440,000	2,974,000	2,976,000	3,126,000
445,000	3,000,000	3,006,000	3,156,000
450,000	3,030,000	3,033,000	3,184,000
455,000	3,058,000	3,059,000	3,212,000
460,000	3,085,000	3,086,000	3,242,000
465,000	3,116,000	3,113,000	3,268,000
470,000	3,145,000	3,142,000	3,297,000
475,000	3,171,000	3,167,000	3,325,000
480,000	3,199,000	3,195,000	3,353,000
485,000	3,228,000	3,223,000	3,380,000
490,000	3,256,000	3,249,000	3,409,000
495,000	3,282,000	3,277,000	3,440,000
500,000	3,312,000	3,305,000	3,466,000
505,000	3,340,000	3,331,000	3,494,000
510,000	3,367,000	3,358,000	3,524,000
515,000	3,398,000	3,385,000	3,550,000
520,000	3,425,000	3,414,000	3,579,000
525,000	3,453,000	3,438,000	3,607,000

입 야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530,000	3,481,000	3,467,000	3,636,000
535,000	3,509,000	3,494,000	3,662,000
540,000	3,539,000	3,520,000	3,691,000
545,000	3,565,000	3,550,000	3,722,000
550,000	3,594,000	3,576,000	3,748,000
555,000	3,622,000	3,604,000	3,776,000
560,000	3,649,000	3,631,000	3,806,000
565,000	3,680,000	3,657,000	3,832,000
570,000	3,708,000	3,685,000	3,861,000
575,000	3,735,000	3,710,000	3,890,000
580,000	3,763,000	3,739,000	3,918,000
585,000	3,791,000	3,766,000	3,944,000
590,000	3,821,000	3,792,000	3,973,000
595,000	3,847,000	3,822,000	4,004,000
600,000	3,875,000	3,849,000	4,030,000
605,000	3,904,000	3,875,000	4,059,000
610,000	3,931,000	3,903,000	4,088,000
615,000	3,961,000	3,930,000	4,114,000
620,000	3,990,000	3,957,000	4,143,000
625,000	4,017,000	3,983,000	4,172,000
630,000	4,046,000	4,010,000	4,200,000
635,000	4,073,000	4,038,000	4,226,000
640,000	4,103,000	4,064,000	4,255,000
645,000	4,129,000	4,094,000	4,286,000
650,000	4,157,000	4,121,000	4,313,000
655,000	4,186,000	4,147,000	4,341,000
660,000	4,213,000	4,174,000	4,371,000
665,000	4,243,000	4,202,000	4,397,000
670,000	4,272,000	4,230,000	4,425,000
675,000	4,299,000	4,255,000	4,454,000
680,000	4,328,000	4,283,000	4,482,000
685,000	4,355,000	4,311,000	4,508,000
690,000	4,385,000	4,337,000	4,537,000
695,000	4,411,000	4,365,000	4,568,000
700,000	4,439,000	4,393,000	4,595,000

분할측량(토지·수치)_140% 단가표

(금액단위:원)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1,500	325,000	312,000	423,000	407,000	480,000	463,000
3,000	384,000	371,000	480,000	462,000	542,000	521,000
4,500	447,000	430,000	539,000	519,000	599,000	580,000
6,000	507,000	487,000	596,000	574,000	661,000	637,000
7,500	568,000	547,000	652,000	629,000	720,000	696,000
9,000	629,000	605,000	711,000	686,000	780,000	753,000
10,500	661,000	634,000	742,000	713,000	809,000	781,000
12,000	689,000	664,000	769,000	741,000	843,000	809,000
13,500	720,000	694,000	798,000	767,000	869,000	840,000
15,000	750,000	722,000	827,000	797,000	900,000	868,000
16,500	783,000	752,000	854,000	825,000	931,000	897,000
18,000	811,000	781,000	885,000	851,000	960,000	925,000
19,500	841,000	809,000	914,000	879,000	990,000	953,000
21,000	874,000	840,000	941,000	907,000	1,019,000	984,000
22,500	902,000	869,000	972,000	935,000	1,050,000	1,012,000
24,000	932,000	899,000	1,000,000	963,000	1,079,000	1,042,000
25,500	965,000	927,000	1,030,000	991,000	1,109,000	1,070,000
27,000	993,000	956,000	1,057,000	1,018,000	1,142,000	1,099,000
28,500	1,023,000	987,000	1,086,000	1,046,000	1,169,000	1,128,000
30,000	1,054,000	1,015,000	1,116,000	1,075,000	1,200,000	1,156,000
31,500	1,088,000	1,044,000	1,142,000	1,102,000	1,231,000	1,186,000
33,000	1,116,000	1,074,000	1,173,000	1,130,000	1,260,000	1,214,000
34,500	1,145,000	1,103,000	1,203,000	1,158,000	1,289,000	1,243,000
36,000	1,177,000	1,133,000	1,229,000	1,184,000	1,319,000	1,273,000
37,500	1,205,000	1,162,000	1,260,000	1,214,000	1,351,000	1,302,000
39,000	1,236,000	1,191,000	1,288,000	1,240,000	1,379,000	1,330,000
40,500	1,268,000	1,219,000	1,320,000	1,268,000	1,408,000	1,358,000
42,000	1,296,000	1,249,000	1,345,000	1,296,000	1,442,000	1,387,000
43,500	1,329,000	1,280,000	1,375,000	1,323,000	1,469,000	1,417,000
45,000	1,358,000	1,309,000	1,404,000	1,352,000	1,499,000	1,446,000
46,500	1,392,000	1,337,000	1,431,000	1,380,000	1,530,000	1,474,000
48,000	1,420,000	1,366,000	1,462,000	1,407,000	1,560,000	1,504,000
49,500	1,449,000	1,396,000	1,491,000	1,435,000	1,589,000	1,532,000
51,000	1,481,000	1,427,000	1,518,000	1,463,000	1,618,000	1,561,000
52,500	1,509,000	1,455,000	1,548,000	1,491,000	1,651,000	1,590,000

분할측량(토지·수치)_140% 단가표

(금액단위:원)

지역구분 면적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토 지	수 치
54,000	1,541,000	1,484,000	1,576,000	1,519,000	1,679,000	1,618,000
55,500	1,572,000	1,513,000	1,609,000	1,547,000	1,709,000	1,648,000
57,000	1,600,000	1,541,000	1,634,000	1,574,000	1,742,000	1,676,000
58,500	1,632,000	1,572,000	1,663,000	1,602,000	1,768,000	1,705,000
60,000	1,663,000	1,602,000	1,693,000	1,631,000	1,799,000	1,735,000
61,500	1,695,000	1,631,000	1,719,000	1,658,000	1,830,000	1,763,000
63,000	1,723,000	1,659,000	1,750,000	1,686,000	1,859,000	1,792,000
64,500	1,754,000	1,688,000	1,779,000	1,712,000	1,889,000	1,820,000
66,000	1,785,000	1,719,000	1,806,000	1,740,000	1,918,000	1,851,000
67,500	1,813,000	1,747,000	1,837,000	1,770,000	1,950,000	1,879,000
69,000	1,845,000	1,777,000	1,865,000	1,796,000	1,978,000	1,907,000
70,500	1,876,000	1,806,000	1,897,000	1,824,000	2,009,000	1,936,000
72,000	1,904,000	1,835,000	1,922,000	1,852,000	2,041,000	1,964,000
73,500	1,936,000	1,865,000	1,952,000	1,879,000	2,069,000	1,995,000
75,000	1,967,000	1,894,000	1,982,000	1,908,000	2,099,000	2,023,000
76,500	1,999,000	1,924,000	2,008,000	1,936,000	2,129,000	2,052,000
78,000	2,027,000	1,952,000	2,038,000	1,963,000	2,160,000	2,080,000
79,500	2,058,000	1,981,000	2,068,000	1,991,000	2,188,000	2,108,000
81,000	2,089,000	2,012,000	2,094,000	2,019,000	2,218,000	2,139,000
82,500	2,117,000	2,041,000	2,125,000	2,047,000	2,250,000	2,167,000
84,000	2,149,000	2,069,000	2,153,000	2,075,000	2,278,000	2,197,000
85,500	2,181,000	2,099,000	2,185,000	2,103,000	2,309,000	2,225,000
87,000	2,209,000	2,128,000	2,212,000	2,129,000	2,341,000	2,254,000
88,500	2,240,000	2,159,000	2,240,000	2,157,000	2,369,000	2,283,000
90,000	2,271,000	2,187,000	2,271,000	2,185,000	2,398,000	2,311,000
91,500	2,304,000	2,216,000	2,297,000	2,213,000	2,429,000	2,341,000
93,000	2,331,000	2,246,000	2,327,000	2,241,000	2,460,000	2,369,000
94,500	2,362,000	2,274,000	2,356,000	2,268,000	2,488,000	2,398,000
96,000	2,394,000	2,304,000	2,383,000	2,296,000	2,519,000	2,428,000
97,500	2,422,000	2,334,000	2,414,000	2,325,000	2,549,000	2,457,000
99,000	2,453,000	2,363,000	2,442,000	2,352,000	2,577,000	2,485,000
100,500	2,485,000	2,391,000	2,474,000	2,380,000	2,608,000	2,513,000
102,000	2,513,000	2,421,000	2,500,000	2,408,000	2,640,000	2,542,000
103,500	2,544,000	2,451,000	2,528,000	2,435,000	2,668,000	2,572,000
105,000	2,575,000	2,479,000	2,559,000	2,464,000	2,698,000	2,601,000